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연구

Criteria Designation of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and Complex

김용국 Kim, Yong Gook

김신성 Kim, Shin Sung

(a u r i

정책연구보고서 2017-1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연구

Criteria Designation of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and Complex

지은이	김용국, 김신성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등록	제569-3850000251002008000005호
인쇄	2017년 10월 26일, 발행: 2017년 10월 31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http://www.auri.re.kr>

가격: 11,000원, ISBN: 979-11-5659-129-0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진

┆ 연구책임 김용국 부연구위원

┆ 연구진 김신성 연구원

┆ 연구보조원 김지나 연구보조원

┆ 연구심의위원 김상호 선임연구위원
 오성훈 선임연구위원
 안승홍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진승범 이우환경디자인 대표
 정진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사무관

제1장 서론

조경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건강과 치유, 지역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 등 조경의 역할과 기능이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조경은 1970년대 무분별한 개발 사업으로 인해 훼손된 국토환경을 보존하고자 도입되었다. 이후 신도시 개발을 비롯한 대규모 토건사업에 의존해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도시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정체되는 추세이다. 결과적으로 영세한 조경사업체들이 증가하고 있고, 독립된 산업 분야로서의 위상은 낮아지고 있다.

2015년 제정된 「조경진흥법」에는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조경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조경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제도와 사례 분석을 통해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의 운용 방향과 법령 개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조경분야 종사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통해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의 필요성과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셋째,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의 예상 사업모델과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제2장 조경산업 현황과 공간 집적의 필요성

조경산업을 조경설계, 조경감리, 조경시공, 조경유지·관리, 조경소재 생산 및 유통 등 5개 분야로 구분해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조경설계 분야 사업체들의 영세화가 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시공 분야는 2009년 기점으로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 반면 조경유지·관리 분야는 급성장하고 있다. 조경감리와 조경소재 생산 및 유통 분야는 통계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현황 조사가 어려운 상태이다. 구득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조경산업 현황을 종합한 결과 매출액 약 8조 원, 사업체수 23,212개소, 종사자수 43,5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적에 의한 정보 교류 확대로 기술 역량 강화와 시장 판로 개척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우수한 품질의 조경 소재 생산 기반시설과 합리적 유통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조경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 영세한 조경사업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제3장 관련 제도 및 사례분석

법률에 근거해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가 지정되거나 조성된 사례들을 선정하여 비교·검토하였다. 검토결과 대부분의 제도가 유사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는 상대적으로 지정기준이 엄격하고, 지원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사례분석에서는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에 부합하는 세 가지 사례를 심층 분석하였다. 해외 사례분석에서는 일본, 싱가포르, 미국, 중국에서 조경 분야 진흥과 관련하여 추진 중인 정책 사례들을 조사·분석하였다.

제4장 조경분야 종사자 및 전문가 대상 인식조사

조경 분야 종사자와 전문가 75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통해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의 합리적 운용 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경분야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은 조경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조경진흥시설에 적합한 산업 유형은 설계, 유지·관리, 시공 분야가 선정되었다. 조경진흥단지에 적합한 산업 유형은 조경수와 조경시설물 생산 및 유통 분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조경진흥시설 지정을 통해 얻게 되는 기대효과로는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사업기회 증가', 조경진흥단지 지정을 통해 얻게 되는 기대효과로는 '각종 정보 공유 활성화'가 높게 평가되었다. 넷째, 조경진흥시설 지정기준 중에서는 '지자체 조경 산업 규모와 육성 역량'이,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중에서는 '사업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조경진흥시설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으로는 '세계 혜택 및 부담금 면제', 조경진흥단지의 경우에는 '유지·관리비 지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제5장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 운용 방안

첫째,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예상 사업모델을 제안하였다. 조경진흥시설은 설계, 시공, 유지·관리, 자재 등 서비스 기반의 영세한 조경 사업체들이 집적하여 정보공유, 기술협력 등 발전적 경쟁체재를 구축하고, 업체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임대료와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조경진흥단지는 조경수 기반 사업모델, 조경시설물 기반 사업모델, 조경복합문화단지 사업모델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사업추진방식과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조경사업자의 범위 확대,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조성 및 운영 계획서 수립 의무화, 조경진흥단지 지정요건 완화와 관련해 법령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평가 체크리스트(안)와 지정 절차에 따른 주체별 역할을 제시하였다.

셋째, 지원내용 개선방안과 단기 및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조경진흥시설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조경진흥단지 지원내용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단기(2017~2018년), 중기(2019~2021년), 장기(2022년~)로 구분하여 단계별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정책 추진방안을 제안하였다.

제6장 결론

본 연구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경산업 진흥 정책 추진과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경산업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 분야이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빈집 정비 등 현 정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경산업 종사자들과 전문가 집단 역시 조경진흥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다. 둘째,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의 예상되는 사업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정책 방향 설정을 도울 수 있었다. 셋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주제어

조경진흥법, 조경진흥시설, 조경진흥단지, 제도 개선

차례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제2장 조경산업 현황과 공간 집적의 필요성

1. 조경의 대상과 중요성	9
2. 조경산업 현황	13
3.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의 필요성	29

제3장 관련 제도 및 사례분석

1. 관련 제도 분석	31
2. 국내 사례분석	52
3. 해외 사례분석	58

제4장 조경분야 종사자 및 전문가 대상 인식조사

1. 설문조사 개요	67
2. 분석결과	69

제5장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 운용방안

1. 예상 사업모델	75
2.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84
3. 지원내용	92
4. 단기 및 중장기 발전방향	95

제6장 결론

1. 연구 성과	97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00
참고문헌	101
영문요약	103
부록 1.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관련 제도	109
부록 2. 조경분야 종사자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지	143

표차례

LIST OF TABLE

[표 1-1]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정의	3
[표 1-2]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표 2-1] 조경의 대상	10
[표 2-2] 조경산업 분류체계	13
[표 2-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종류	15
[표 2-4] 종합건설업 현황 (2015년)	15
[표 2-5] 전문건설업 현황 (2015년)	16
[표 2-6] 2006~2015년 조경시공 분야 기성금액	17
[표 2-7] 2015년 조경 시공분야 지역별 기성실적 현황	17
[표 2-8] 2006~2015년 조경설계 분야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19
[표 2-9] 조경설계 분야 지역별 산업현황	20
[표 2-10] 조경 엔지니어링 분야 산업현황	21
[표 2-11] 1993~2016년 조경 기술사사무소 등록현황(2016년 4월 기준)	22
[표 2-12] 2006~2015년 조경관리 분야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22
[표 2-13] 2015년 조경관리 분야 지역별 현황	23
[표 2-14] 조경소재생산업체 분류 및 연도별 업체수	24
[표 2-15] 조경수 생산 및 생산액 현황(2006~2015)	24
[표 2-16] 2015년 지역별 조경수(관상식물) 재배 현황	25
[표 2-17] 2015년 지역별 조경수(관상식물) 재배 면적 규모별 임가수	26
[표 2-18] 조경산업 종합현황(2015)	28
[표 3-1]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관련 제도	31
[표 3-2] 정의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관련 제도)	32
[표 3-3] 지정기준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관련 제도)	33
[표 3-4] 지정권자 및 지정절차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관련 제도)	34
[표 3-5] 지원내용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관련 제도)	35
[표 3-6] 운영·관리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관련 제도)	36
[표 3-7] 진흥시설 및 단지 조성사례	51
[표 3-8] 가와구치 녹화센터 시설	59
[표 3-9] 일본 국산화훼 이노베이션 추진사업 내용	60
[표 3-10] 2016년 지역별 협의회 주요 성과	61

[표 3-11] 해외사례 분석결과 종합	66
[표 4-1] 설문응답자 일반현황	67
[표 4-2] 설문조사 항목과 척도	68
[표 4-3]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의 필요성 (설문조사 결과)	70
[표 4-4]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에 적합한 산업 유형 (설문조사 결과, 복수응답)	71
[표 4-5]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설문조사 결과)	72
[표 4-6] 조경진흥시설 지정기준 (설문조사 결과)	73
[표 4-7]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설문조사 결과)	73
[표 4-8] 조경진흥시설 지원방안 (설문조사 결과)	74
[표 4-9] 조경진흥단지 지원방안 (설문조사 결과)	74
[표 5-1]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의 차이점	76
[표 5-2] 기존 조경수 재배단지와 조경진흥단지의 차이점	77
[표 5-3] 기존 조경시설물 사업체와 조경진흥단지의 차이점	79
[표 5-4] 유사 분야 진흥시설 지정요건	85
[표 5-5] 유사 분야 진흥단지 지정요건	86
[표 5-6] 법률개정안 (조경사업의 범위 확대)	87
[표 5-7] 법률개정안 (조경진흥시설 조성 및 운영 계획서 작성 의무화)	87
[표 5-8] 법률개정안 (조경진흥단지 지정요건 완화)	88
[표 5-9] 법률개정안 (조경진흥단지 조성 및 운영 계획서 작성 의무화)	88
[표 5-10] 조경진흥시설 평가 체크리스트(안)	89
[표 5-11] 조경진흥단지 평가 체크리스트(안)	90
[표 5-12]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절차(안)	91
[표 5-13] 법률개정안 (조경진흥시설 지원대상 범위 확대)	93
[표 5-14] 법률개정안 (조경진흥단지 각종 부담금 면제에 관한 사항 포함)	94

그림차례

TABLE OF FIGURES

[그림 1-1] 국토환경에서 조경분야의 역할과 기능	1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5
[그림 2-1] 조경의 대상	10
[그림 2-2] 대구 범어천복원사업	11
[그림 2-3] 부산 생태통로	11
[그림 2-4] 2016년 서울정원박람회	12
[그림 2-5] 순천만정원박람회	12
[그림 2-6] 조경산업 분류체계	14
[그림 2-7] 2004~2015년 조경시공 분야 기성실적	17
[그림 2-8] 2015년 조경시공 분야 지역별 기성실적	18
[그림 2-9] 2006~2015 조경설계 분야 사업체 수 및 종사자수	19
[그림 2-10] 2015년 지역별 조경설계 분야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20
[그림 2-11] 2006~2015년 조경관리 분야 사업체수, 종사자수	23
[그림 2-12] 2015년 지역별 조경관리 분야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23
[그림 2-13] 2006~2015년 조경수 생산량 추이	25
[그림 2-14] 2015년 지역별 조경수(관상식물) 생산량/재배 면적 현황	26
[그림 2-15] 조경수 유통 경로	28
[그림 3-1] 문화콘텐츠센터	38
[그림 3-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38
[그림 3-3] 청주시 문화산업단지	39
[그림 3-4] 강원대학교 정보통신연구소 건물 및 조직도	40
[그림 3-5] 창업보육센터가 위치한 충북대학교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	41
[그림 3-6] 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시설	42
[그림 3-7] 소프트웨어벤처타워	43
[그림 3-8]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구미국가산업단지 제1단지	44
[그림 3-9] 한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	45
[그림 3-10]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 조직 구성	46
[그림 3-11]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감도 및 위치도	47
[그림 3-12] 서울디지털산업단지	48
[그림 3-13] 오송생명과학단지	49

[그림 3-14] 경기대진테크노파크	50
[그림 3-15] 조경사업자 협동조합 '봄' 사무실 내부	52
[그림 3-16] 각 분야별 전문가 협업	53
[그림 3-17] 공동이용 회의실	53
[그림 3-18] 멜리오 일반산업단지 현황	54
[그림 3-19] ㈜멜리오유니온랜드 조직도	55
[그림 3-20] 종합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유니온랜드 전경	55
[그림 3-21] 전의 조경수 영농조합 공동사무실	56
[그림 3-22] 전의 조경수 영농조합 조직도	57
[그림 3-23] 전의 조경수 포트재배 하우스	57
[그림 3-24] 세종시 전의조경수 묘목축제	57
[그림 3-25] 일본 국산화훼 이노베이션 사업 지역별 추진사례	61
[그림 3-26] 오타시장 전경	62
[그림 3-27] 오타화훼시장 내부시설	62
[그림 3-28] 싱가포르 CUGE의 활동 모습	63
[그림 3-29] 캘리포니아 CLUH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64
[그림 3-30] 중국 복건성 해협생명공학 장주 화훼 생산 및 유통 단지 배치도	65
[그림 5-1] 조경수 재배단지	78
[그림 5-2] 관광객 방문 사진	78
[그림 5-3] 전적 시스템	78
[그림 5-4] 멜리오 일반산업단지 대상지 전경(좌) 및 조감도(우)	80
[그림 5-5] 조경복합문화단지 사업모델	81
[그림 5-6] 조경사업자 협동조합 봄	83

제1장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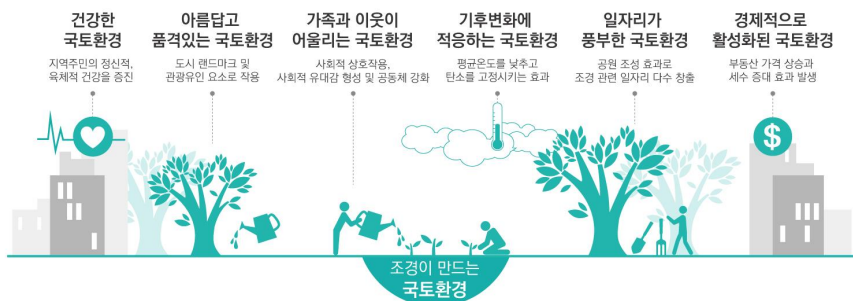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조경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

- **(기후변화 대응)** 신(新)기후체제의 도입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수단으로서 조경의 기능이 강조되는 추세
- **(건강 증진)** 비만, 우울증, 치매 등 현대 도시민들의 신체적·정신적 질환 개선은 지역사회 조경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과 밀접한 관련
- **(지역경쟁력 제고)** 유휴공간을 활용한 도시공원 조성을 통해 관광객을 유입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례 증가
- **(자연·생태적 여가 트렌드 확산)** 정원, 식물원, 가드닝 등 친환경 녹색라이프스타일의 확산과 함께 관련 산업 수요 증가
- 조경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우수한 질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산업 체계를 구축할 필요



[그림 1-1] 국토환경에서 조경분야의 역할과 기능

□ 조경산업의 집적 필요성 증가

- **(발전과정)** 1970년대 국토환경 보존을 위해 도입된 조경 분야는 1980, 90년대 친환경 도시 개발에 이어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 삶의 질 향상, 관광여가 목적지 창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발전 중
 -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1972)에 따른 국토개발 사업으로 경관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토환경 보전 관점에서 조경의 필요성 증대
 - 1971년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에 따른 경주보문관광단지 조성 사업으로 조경분야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조경산업 본격적으로 발전
 - 1980년대 분당, 일산, 평촌 등 신도시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공원녹지 조성 수요 증가와 함께 조경산업 성장
 - 최근 기후변화 적응 수단으로서 녹색인프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공원녹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조경산업 수요 확대 전망
- **(산업규모)** 조경시공, 조경설계, 조경감리, 조경 유지·관리, 조경소재 생산 및 유통 등 전체 조경산업 규모는 2015년 기준 약 8조원
 - 조경시공 분야의 매출액이 가장 큰 비중(약 80%)을 차지하며, 다음은 조경소재 생산 및 유통(약 9%)¹⁾, 설계(약 6%), 유지·관리(약 5%) 순
 - 조경산업 분야는 최근 10년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사업 규모의 영세화, 안정적 생산·유통 체계 부재, 협업 체계 미흡, 신기술 도입 어려움 등의 문제점 보유
- **(집적 필요성)** 조경산업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산업 체계는 1970~1980년대에서 크게 변하지 않아 수요에 대응한 양질의 조경서비스 공급을 위해 조경산업의 집적을 통한 조경서비스의 질적 제고 필요

※ 산업 집적시설인 클러스터의 개념은 1990년대 경영학자 크루그만과 포터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글로벌 경쟁 체제하에서 지역단위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식과 정보 교류를 통한 성장 활력을 창출하기 위한 핵심 수단²⁾

□ 조경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지자체 차원에서의 정책적·제도적 지원 필요

- **(조경진흥법 제정·시행)** 조경 공간 및 시설의 체계적인 조성·관리와 품질 향상, 조경분야의 기반조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경진흥법」 제정(2015. 1. 6.) 및 시행(2016. 1. 7.)
 - 「조경진흥법」에서는 조경분야 진흥을 위해 조경진흥시설(제7조), 조경진흥단지(제8조)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포함
 - 「조경진흥법」에 따라 2017년 수립된 조경진흥기본계획에서도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의 지정·조성에 관한 사항 포함

1) 조경수 생산 매출액에 한정해 추정

2) 임종인 외(2015), 산업단지 클러스터의 성과와 과제. 한국산업단지공단

[표 1-1]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정의

구분	정의
조경진흥시설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조경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시설물
조경진흥단지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조경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되거나 조성된 지역

- (구체적인 제도 운용 방안 부재) 타 산업진흥법에 근거해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를 지정 또는 조성한다는 조항을 마련했으나 제도의 구체적인 운용 방안 부재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의 개념과 사업모델 불분명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구체성 부족
 -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미흡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조경분야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며,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관련 제도와 사례 분석을 통해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의 운용 방향과 법령 개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
 - 둘째, 조경분야 종사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의 필요성과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
 - 셋째,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의 예상 사업모델과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주요 연구내용

□ 조경산업 현황과 공간집적의 필요성 분석

- 조경의 대상과 중요성 검토·분석
- 조경산업 현황과 문제점 검토·분석
- 조경산업 분야 공간집적의 필요성 검토·분석

□ 국내·외 사례분석

- 국내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유사사례 및 관련 제도 분석
- 해외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유사사례 분석

□ 조경분야 종사자 및 전문가 대상 인식조사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의 필요성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에 적합한 산업 유형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 및 조성에 따른 기대효과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원방안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 개선방안 도출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개념과 예상 모델 정립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원내용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단기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진흥시설과 진흥단지 관련 선행연구 검토·분석
- 경 관련 법제도 및 계획, 통계자료 검토·분석

□ 사례분석

- 유사산업 분야 진흥시설과 진흥단지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개념정의, 지정권자 및 지정절차, 지정기준, 지원내용 등을 조사·분석

□ 설문조사

- 조경분야 종사자와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의 필요성, 기대효과, 지정기준, 지원방안 조사

□ 전문가 인터뷰 조사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의 필요성, 예상 사업모델, 지정기준, 지원방안 등에 관한 의견 수렴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3) 선행연구 검토

- 선행연구 검토결과 산업분야별 진흥을 위한 법제도에서 규정된 진흥시설, 진흥단지, 진흥지구, 진흥지역 등의 지정과 운영 활성화 방안을 연구
- 김중 외(2007)는 각 지역의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스포츠산업진흥법」에서 규정된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운영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
 - 지역별 스포츠산업 경쟁력 수준을 평가하고, 스포츠산업 관련 공무원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필요성과 지원 사항 검토
 - 분석결과 지역별 스포츠산업 경쟁력에 차이가 존재하며,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는 저렴한 임대료와 관리비, 세제혜택, 정보제공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방안을 공공체육시설, 스포츠산업 사업체, 스포츠산업 정책 기준으로 구분해 설정하고, 광역도시와 중소도시로 구분해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운영 모델 제안
- 박영옥 외(2008)는 「스포츠산업진흥법」에서 규정된 스포츠산업진흥시설 및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운영 목표와 조직운영방안을 제시
 - 문헌연구, 설문조사(정책전문가, 스포츠산업체 대상), 전문가회의를 통해 연구 수행
 -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유형을 산업입지형, 허브형, 레저스포츠지구형으로 구분하였고, 유형별 지정 요건 제시
 - 입주 업체가 정부의 육성 정책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에 기여할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정조건을 정할 필요
- 김태열 외(2009)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공간집적의 필요성을 진단하고, 소프트웨어의 특화된 집적지가 포함하여야 할 효율적인 모델을 제시
 - 소프트웨어 진흥단지 조성방안을 신규 단지 조성 방법과 기존 SW기업 밀집해 있는 기존의 SW지원 집적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인프라 요건을 갖추고, 향후 단지로써 확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활성화 할 수 있는 SW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구분해 제시
 - 소프트웨어 진흥단지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연계, One-Stop 지원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유치, 공동연구 환경 구축, 금융지원 등으로 구분해 제시
- 장철순 외(2011)는 준공된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필요성 분석,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산업시설 실태조사, 산업단지 기반 시설의 지원대상시설과 지원규모 파악, 지원 기준과 우선순위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을 연구
 - 기존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은 수도권 지역을 포함하고, 수도권과 다른 지역을 차등하여 지원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도 광역시도와 일반시도를 차등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
 - 지원 대상시설로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4조의4에서 규정하는 공공시설로 하되 진입 도로, 특수교량 등 필요에 따라서는 그 지원 대상시설을 별도로 규정
- 본 연구는 2016년 「조경진흥법」시행에 따른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의 개선방안과 실효성 있는 운용방안을 국내·외 사례분석, 조경분야 종사자 및 전문가 대상 인식조사를 통해 제시하고자 함

[표 1-2]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과제명 : 스포츠산업 진흥시설 지정 및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연구자(년도) : 김종 외(2007) •연구목적 : 스포츠진흥시설 지정 방안 마련, 시설 운영 방안 제시	•문헌연구(현황 분석, 사례조사) •스포츠 관련 사업체 실증조사 •전문가 인터뷰	•공공체육시설 현황 파악 •국내외 집적시설 사례 조사 •스포츠산업 지역 경쟁력 요인 •스포츠산업 진흥시설 지정 방안 •스포츠산업 진흥시설 운영 모델
	•과제명 : 스포츠산업진흥시설 및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자(년도) : 박영옥 외(2008) •연구목적 : 스포츠산업 지원센터와 스포츠산업 진흥시설의 운영방안 구상, 센터와 진흥시설의 연계 운영 방안 모색, 지정사업 관리 방안 마련	•문헌연구(기초통계 분석, 사례 조사 등) •전문가 및 스포츠산업체 대상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정책관계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	•스포츠산업 진흥기반시설 조성의 이론적 배경과 유사사례 분석 •스포츠산업 진흥기반시설 조성의 환경 분석 •스포츠산업 진흥기반시설의 운영방안 •스포츠산업 진흥기반시설의 지정사업 관리 방안
	•과제명 : 소프트웨어진흥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자(년도) : 김태열 외(2009) •연구목적 : 소프트웨어산업law의 공간집적 필요성 진단, 소프트웨어 집적지모델 제시, 단지구축 및 사업화 방안과 법제도 개선 방안 제시	•문헌조사(해외사례 조사, 관련 현황 조사)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한 정책 자문	•소프트웨어 산업 직접의 필요성 및 효율성 검토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환경 분석 •해외 성공 클러스터 사례 분석 •소프트웨어 진흥단지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수립 •법·제도 개선안 도출
	•과제명 :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효율적 지원방안 연구 •연구자(년도) : 장철순 외(2011) •연구목적 :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필요성 분석, 기반시설 정비에 필요한 산업시설 실태조사,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대상시설과 지원규모 파악, 지원기준과 재원확보방안 마련	•문헌연구, 현지 방문조사 및 면담조사,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현황 등에 대한 조사표 조사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필요성 검토 •산업단지 지원제도와 기반시설 지원현황 분석 •기반시설 실태 및 비용분석 •외국 지원정책 분석 및 시사점 도출 •기반시설 지원방안 도출
본 연구	•조경분야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	•문헌연구(관련 법제도 검토) •국내외 사례분석 •조경분야 종사자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인터뷰조사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의 사업 모델 제시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개선방안 제시 •지원내용 개선방안 제시 •단기 및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

제2장 조경산업 현황과 공간 집적의 필요성

1. 조경의 대상과 중요성
 2. 조경산업 현황과 특성
 3. 조경산업 공간집적의 필요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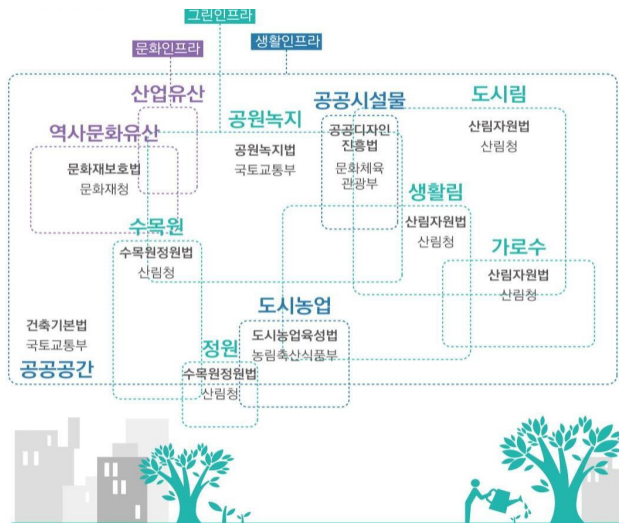
1. 조경의 대상과 중요성

1) 조경의 대상

- **(조경의 역할)** 국내 조경분야는 고도의 경제발전과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훼손지 미화, 도시 미화, 환경오염 관리, 아파트단지 옥외환경 조성, 도시 및 자연경관 관리, 문화재 관리 등의 기능 수행
 - 최근 기후변화 대응, 도시재생, 정원문화 활성화 등 사회경제 및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여 기능이 확장하고 있고, 업계 및 학계도 분화하면서 다양한 영역이 만들어지고 있음
- **(법적 정의)** '조경'에 대한 법적 정의는 "토지나 시설물을 대상으로 인문적, 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설계·시공·관리하는 것"(조경진흥법 제2조)
 - 한편, 세계조경가협회(IFLA)에서는 조경을 "환경과 디자인, 예술과 과학을 결합하여, 인간과 자연 시스템 사이에 있는 모든 외부 공간 및 도시, 농촌 등을 계획, 운영, 디자인 하는 것"으로 정의
 - 한국조경현장에서는 조경을 "아름답고 유용하고 건강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인문적·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토지와 경관을 계획·설계·조성·관리하는 문화적 행위"로 정의
- **(조경의 대상)** 조경의 대상은 기후변화 대응과 품격 있는 여가 공간 창출을 위한 녹색 인프라,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 인프라, 역사문화 및 산업 유산의 보전과 가치 향상을 위한 문화 인프라로 구분 가능

[표 2-1] 조경의 대상

구분	대상	근거법률	소관부처
녹색 인프라	공원녹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및 저수지, 옥상녹화 및 벽면 녹화, 그 밖에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수목원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 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정원	식물, 토석, 시설물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	
	도시림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형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림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 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가로수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에 심는 수목	
생활 인프라	경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 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	경관법
	공공공간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물	건축기본법
	공공 시설물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도시농업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 인프라	역사문화유산	유·무형 문화재, 사적·명승 같은 기념물, 민속자료, 문화재 자료, 향토 유적, 정원 유적, 근대문화유산, 비지정문화재 등 관련 공간	문화재보호법
	산업유산	항만, 공장, 창고, 발전소, 철도·운송·수운 시설, 농업 시설, 광업 시설, 교통 시설, 군사 시설, 쓰레기 매립지 등	문화재청
			관계부처



[그림 2-1] 조경의 대상

2) 조경의 중요성

□ 친환경 국토보전

- **(생태계 보전)** 생태적·친환경적 계획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실행 도구
 - 생태계 건강회복과 보전을 위해 중앙부처 주관의 다양한 생태복원사업과 생태휴식공간 조성 확대

※ 자연형하천정비사업(국토부), 백두대간복원사업(산림청),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환경부), 생태도시 조성사업(지자체), 생태축 조성사업(환경부) 등 하천 정비에서 도시계획까지 조경을 통한 다양한 생태복원사업 진행

- **(기후변화 대응)** 공원·녹지는 탄소 흡수, 우수 처리, 온도저감, 대기오염 해소 등 국토환경의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에 기여

※ 숲 속 산소농도 약 21.5%, 도심 산소농도 약 17 ~ 20.5% (산림 1ha 당 연간 산소생산량 약 5.46톤)
 ※ 대구시, '푸른 대구 가꾸기 사업'을 통해 나무 2,300그루를 심어 2000년 이후 평균 최고기온 1.2℃ 감소
 ※ 옥상녹화로 2~3℃의 도심 열섬현상 완화 및 연간 16.6%의 냉·난방에너지 감축



[그림 2-2] 대구 범어천복원사업
출처: <http://www.idaegu.com>



[그림 2-3] 부산 생태통로
출처: <http://news20.busan.com>

□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 **(여가 활동 수용과 휴식 공간 제공)** 공원녹지는 신체적 활동을 위한 장소와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수준과 사회적 교류 증진에 기여
- **(공동체 강화)** 커뮤니티 가든, 도시농업, 조경 관련 축제이벤트 등은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공동체감을 강화하는 녹색자석(Green Magnet)으로 작용
- **(국민건강증진)** 도시공원은 질병예방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서 출발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는 2011년 공원이 시민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한다고 발표
 - 스트레스 감소, 정신질환 치료, 비만감소 등의 직접적 건강 증진 효과
- **(녹색복지)** 공원녹지는 노인, 저소득계층,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신체적 건강, 사회적 소외감 해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정책 수단

※ 캐나다 밴쿠버시는 모든 거주민들이 걸어서 4분 이내 공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소규모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거나 보행 도로를 공원으로 전환함으로써 환경적 불평등을 최소화 하고자 함

[관련사례] 녹색복지 나눔숲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하는 녹색자금 지원 공모사업
-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나눔숲 조성
- 산림휴양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나눔길 등 조성
- 현재 전국에 323개소의 나눔 숲 조성



출처: <http://www.gn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178>

[관련사례] 꽃 속의 영국 프로젝트(Britain in Bloom)

- 영국왕립원예협회(RHS, Royal Horticultural Society)의 주도로 매년 2,100개의 지역 공동체가 참여하여 정원조성을 통해 지역 환경개선과 지역경제 부흥 도모
- 2012년 수상작 사례 중 노숙인들이 상주하는 지역을 정원으로 조성하여 그 과정에서 노숙인들이 자발적으로 정원을 유지 관리하는 등 지역의 환경 및 안전 개선



출처: <https://www.rhs.org.uk/>

□ 국가와 지역 경쟁력 제고

- 경의선숲길,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청계천 복원 등 조경 기반의 도시재생 사례 증가
- 부동산 가격 상승, 세수 증대,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조경 관련 행사이벤트 개최를 통해 지역 브랜드 구축과 경쟁력 확보



[그림 2-4] 2016년 서울정원박람회

출처: http://www.lafent.com/inews/news_view.html?news_id=120054



[그림 2-5] 순천만정원박람회

출처: <http://blog.daum.net/suncheon1/6424>

2. 조경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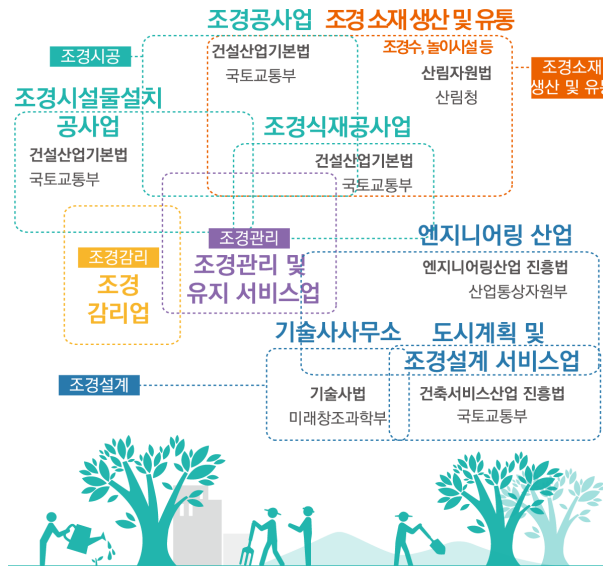
1) 조경산업 분류체계

- 조경 산업은 다양한 법령에 근거한 산업 분류 체계를 갖고 있으며, 이를 종합하면 크게 조경 설계, 조경 시공, 조경 감리, 조경 유지관리, 조경 소재 생산 및 유통 분야로 구분 가능
- **(조경 설계)** 조경 공간을 설계하는 분야로 비슷한 업역임에도 다양한 법령에 근거하여 다양한 산업 형태를 가짐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근거한 엔지니어링산업,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근거한 조경설계서비스업, 「기술사법」을 근거로 하는 조경기술사사무소 등
 - 엔지니어링 산업과 기술사사무소의 경우 감리 업무까지 포함
- **(조경 시공)**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조경공사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으로 구분
 -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예시: 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원, 정원 등의 조성 공사)
 -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예시: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 공사, 종자봄어 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 공사 등)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예시: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파고라·놀이기구·운동기구·분수대·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 **(조경 감리)** 설계안을 구현함에 있어서 공사의 완성도와 품질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산업 활동으로 앞서 분류한 엔지니어링산업, 기술사사무소 등이 이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
- **(조경 관리)**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건물주위, 도로변, 정원, 공원, 운동장 등의 환경조성에 따른 조경수, 잔디, 화초 등 각종 조경용 식물을 식재 및 유지·관리하는 산업 활동
- **(조경 소재 생산 및 유통)** 조경수, 잔디, 놀이시설, 바닥포장재 등 조경용 자재 판매 및 유통 관련 산업

[표 2-2] 조경산업 분류체계

분야	업종	업무내용	근거법률	소관부처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조경 설계	엔지니어링 산업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료, 지도, 유지 또는 보수하는 사업이나 시설물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산업통상자원부	M.72112.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공원 및 기타 휴양지역, 공항, 고속도로, 병원, 학교, 분양토지, 상업·산업·거주지역 등의 개발을 계획 및 설계하는 산업 활동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국토교통부	M.72121.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분야	업종	업무내용	근거법률	소관부처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기술사 사무소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 등을 하는 산업 활동	기술사법	미래창조과학부	
조경 시공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정원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F.41226. 조경 건설업
	조경식재 공사업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F.42139.기타 시 설물 축조관련 전문 공사업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 감리	조경 감리업	설계안을 구현함에 있어서 공사의 완성도와 품질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산업 활동으로 업무 내용에 따라 설계 감리, 검측 감리, 시공 감리, 책임 감리로 구분	-	-	M.72121.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 비스업
조경 관리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건물주위, 도로변, 정원, 공원, 운동장 등의 환경조성에 따른 조경수, 잔디, 화초 등 각종 조경용 식물을 식재 및 유지·관리 하는 산업 활동	-	-	N.74300.조경 관 리 및 유지 서비스업
조경 소재 생산 및 유통	조경수, 조경시설, 조경 도구 생산 및 유통	조경수, 잔디, 놀이시설, 바둑포장재 등 조경용 자재판매 및 유통 산업	산림기본법 /산림 자원 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A.01122.화훼작 물 매매업 A.01123.종자 및 묘목생산업 A.02011.임업용 종묘 생산업



[그림 2-6] 조경산업 분류체계

2) 조경산업 분야별 현황

□ 조경시공 분야

- 조경시공 분야는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으로 구분

[표 2-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종류

구분	건설업종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 토목공사업 2. 건축공사업	3. 토목건축공사업 4.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5. 조경공사업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 실내건축공사업 2. 토공사업 3. 미장·방수·조적공사업 4. 석공사업 5. 도장공사업 6.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7.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8. 지붕판금·건축물 조립공사업 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0. 기계설비공사업 11.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12. 보링·그라우팅공사업 13. 철도·궤도공사업 14. 포장공사업 15. 수중공사업 16. 조경식재공사업 17.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18. 강구조물공사업 19. 철강재설치공사업	20. 석도설치공사업 21. 준설공사업 22. 승강기설치공사업 23. 가스시설시공업 24.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25.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26. 난방시공업(제1종) 27. 난방시공업(제2종) 28. 난방시공업(제3종) 29. 시설물유지관리업

자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별표1)

- (조경시공 분야 산업현황) 매출액 6조 3,971억 원, 사업체수 7,918개 (15)
 - 조경공사업: 매출액 3조 863억 원(전체 종합건설업의 2%), 사업체수 1,479개
 - 조경식재공사업: 매출액 2조 809억 원, 사업체수 4,063개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매출액 1조 2,299억 원, 사업체수 2,377개
 - 조경공사업의 업체당 기성금액은 21억원으로 종합건설업의 평균 업체수당 기성금액 (114억)의 약 1/5정도 수준인 것으로 보아 타 분야에 비해 사업체가 영세한 것으로 추정

[표 2-4] 종합건설업 현황 (2015년)

(단위 : 개소, %, 억 원)

구분	합 계	토건**	토 목	건 축	산업설비	조 경
사업체수*	13,197	3,296	2,523	5,524	375	1,479
	100%	25%	19%	42%	3%	11%
기성금액	1,501,493	-	290,037	1,036,627	143,966	30,863
	100%	-	19%	69%	10%	2%
업체당 기성금액	114	-	70	145	384	21

자료 :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http://www.cak.or.kr>)

* 등록수 기준, **공사종류는 토목, 건축으로 구분되지만, 업체의 경우 토목과 건축 공사를 모두 수행한 기업은 토건으로 구분하며, 업체당 기성금액 산정 시 토목, 건축에 각 50%씩 가산하여 산정

-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업체당 기성금액은 각 5억원으로 전문건설업 평균인 13억 원의 약50% 수준인 것으로 보아 타 분야에 비해 영세한 것으로 추정

[표 2-5] 전문건설업 현황 (2015년)

(단위 : 개소, %, 억 원)

구분	합계	실내건축 공사업	토공사업	미장.방수. 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 공사업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사업체수*	69,506	4,697	6,020	2,112	2,749	2,598	2,639	6,134
	100%	7%	9%	3%	4%	4%	4%	9%
기성금액	876,236	97,673	113,029	35,827	15,994	16,716	19,634	75,839
	100%	11%	13%	4%	2%	2%	2%	9%
업체당 기성금액	13	21	19	17	6	6	7	12
구분	지붕판금. 건축물조 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기계 설 비 공사업	상.하수 도 설비공사업	보링 그라우팅 공사업	철도궤도 공사업	포장공사업	수종공사업
사업체수*	727	11,298	7,062	7,078	966	39	2,174	379
	1%	16%	10%	10%	1%	0%	3%	1%
기성금액	16,926	154,478	149,969	31,194	9,620	2,975	16,528	5,822
	2%	18%	17%	4%	1%	0%	2%	1%
업체당 기성금액	23	14	21	4	10	76	8	15
구분	조경식재 공사업	조 경 시 설 물 설치공사업	강구조물 공사업	철강재설치 공사업	삭도설치 공사업	준설 공사업	승 강 기 설 치공사업	시 설 물 유 지관리업
사업체수*	4,063	2,377	689	40	12	32	462	5,159
	6%	3%	1%	0%	0%	0%	1%	7%
기성금액	20,809	12,299	28,268	4,451	137	2,264	4,890	40,893
	2%	1%	3%	1%	0%	0%	1%	5%
업체당 기성금액	5	5	41	111	11	71	11	8

자료: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http://www.cak.or.kr>)

* 등록수 기준

- **(매출액 추이)** 조경시공 분야 매출액은 2009년까지 급격하게 성장한 이후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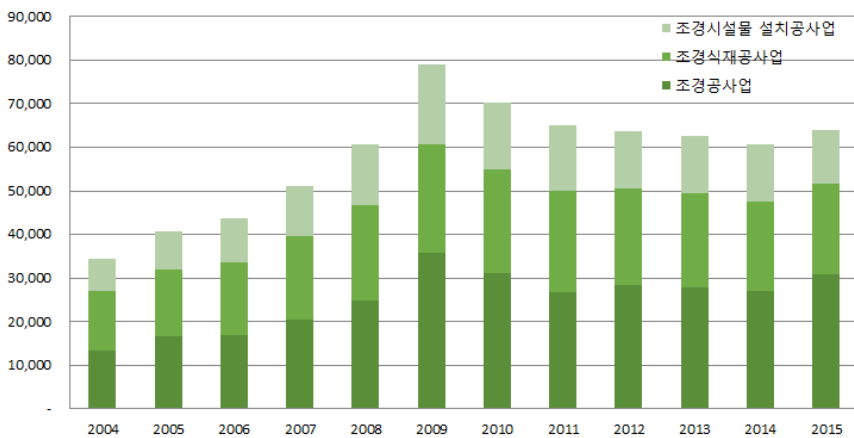
* 34,412억('04) → 78,955억('09) → 63,757억('12) → 63,971억('15)

[표 2-6] 2006~2015년 조경시공 분야 기성금액

(단위: 억 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합	34,412	40,821	43,620	51,161	60,731	78,955	70,343	65,117	63,757	62,680	60,647	63,971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7,236	8,882	10,094	11,597	13,906	18,307	15,535	15,072	13,180	13,128	13,145	12,299
조경식재 공사업	13,914	15,373	16,494	18,973	22,057	24,720	23,788	23,360	22,258	21,657	20,495	20,809
조경공사업	13,262	16,566	17,032	20,591	24,768	35,928	31,020	26,686	28,319	27,895	27,008	30,863

자료: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http://www.cak.or.kr>) / 대한전문건설협회 홈페이지(<http://www.kosca.or.kr/>)



[그림 2-7] 2004~2015년 조경시공 분야 기성실적

자료: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http://www.cak.or.kr>) / 대한전문건설협회 홈페이지(<http://www.kosca.or.kr/>)

- **(지역별 기성실적)** 지역별(본사위치) 기성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금액은 경기도, 서울시, 전라남도 순으로, 건수는 경기도, 서울시, 경상북도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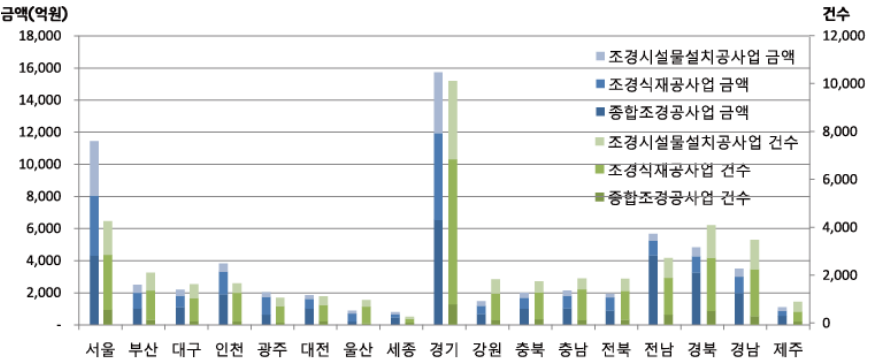
[표 2-7] 2015년 조경 시공분야 지역별 기성실적 현황

(단위: 건, 억원)

지역	종합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국	4,442	30,863	24,844	20,809	13,338	12,299	42,624	63,971
서울	613	4,309	2,301	3,747	1,400	3,382	4,314	11,438

지역	종합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부산	200	1,013	1,216	988	749	502	2,165	2,503
대구	136	1,099	957	727	590	366	1,683	2,192
인천	120	1,899	1,200	1,406	398	528	1,718	3,833
광주	69	630	692	1,112	358	284	1,119	2,026
대전	139	1,008	680	612	366	244	1,185	1,864
울산	52	203	688	494	279	199	1,019	895
세종	73	450	173	207	80	145	326	803
경기	837	6,543	6,063	5,402	3,267	3,785	10,167	15,730
강원	172	660	1,125	533	584	285	1,881	1,477
충북	209	1,011	1,123	680	465	306	1,797	1,997
충남	184	1,022	1,284	797	460	313	1,928	2,132
전북	189	879	1,215	828	511	248	1,915	1,955
전남	409	4,337	1,534	910	833	425	2,776	5,672
경북	565	3,251	2,211	1,030	1,376	553	4,152	4,834
경남	354	1,979	1,961	1,024	1,216	509	3,531	3,512
제주	121	563	421	314	406	225	948	1,102

자료 :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http://www.cak.or.kr>) / 대한전문건설협회 홈페이지(<http://www.kosca.or.kr/>)



[그림 2-8] 2015년 조경시공 분야 지역별 기성실적

자료 :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http://www.cak.or.kr>) / 대한전문건설협회 홈페이지(<http://www.kosca.or.kr/>)

□ 조경설계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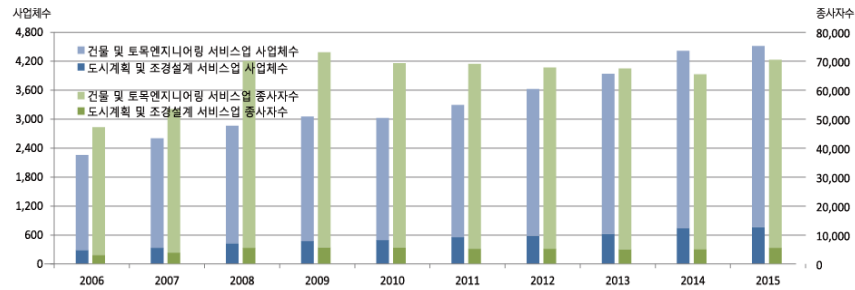
- 조경설계분야의 산업현황은 일괄적으로 집계하고 있지 않아 파악이 어려우나 한국산업 통계에서 발표하는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서비스업 현황 자료와 엔지니어링 통계 편람의 조경 엔지니어링 사업자 현황 자료, 한국기술사회에서 발표하는 조경기술사사무소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유추
- **(한국산업통계에 의한 현황)** 매출액 5,090억 원, 사업체수 767개, 종사자수 5,445명(15)
 - 사업체당 종사자수 평균 7.1명, 1인당 매출액 93백만 원
 - 전체 건축 서비스산업 매출액의 1.9%, 사업체의 3.7%, 종사자의 2.7% 차지

※ 한국산업분류체계에서 조경설계에 해당하는 분야는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 → 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 도시 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과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표 2-8] 2006~2015년 조경설계 분야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사업체수(개소)	292	336	433	479	496	559	586	628	741	767
종사자수(명)	2,978	3,744	5,440	5,551	5,587	5,102	5,063	4,913	5,041	5,445
업체당 종사자수(명)	10	11	13	12	11	9	9	8	7	7
매출액(억원)	-	-	-	-	-	-	-	-	-	5,090
업체당 매출액(억)	-	-	-	-	-	-	-	-	-	7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일부포함)										
사업체수(개소)	1,967	2,269	2,427	2,574	2,525	2,735	3,038	3,312	3,672	3,745
종사자수(명)	44,062	49,546	64,423	67,305	63,546	63,764	62,581	62,436	60,262	64,937
업체당 종사자수(명)	22	22	27	26	25	23	21	19	16	17
매출액(억)	-	-	-	-	-	-	-	-	-	87,724
업체당 매출액(억)	-	-	-	-	-	-	-	-	-	23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kostat.go.kr)



[그림 2-9] 2006~2015 조경설계 분야 사업체 수 및 종사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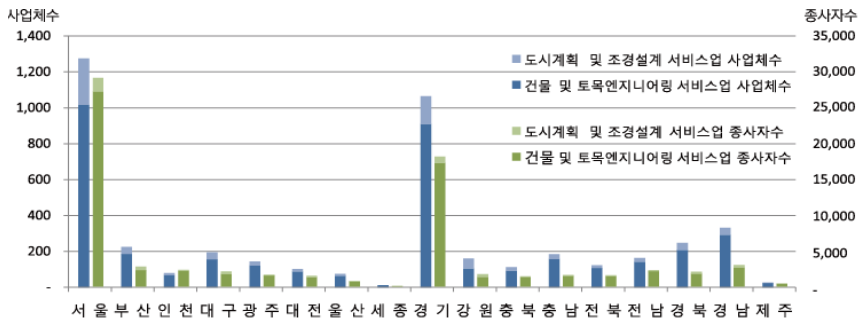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kostat.go.kr)

-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종사자수 보다 사업체수가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소규모 사업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사업체수 보다 종사자수에서 서울, 경기도와 지방의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지방의 사업체가 더 소규모인 것으로 추정

[표 2-9] 조경설계 분야 지역별 산업현황

행정 구역별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서비스업(일부포함)		
	사업체수	종사자수	업체당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업체당 종사자수
서울	1,016	26,425	26	259	1,815	7
부산	185	2,224	12	40	457	11
인천	66	2,114	32	13	129	10
대구	156	1,685	11	38	347	9
광주	121	1,475	12	22	140	6
대전	88	1,291	15	13	158	12
울산	64	698	11	11	76	7
세종	11	56	5	-	-	-
경기	910	16,761	18	154	841	5
강원	105	1,308	12	55	371	7
충북	93	1,305	14	19	85	4
충남	157	1,450	9	26	121	5
전북	108	1,392	13	15	139	9
전남	142	2,095	15	21	120	6
경북	208	1,732	8	39	259	7
경남	292	2,546	9	39	368	9
제주	23	380	17	3	19	6
전국	3,745	64,937	17	767	5,445	7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kostat.go.kr)



[그림 2-10] 2015년 지역별 조경설계 분야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단위 : 개소/명)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kostat.go.kr)

• **(엔지니어링 사업 현황)** 조정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수주실적은 2008년까지 꾸준하게 증가해오다가 큰 폭으로 상승한 2009년을 기점으로 감소하였으나, 최근 다시 상승추세

- 전체 건설 분야에서 조정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
- 전체 건설 분야에서 조정분야의 수주금액은 5% 미만인데 반해 사업체수는 30% 이상인 것으로 보아 타 건설 분야에 비해 소규모 사업체가 많은 것으로 추정
- 전체 건설 분야 업체당 수주금액(1,071백만원)에 비해 조정분야 업체당 수주금액(159백만원)이 작은 것으로 보아 타 건설분야에 비해 영세한 것으로 추정

[표 2-10] 조정 엔지니어링 분야 산업현황

구분	조정				건설			
	수주실적 (건)	수주실적 (백만원)	사업체수 (개소)	업체당수주 금액(백만원)	수주실적 (건)	수주실적 (백만원)	사업체수 (개소)	업체당수주 금액(백만원)
2016	3,166 (9.1%)*	161,458 (4.5%)	1,017 (30.3%)	159	34,844	3,599,306	3,361	1,071
2015	2,640 (8.8%)	147,836 (4.6%)	978 (30.6%)	151	30,013	3,195,983	3,196	1,000
2014	2,530 (9.4%)	130,773 (4.9%)	911 (30.2%)	144	26,927	2,687,535	3,019	890
2013	2,475 (8.9%)	123,363 (4.1%)	902 (29.2%)	137	27,847	3,004,941	3,091	972
2012	2,735 (9.0%)	138,774 (4.4%)	802 (27.0%)	173	30,249	3,166,491	2,973	1,065
2011	2,775	165,123	741 (25.7%)	223	-	-	2,878	-
2010	2,897	161,184	698 (25.3%)	231	-	-	2,759	-
2009	3,678	593,578	648 (24.9%)	916	-	-	2,598	-
2008	3,396	188,884	582 (23.8%)	325	-	-	2,441	-
2007	2,663	145,619	527 (23.0%)	276	-	-	2,289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17) 2017 엔지니어링 통계편람

* 건설 분야 대비 조정 분야 비율

- (조경기술사사무소 등록현황) 2016년 4월 기준, 국내의 조경 분야 기술사사무소의 등록현황은 총 65개소

[표 2-11] 1993~2016년 조경 기술사사무소 등록현황(2016년 4월 기준)

(단위: 개소)

등록년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총계
업체수	2	0	1	1	1	1	65
등록년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업체수	8	4	3	1	3	1	
등록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업체수	5	3	2	3	1	1	
등록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업체수	3	4	4	6	5	2	

자료: 한국기술사회 홈페이지(<http://www.kpea.or.kr/>)

* 위 등록현황은 현재 한국기술사회에 조경 기술사사무소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자격등록의 정지·만료·결격 등의 이유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제외

□ 조경관리 분야

- 조경 관리 분야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일종으로서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Landscape Care and Maintenance Service Activities)'으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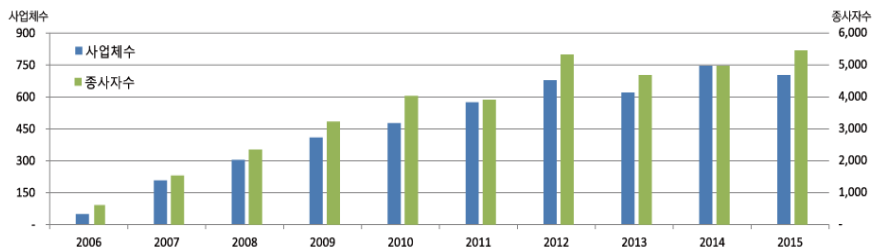
* 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건물주위, 도로변, 정원, 공원, 운동장 등의 환경조성에 따른 조경수, 잔디, 화초 등 각종 조경용 식물을 식재 및 유지·관리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며, 조경수 및 관목 보호 활동 포함

- (조경관리 분야 산업현황) 매출액 4,204억, 사업체수 703개, 종사자수 5,459명('15)
 - 조경관리 분야의 산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표 2-12] 2006~2015년 조경관리 분야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사업체수(개소)	50	207	305	410	477	575	678	621	746	703
종사자수(명)	615	1,542	2,353	3,230	4,034	3,913	5,328	4,683	4,978	5,459
업체당 종사자수(명)	12	7	8	8	8	7	8	8	7	8
매출액(백만원)	-	-	-	-	-	-	-	-	-	420,385
업체당 매출액(백만원)	-	-	-	-	-	-	-	-	-	598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kostat.go.kr)



[그림 2-11] 2006~2015년 조경관리 분야 사업체수, 종사자수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kostat.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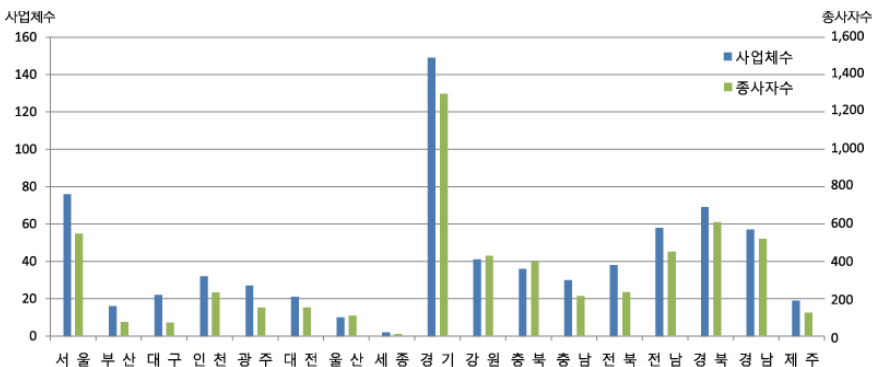
- (조경관리 분야 지역별 분포)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경기, 서울 지역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타 분야에 비해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나타남

* 조경 시공 분야 50%, 조경설계 분야 30%, 조경관리 분야 66%

[표 2-13] 2015년 조경관리 분야 지역별 현황

행정구역별	사업체수 (개)	종사자수(명)	업체당 종사자수(명)	행정구역별	사업체수 (개)	종사자수(명)	업체당 종사자수(명)
서울	76	533	7	강원	41	416	10
부산	16	70	4	충북	36	388	11
대구	22	69	3	충남	30	207	7
인천	32	225	7	전북	38	227	6
광주	27	147	5	전남	58	438	8
대전	21	146	7	경북	69	593	9
울산	10	104	10	경남	57	506	9
세종	2	8	4	제주	19	119	6
경기	149	1,263	8	전국	703	5,459	8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kostat.go.kr)



[그림 2-12] 2015년 지역별 조경관리 분야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단위 : 개소/명)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kostat.go.kr)

□ 조경소재 생산 및 유통 분야

- 조경소재 생산 및 유통 분야에 대한 산업 현황은 집계되고 있지 않지만 「환경과조경」에서 2년마다 발표하고 있는 조경 및 관련분야 명부(잡지 광고 참여 업체)와 산림청에서 발표하는 임업통계 연보 자료 활용
- **(조경 소재 생산 분야 산업 현황)** 수경시설물업, 조경시설·놀이시설물업, 조경용자재판매업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생식물생산업, 실내조경업, 수경시설물업, 비탈면녹화업, 경관조명업은 점진적인 증가세를 나타냄

[표 2-14] 조경소재생산업체 분류 및 연도별 업체수

(단위 : 개소)

구분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자생식물생산업	18	20	21	24	34	33
잔디판매업	25	24	21	18	18	17
목재방부가공처리업	19	17	18	19	19	19
웬스제작 및 공급업	20	18	16	-	-	-
원예종묘업	4	4	4	5	9	11
실내조경업	12	11	10	15	15	19
수경시설물업	9	8	12	17	22	25
유통판매업	4	4	3	7	-	-
조경시설·놀이시설물업	15	16	19	27	44	55
조경용자재판매업(정비·약재·수목자재)	9	7	21	23	39	41
바닥포장재	20	18	20	22	23	22
토양생산 및 판매업	7	8	8	11	10	10
비탈면녹화	-	-	8	10	10	11
경관조명	-	-	1	2	4	8
나무병원	-	-	-	-	4	5
온실제작설치	-	-	3	3	2	2
기타	-	-	4	-	4	6
계	162	155	189	203	257	284

자료: 「환경과조경」, 별책부록 조경 및 관련분야 명부(2008)

- **(조경수 생산 분야 산업 현황)** 임업통계연보에 따른 조경수 생산은 지난 10년간 꾸준한 산업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데, 조경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생산 규모 정체되는 것으로 보아 공급 부족 예상

[표 2-15] 조경수 생산 및 생산액 현황(2006~2015)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생산량(천본)	71,857	80,910	83,116	109,287	110,318
생산액(백만원)	834,330	777,512	850,351	820,796	759,023
임가(가구)*	10,563	10,563	10,563	10,563	16,740
생산소득(천원)	-	-	-	-	17,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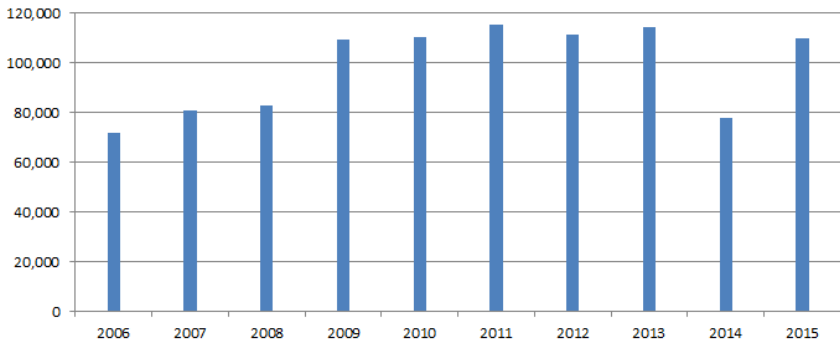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생산량(천본)	115,215	111,515	114,428	77,663	110,043
생산액(백만원)	774,948	678,257	763,559	637,903	736,023
임가(가구)*	16,740	16,740	16,740	16,740	13,824
생산소득(천원)	23,574	23,114	24,917	27,958	31,200

자료 : 산림청 임업통계연보(<http://www.forest.go.kr>) 임업통계연보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kostat.go.kr)

*통계청(2010,2016), 농림어업총조사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공표주기가 5년으로 2006~2009년, 2010~2014년까지 같은 값

- 임업통계연보에 따른 지역별 조경수(관상작물)* 재배 면적을 살펴보면 전라남·북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다음은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순으로 넓게 나타남

* 관상식물 : 조경수, 분재, 야생화, 시설관상작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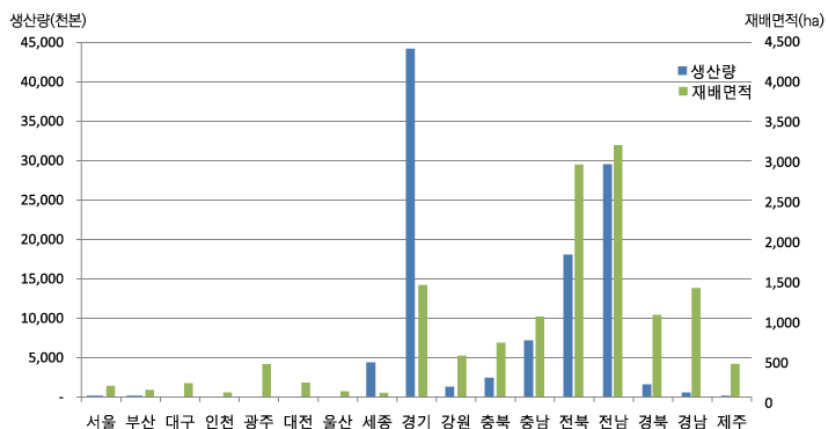
[그림 2-13] 2006~2015년 조경수 생산량 추이 (단위 : 천본)

자료 : 산림청 임업통계연보(<http://www.forest.go.kr>)

[표 2-16] 2015년 지역별 조경수(관상식물) 재배 현황

행정구역별	생산량 (천본)	생산액 (백만원)	임가 (가구)	재배면적 (ha)	행정구역별	생산량 (천본)	생산액 (백만원)	임가 (가구)	재배면적 (ha)
서울	179	1,280	115	139	강원	1,313	49,549	513	514
부산	168	14,055	113	87	충북	2,468	63,028	723	676
대구	37	2,383	262	173	충남	7,192	102,384	1,025	1,003
인천	41	4,671	82	59	전북	18,093	130,708	2,155	2,897
광주	30	2,436	434	411	전남	29,539	83,115	2,616	3,138
대전	7	742	178	180	경북	1,617	43,448	860	1,025
울산	10	582	74	73	경남	573	27,878	1,293	1,357
세종	4,399	45,325	78	53	제주	174	6,864	282	413
경기	44,204	157,573	1,853	1,394	전국	110,043	736,024	12,656	13,594

자료 : 산림청 임업통계연보(<http://www.forest.go.kr>)



[그림 2-14] 2015년 지역별 조경수(관상식물) 생산량/재배 면적 현황 (단위 : 천본/ha)

자료 : 산림청 임업통계연보(<http://www.forest.go.kr>)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kostat.go.kr)

- 조경수를 재배하는 임가의 약 78%가 1ha(1 만㎡)미만의 재배지로 대부분 소규모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7] 2015년 지역별 조경수(관상식물) 재배 면적 규모별 임가수

(단위: 가구)

행정구역별	0.1ha 미만	0.1ha~0.3ha	0.3ha~0.5ha	0.5ha~0.7ha	0.7ha~1.0ha	1.0ha 이상
서울	6	51	16	9	10	23
부산	4	48	22	14	6	19
대구	8	99	59	33	19	44
인천	8	29	13	10	6	16
광주	7	108	101	54	55	109
대전	9	70	36	16	10	37
울산	4	32	13	7	4	14
세종	1	29	25	7	7	9
경기	47	727	452	219	138	270
강원	57	123	99	71	50	113
충북	40	242	152	82	65	142
충남	65	355	209	108	86	202
전북	64	626	452	253	182	578
전남	81	663	526	317	298	731
경북	55	282	175	93	78	177
경남	75	437	286	123	126	246
제주	3	59	61	31	31	97
전국	534	3,980	2,697	1,447	1,171	2,827
	(4.2%)	(31.4%)	(21.3%)	(11.4%)	(9.3%)	(22.3%)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kostat.go.kr)

- 조경수는 유통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중간상인에 의한 판매량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49.9%)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중간상인에 의해 불합리한 가격 형성의 문제 발생³⁾
- 광주, 경남 하동, 경북 고령, 충남 논산 등에 조경수 유통센터가 설립되어 있으나, 네트워크 형성 미비로 센터를 통한 거래는 약 1% 수준⁴⁾

□ 조경산업 종합 현황

- **(조경시공 분야 지속적 성장 추세)** 2000년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해오다 2009년을 기점으로 정체 추세
- **(조경설계 분야 영세화)** 조경설계 분야의 경우 사업체수, 종사자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매출액은 감소하는 추세
 - 10~30명 규모의 직원을 보유한 중·소규모 설계사무소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 중·소규모 설계사무소의 주요 수주 물량은 공동주택단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최근 공동주택 사업 축소로 영세화 가속
 - 해외에 비해 조경설계요율이 낮은 상태*이며, 공동주택단지 조경설계는 대부분 건축분야로부터 하도급을 받기 때문에 더 낮은 수준

* 미국, 공사비 대비 조경설계요율 10~15% 수준,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조경설계요율 4~5% 수준, 민간 부문의 경우 평균 3% 내외

- 공공사업의 입찰, 설계공모전, 사업수행능력평가, 일괄입찰제 등의 발주제도는 대규모 설계사무소에 유리
- **(조경관리 분야 급성장)** 전체 조경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
 - 조경수요 증가에 따라 유지관리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법체계 미비와 전문기술 부족 등의 문제점 보유
- **(조경소재 생산 및 유통과정 불투명)** 조경 시설물의 경우 산업 현황 통계가 집계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조경수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로, 재배기술의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로 재배되고 있고 유통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산업 규모 대비 성장 둔화) 조경수 재배 산업은 조경산업 전체의 약 8%를 차지할 정도로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연도별 생산 금액 변화는 정체⁵⁾
 - (전문적 생산기술 미비) ‘조경수’라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제조업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재테크 수단으로서 인식되면서 부업의 형태를 갖는 경우가 많아 저가수주, 품질저하가 우려되며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생산기술은 원시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⁶⁾

3) 산림청(2014), 조경수산업 육성대책, 산림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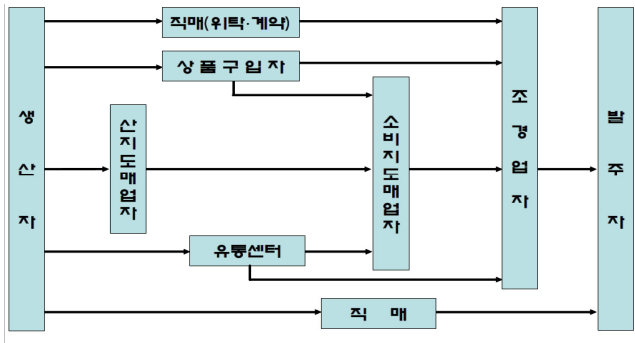
4) 상계서

5) 임병을(2016), “조경수 유통, 자세히 들여다보기”, 에코스케이프 92호

6) 상계서

- (복잡하고 불투명한 유통체계) 생산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활동하는 중개상이 정보를 독점하고 가격 결정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불투명하고 복잡한 유통 구조를 가지며, 공급과 수요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⁷⁾

※ 복잡하고 불투명한 유통 구조로 인해 일시적으로 품질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수량이 충분해도 품질이 불량하거나 구매 조건이 맞지 않아서 무용지물인 경우 발생



[그림 2-15] 조경수 유통 경로
출처 : 산림청(2014), 조경수산업 육성대책, 산림청

- **(조경산업 종합)** 조경산업은 전체 건설업의 약 13%, 국내 총 생산금액의 0.5%를 차지하는 규모의 분야로 최근 10년간 전반적으로 성장 추세에 있으나, 하나의 독립적 산업분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
 - 조경산업 현황에 대해 종합적인 통계 분류체계 구축 필요

※ 국토교통부에 속하는 건설업, 산업통상자원부에 속하는 엔지니어링산업, 미래창조과학부에 속하는 기술사, 산림청에 속하는 조경수 생산 등 다양한 분야로 흩어져 있는 상태

[표 2-18] 조경산업 종합현황(2015)

구분	사업체수(개소)	종사자수(명)	매출액(백만원)
조경시공	7,918	18,792*	6,397,100
조경설계**	767	5,445	508,976
조경관리	703	5,459	420,385
조경소재 생산 및 유통***	13,824	13,824	736,023
합계	23,212	43,520	8,062,484

* 통계자료 부재로 업체최소 필요인원(조경공사업 4인, 조경식재공사업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인)을 적용하여 추정
 ** 설계분야의 매출액 통계는 일괄적으로 집계되지 않으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도시계획 및 조경 설계서비스업의 매출액으로 추정
 ***조경소재 생산 및 유통 분야는 조경수 생산 임가수와 생산소득 정보로 추정
 ※ 조경감리 분야는 통계 자료 부재로 조경 산업 현황 규모에서 제외

7) 상계서

3.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의 필요성

□ 국가 경쟁력 확보

- **(일자리 창출과 국내총생산 증가)**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조성으로 인해 조경산업 분야의 매출액 상승 및 일자리 창출 기대
- **(지역경제 활성화)**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가 입주한 지역의 세수 확보와 인구 증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조경산업 혁신)** 집적에 의한 정보교류 등으로 조경산업 생산성 향상과 기술적 역량 강화

※ 국내 조성된 산업단지 클러스터의 경우 산학연 네트워킹으로 혁신기반이 강화됨에 따라 산업단지와 참여기업의 생산, 수출, 고용, 투자가 늘어나고 생산성과 성장 능력 개선, 자생적 커뮤니티 활성화 등의 성과 달성⁸⁾

- **(해외 진출 활성화 도모)** 집적에 의한 신기술 도입, 산업 체계 개선으로 해외 조경 시장 진출 활성화 도모

□ 사회적 수요 증가에 대응한 조경 산업 육성

- **(정원문화 확산)** 삶의 질이 향상함에 따른 여가 활동 공간으로서 공원녹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여가활동의 대상으로서 실내 가드닝, 주택 정원 가꾸기 등 정원문화 확산 추세

※ 국내 정원산업 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 12,792억원으로 조경산업 전체 매출액의 약 20% 차지

- **(정책 수요 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녹지 공간 조성 정책, 동네 단위의 옥외 주거환경 개선을 포함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 정책 증가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조성을 통해 사회적 수요 증가에 대응한 우수한 질의 조경 소재 생산과 공간 환경 조성에 기여

□ 영세하고 신기술 도입이 시급한 조경사업체 지원

- 조경산업은 수요 증가 대비 조경시공, 설계, 감리, 소재 생산 및 유통 등 전 분야 사업체가 대부분 영세한 상태
 - 이로 인해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신기술 개발과 고품질 디자인 추구는 어려운 실정

8) 임종인 외(2015), 한국의 산업단지 클러스터 성과와 과제, 한국산업단지공단

- 조경수 등 조경소재의 안정적 생산기반과 체계적 유통구조 부재로 인해 불공정한 가격 결정 및 품질 저하 문제 심각
- 정부 차원에서의 조경사업체 지원 강화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필요

□ 집적에 따른 긍정적 효과 창출

- **(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비용 절감)** 기반 시설 설치, 자재 수급, 임대료, 기타 유지 관리 비용 절감 가능
- **(행정절차 효율화)** 조달청 등록, 산지전용 허가, 조경수 검역, 조경시설 안전성 검사 등의 행정절차의 효율적 진행 가능
 - 공공사업 참여를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조달청 등록, 조경시설에 대해 수행하는 안전성 검사 등의 행정적 절차를 일괄 수행함으로써 인해 비용, 시간, 행정 편의 도모 가능
 - 조경수를 식재 및 재배하기 위해 필요한 벌채 및 굴취허가, 산림조합 가입, 산림경영계획 작성 등의 행정적 절차의 일괄 처리로 업무 효율 도모
- **(신기술 개발과 협업체계 구축)** 컨테이너 재배, 운송기술, 온라인 판매 등의 생산부터 유통, 계획까지 조경 전반에 걸친 신기술 개발 및 정보 교류
 - 전문기업의 집적은 암묵적 지식과 학습메커니즘으로 특유의 성장역동성을 가지며, 전문 인력의 육성 및 공급에도 유리⁹⁾
 - 기업간의 정보 및 의견 교류가 활발해지고 그로인한 신기술 개발 및 도입으로 조경 계획 및 소재 품질 향상 기대
 - 조경공간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조경공간 설계부터 시공까지 토탈 솔루션 제공 가능
 - 조경공간 조성에 필요한 조경수, 조경시설 등을 한 공간에서 완제품 형태로 제공 가능하며 조경소재의 안정적 공급 및 유통 체계 확보 가능

9) 김태열 외(2009), 소프트웨어진흥단지 활성화 방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3장 관련 제도 및 사례분석

- 1. 관련 제도 분석
- 2. 국내 사례 분석
- 3. 해외 사례 분석

1. 관련 제도 분석

1) 분석개요

□ 분석 대상

- 근거 법률이 존재하고, 법률에 근거해 해당 시설·단지가 지정 또는 조성된 사례

□ 분석 방법

- 분석요소로는 정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원내용, 운영·관리 등 5개 항목 사용
- 조정진흥시설과 조정진흥단지 내용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표 3-1] 조정진흥시설과 조정진흥단지 관련 제도

구분	근거 법률
시설	조정진흥시설 조경진흥법 제7조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
	벤처기업집적시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1조
	문화산업진흥시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9조
단지	조정진흥단지 조경진흥법 제8조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6조
	벤처기업육성특정지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
	문화산업단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
	산업기술단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2) 분석 결과

□ 정의

- 진흥시설과 진흥단지는 공통적으로 관련 사업자 및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유치하거나 기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적으로 지정·고시되어 있는 시설 또는 단지를 의미

[표 3-2] 정의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관련 제도)

구분	정의	근거법률	도입시기
조경진흥 시설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조경 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설물	조경진흥법	2016
문화산업 진흥시설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하여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2000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2000
벤처기업 집적시설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하여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된 건축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1997
스포츠산업 진흥시설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시설물	스포츠산업 진흥법	2007
엔지니어링 산업진흥시설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한 건축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2010
조경진흥 단지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역	조경진흥법	2016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협업화(協業化)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2000
문화산업 단지	기업·대학·연구소·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 개발·기술훈련·정보교류·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건물·시설의 집합체로 지정·개발된 산업단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999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 고시된 지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2003
첨단의료 복합단지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08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지 및 부지에 창업자, 벤처 기업 등의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2007
산업기술 단지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건물·시설 등의 집합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1998

□ 지정기준

- 서울 및 수도권은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집적 수준을 요구하며, 특히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중소기업 입주비율 조건이 타 산업진흥시설 보다 높은 수준
- 해당 산업의 진흥을 위해 특정 지역을 단지 또는 지구의 형태로 지정하는 유형은 신규로 건물과 시설의 집합체를 조성하는 경우, 산업집적도가 높은 지역을 제도적으로 지정하는 경우, 산업의 집적 및 활성화를 위해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경우로 구분

[표 3-3] 지정기준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관련 제도)

구분	지정권한	지정요건		
		관련 사업자수	중소기업 비율	관련시설 면적
조경진흥시설	국토교통부장관	5 (서울시 10)	30%	50%
문화산업 진흥시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 (서울시 20)	30%	50%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10 (서울시 20)	50%	50%
벤처기업 집적시설	시·도지사	4 (수도권 외 3)	70% (수도권 외 50%)	각종 50%
스포츠산업 진흥시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30%	-
엔지니어링 산업진흥시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5 (서울시 10)	30%	50%

구분	지정권한	지정요건		
		관련 사업자수	조성계획수립여부	지정/조성 검토조건
조경진흥단지	국토교통부장관	10 (서울시 20)	○	10개(서울시 20개) 이상 사업자 모집 / 지원기관 입지 / 기반시설 확충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의 10%	○	지역 내 벤처기업 수 / 지역 내 기반시설
문화산업단지	국토교통부장관	-	○	지역 간 균형 / 중복투자 여부 / 지역경제발전 기여도 / 자원조달계획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기존 산업집적 관련 계획과의 조화 / 기반시설 확충 및 자원조달 방안의 타당성
첨단의료 복합단지	보건복지부장관	-	○	국토균형발전 / 타 법률에서 지정·개발 중인 지역에 입지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중소기업청장	-	○	집적지역의 면적 / 개발계획의 실현가능성
산업기술단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개발계획의 실현가능성

□ 지정권자 및 지정절차

- 진흥시설과 진흥단지의 지정권자는 대부분 해당부처의 장이며, 지정절차는 사업자가 일정 양식의 신청서와 일정요건 구비 증명서를 첨부해 해당부처 장관에게 제출하는 형태

[표 3-4] 지정권자 및 지정절차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관련 제도)

구분	내용
진흥 시설	조경진흥시설 ·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지정절차 : 지정신청(사업자) → 일정양식의 신청서 / 일정요건 구비 증명서 첨부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 지정권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지정절차 : 지정신청(사업자) → 일정양식의 신청서 / 일정요건 구비 증명서 첨부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
	벤처기업 집적시설 · 지정권자 : 시·도지사 · 지정절차 : 시·도지사 권한으로 지정 → 1년 이내 일정요건 달성
	스포츠산업 진흥시설 · 지정권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지정절차 : 지정신청(지방자치단체장) → 일정양식의 신청서 / 일정요건 구비 증명서 첨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문화산업 진흥시설 · 지정권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지정절차 : 지정신청(지자체를 포함한 사업자) → 일정양식의 신청서 / 일정요건 구비 증명서 첨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시설 · 지정권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지정절차 : 지정신청(사업자) → 일정양식의 신청서 / 일정요건 구비 증명서 첨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
진흥 단지	조경진흥단지 ·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지정절차 : 지정신청(사업자) → 일정양식의 신청서 / 일정요건 구비 증명서 첨부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 지정권자 : 중소기업청장 · 지정절차 : 지정신청(시·도지사) → 일정양식의 신청서 / 일정사항 포함된 육성계획서 첨부 →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
	문화산업단지 ·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지정절차 : 지정신청(지방자치단체장) → 일정양식의 신청서 / 일정사항 포함된 단지조성계획서 첨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 검토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 요청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 지정권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지정절차 : 지정신청(시·도지사) → 일정양식의 신청서 / 일정사항 포함된 활성화계획서 첨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요청
	첨단의료 복합단지 · 지정권자 : 보건복지부장관 · 지정절차 : 일정사항 포함된 조성계획 수립(보건복지부장관) → 위원회 심의·의결 → 일정요건을 고려한 입지 선정(보건복지부장관) → 지정·고시(보건복지부장관)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 지정권자 : 중소기업청장 · 지정절차 : 지정신청(대학·연구기관장) → 일정사항 포함된 개발계획서 첨부 → 중소기업청장에게 지정 요청
	산업기술단지 · 지정권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지정절차 : 일정사항 포함된 조성계획 수립(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사업자) → 일정양식의 신청서 / 일정사항 포함된 사업계획서 등 서류 첨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요청

□ 지원내용

- 공통적으로 진흥시설과 진흥단지 조성 및 운영 시 필요한 자금, 공동지원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

[표 3-5] 지원내용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관련 제도)

구분	지원내용	공장입지 및 건축특례	지원에 관한 특례
조경진흥시설	조성·운영시 필요자금 공동지원시설 벤처기업집적시설 인정(조건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특례 적용	지방자치단체 출연 또는 출자 가능
문화산업 진흥시설	조성·운영시 필요자금 공동지원시설 벤처기업집적시설 인정	×	×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조성·운영시 필요자금 공동지원시설 벤처기업집적시설 인정	×	×
벤처기업 집적시설	조성·운영시 필요자금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과세특례 적용	용도지역 건축제한 특례 도시형공장 및 관련 업무시설 설치 특례	×
스포츠타운 진흥시설	조성·운영시 필요자금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	×
엔지니어링 산업진흥시설	조성·운영시 필요자금 공동지원시설 벤처기업집적시설 인정	×	×
조경진흥단지	단지조성·운영지원 기반시설 등 지원	×	×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설치·운영자금지원 각종 부담금 면제 기반시설 등 지원	×	×
문화산업단지	단지조성지원 각종 부담금 면제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과세특례 적용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인정될 경우 행정도시, 혁신도시 공공주택 지구 등에 지정 가능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녹지를 결정 가능	지원단지 조성가능 지원단지 내 주택공급특례 단지 내 주택공급 특례, 사립학교 설립특례, 학교 및 교육과정 운 영 특례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기술혁신 지원 기금/보조금 지원 기반시설 등 지원 각종 부담금 면제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지구 도화사업 추진단지일 경우 우선 지정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 최고한도 허용	×
첨단의료복합단지	기반시설 등 지원 과세특례 적용 입주기관에 대한 지원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단지내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가능	×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입지선정 등 특례 도시첨단산업단지 인정	용도지역 건축제한 특례 도시형공장 및 관련 업무시설 설치특례 에 대한 특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 리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에 대한 특례
산업기술단지	설치·운영자금지원 각종 부담금 면제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과세특례 적용	단지 내 시험생산시설은 공장범위에 미포함 도시형공장 설치특례 건축금지 특례 공장설립 완료 신고 전 입주계약 체결특례	전기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에 대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 학교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 연 구원의 임직원 겸직허용

□ 운영·관리

-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되면 요건 충족 여부, 입주 현황, 운영 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 등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됨
- 기 지정된 산업단지의 목적달성 여부, 성과 활용 등을 증시하고 이에 대한 평가제도 마련
- 단지조성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해당 산업단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고시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과 구체성 제고 가능
- 심의위원회, 발전협의회, 네트워크협의회 등 조성된 단지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수단 마련

[표 3-6] 운영·관리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관련 제도)

구분	운영관리			
	세부사항 고시여부	지정해제 조건	현황보고 의무 여부	운영관리를 위한 위원회 유무
조경진흥시설	×	지정요건 미충족 / 지정조건 위반 / 부정한 지정 방법 / 지원내용의 부당한 사용	×	×
문화산업진흥시설	○	지정요건 미충족 / 지정조건 위반 / 부정한 지정 방법	×	×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	지정요건 미충족 / 지정조건 위반	×	×
벤처기업집적시설	○	지정요건 미충족 / 부정한 지정 방법	○	×
스포츠산업 진흥시설	×	지정요건 미충족	×	×
엔지니어링 산업진흥시설	○	지정요건 미충족 / 지원내용의 부당한 사용 / 지정조건 위반	×	×
조경진흥단지	×	부정한 지정 방법 / 지정조건 미충족	×	×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	육성계획 실현가능성 상실 / 촉진지구 목적달성 불가판단시 / 보조금 반환/취소 결정시	○	○
문화산업단지	×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미신청 / 개발전망 상실	×	×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	-	×	×
첨단의료복합단지	×	지정목적 달성시 / 목적달성 불가판단시	×	○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	부정한 지정 방법 / 지정조건 미충족	○	○
산업기술단지	○	부정한 지정 방법 / 지정조건 미충족	○	×

□ 시사점

- 신규 조성 유형, 기존 산업단지의 제도적 지원을 위해 지정하는 유형, 산업 집적을 위해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유형 중 조경진흥단지에 적합한 유형을 명시할 필요
- 단지조성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해당 진흥단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고시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과 구체성 제고
- 지역 발전, 경쟁력 있는 사업체 유치 등을 고려한 지정기준 보완 필요
- 심의위원회 등 진흥시설과 진흥단지의 공정한 지정과 관리를 위한 기구 조성 필요

3) 관련 제도에 따른 시설 및 단지 조성사례

① 「문화진흥기본법」에 의한 진흥시설 및 단지 사례

□ 문화진흥시설 : 문화콘텐츠센터(현 서울산업진흥원)

- **(설립 및 지정 목적)** 문화콘텐츠 지원기관 및 관련시설 집적화로 지원효과의 극대화 및 시설활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문화콘텐츠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와 첨단 기술이 한자리에 어울려 창작 문화콘텐츠를 연구·개발 및 공급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 복합공간 조성
- **(조성 주체 및 절차)** 서울시에서 조성한 정보미디어단지인 디지털미디어시티 내 일부 부지를 문화관광부 장관이 문화산업진흥시설로 지정

2002. 4.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 DMC입주요청(서울시→문화관광부)
2002. 5.	문화콘텐츠복합플렉스 조성계획 수립(문화관광부)
2003. 11.	상암동 C3부지 토지사용승인 통보(서울시→문화관광부)
2003. 12.	기본 및 실시설계 업체선정 및 계약(원양건축)
2004. 8.	건축허가, 12. 3 시공사 선정(경남기업 등), 12. 14 기공식
2007. 3.	건물 사용승인(마포구청),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 **(시설 개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및 문화산업 관련단체와 콘텐츠홀, 게임도서관, 교육 시설 등 집적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화정보센터,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등 문화산업 관련 공공기관 입주
 - 2017년 3월 기준 서울산업진흥원 본사 및 진흥원 포함 14개 기업 입주
- **(운영현황)** 2017년 현재 서울산업진흥원과 한국영상자료원의 주체로 운영



[그림 3-1] 문화콘텐츠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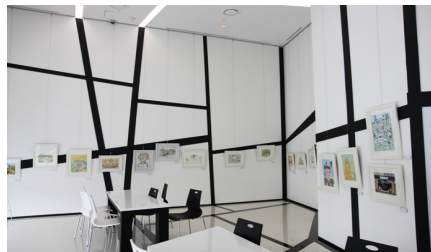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디지털미디어시티 홈페이지(dmc.seoul.kr)

□ 문화진흥시설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설립 및 지정 목적)** 만화문화의 진흥과 저변 확산을 통해 만화의 예술적, 교육적, 산업적 가치를 증대하여 한국만화산업을 육성·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조성 주체 및 절차)** 1998년 설립한 부천만화정보센터를 2008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에 이어 2011년 문화산업진흥시설로 지정

1998. 11.	부천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12. 4 부천만화정보센터 설립
1998. 12.	제1회 부천만화축제 개최
2001. 10.	부천만화영상산업박람회 개최
2008. 2.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2009. 8.	한국만화영상진흥원으로 이전
2011. 8.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 **(시설 개요)** 세미나실, 상영관, 전시실, 광장 등
 - 2015년 기준 총 102팀 입주하였으며 작가 82팀(321명), 기업 17개사(117명), 단체 3개 기관(30명)으로 구성
- **(운영현황)** 부천시청 산하 재단법인으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
 - 2011년 8월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이후, 그동안 부천시가 진흥원의 운영비 지원을 전담하던 방식으로부터 중앙정부의 지원혜택을 받는 것으로 확대



[그림 3-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처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홈페이지(www.komacn.kr)

□ 문화진흥단지 : 청주시첨단문화산업단지

- **(설립 및 지정 목적)** 교육·문화도시로서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목적으로 설립
- **(조성주체 및 절차)** 청주시에서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단지를 조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산업단지 지정

2001. 5.	첨단문화산업단지 지정협약(문화체육관광부)
2001. 10.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자원조례 제정
2002. 3.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지정 고시
2007. 11.	CCRC(청주문화산업연구센터) 개소
2013. 4.	문화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조성 국비지원사업 선정

- **(시설개요)** 에듀테인먼트 체험관, 애니메이션 상영관, 전시컨벤션홀, 멀티미디어 스튜디오 등 시설 구성
 - 소프트웨어개발, 에듀테인먼트, e-러닝, 디자인, 문화교육 등 업종의 기업 입주
 - 2011년 기준 69개 기업 입주, 종사자 수 465명
- **(운영현황)**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청주시 조례에 따라 운영



[그림 3-3] 청주시 문화산업단지

출처 :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홈페이지(www.cjculture.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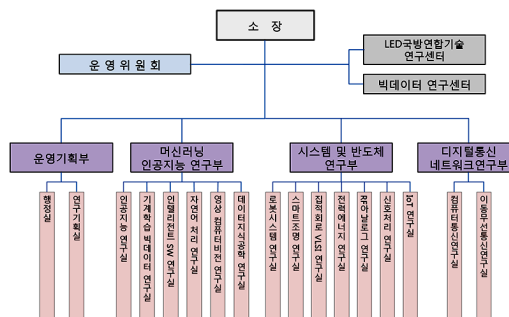
②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진흥시설 사례

□ 강원대학교 정보통신연구소

- (설립 및 지정 목적) 정보통신, 컴퓨터 분야의 산학협동 기술개발과 인재양성을 통해 국가적인 첨단정보통신기술 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
- (조성 주체 및 절차) 민간기업(현대그룹) 지원으로 대학 부설 정보통신연구소를 설립하고 이후 국가(정보통신부)과의 지원사업 협약 체결에 이어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

1994. 3.	강원대학교 부설 정보통신연구소 설립(현대그룹 30억 지원)
1998. 11.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개소(정보통신부 지원)
2003. 3.	대학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지원사업 협약체결(정보통신부)
2003. 8.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정보통신부)
2009. 6.	강원 비즈스파크사업 기업입주 지원
2011. 4.	창업보육센터 웹창작지원사업 참여기업 입주지원

- (시설 개요) 국제회의실, 스튜디오 등
 -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산학연 협동연구, 관련 산업체의 고급 전문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 진행
 - 2003년 지정 당시 중소 S/W업체 11개 입주
- (운영현황) 강원대학교 부설 기관으로 소장 임명 및 운영위원회, 운영기획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분야별 연구부로 세분화



[그림 3-4] 강원대학교 정보통신연구소 건물 및 조직도

출처 : 강원대학교 정보통신연구소 홈페이지(kiti.kangwon.ac.kr)

□ 충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설립 및 지정 목적)** 창업단계별 정책수단을 일괄 지원하여 선도대학 중심으로 창업 클러스터 형성을 유도
- **(조성 주체 및 절차)** 중소기업청의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개소된 이후 정보통신부에 의해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

2000. 4.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선정, 5. 1 충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 개소
2003. 6.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정보통신부)
2005. 12.	창업보육센터 통합운영 승인(중소기업청)
2011. 2.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선정(중소기업청)

- **(시설 개요)** 회의실, 세미나실, 창의아이디어 창작 공간, 기업가정보카페
 - 경영지원, 기술지원, 마케팅 지원, 지적재산권취득 지원, 교육 지원 사업 추진
 - 2003년 지정 당시 중소 S/W업체 16개 입주, 2017년 현재 47개 기업 입주
- **(운영현황)** 충북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의 위탁을 받아 운영
 - 공실 발생에 따라 연중 수시로 입주기업 모집 및 심사 진행



[그림 3-5] 창업보육센터가 위치한 충북대학교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
출처 : 충북대학교 창업지원단 홈페이지(startup.cbnu.ac.kr)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사례

□ 벤처기업집적시설 : 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 (설립 및 지정 목적) 미래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조기발굴하고 사업화단계에 맞춘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
- (조성 주체 및 절차)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서 민간기업과 국유재산관리위탁을 체결하고 경기도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 및 건물 리모델링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위탁기관을 사단법인으로 변경

2003. 7.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2003. 9. 건물 개보수공사

2010. 3. 22개 업체(벤처기업 7개) 입주

- (시설 개요) 일반보육실, 회의실, 상담실 등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자로서 미래 유망기술(IT/BT/NT/ET 등)을 보유한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대상
 - 보육단계별 세분화 지원, 기술지원, 전문적 경영지원, 마케팅지원, 연관기관 지원
 - 2017년 현재 19개 기업 입주
- (운영현황) 사단법인 경기중소기업연합회의 주체로 운영



[그림 3-6] 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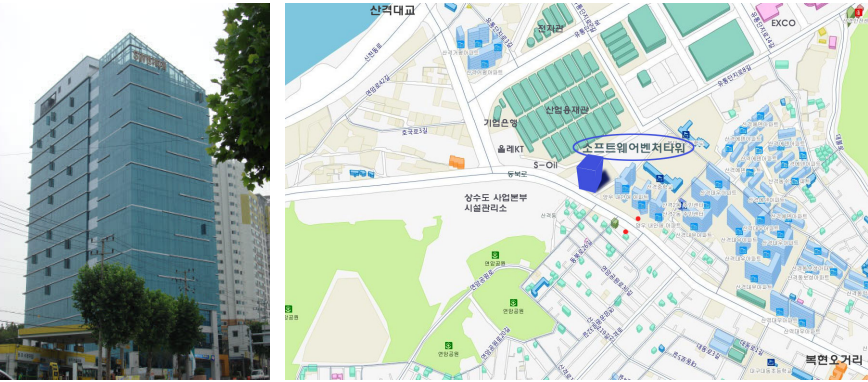
출처 : 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홈페이지(gsgc.modoo.at)

□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벤처타워

- **(설립 및 지정 목적)** 지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이 집적되어 정보공유, 기술협력 등 발전적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업체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원가절감 및 이익극대화를 달성하도록 공간적 기반 마련
- **(조성 주체 및 절차)** 한국소프트웨어개발업협동조합에서 회원사들이 출자한 만큼의 지분을 받는 방식을 도입하여 전국 최초로 자립형 벤처집적시설로 기획

2008. 7.	한국소프트웨어개발업협동조합 설립
2008. 10.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2010. 3.	소프트웨어벤처타워 착공, 2011. 7. 준공

- **(시설 개요)** 사무실, 교육장, 편의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 소프트웨어개발업체 입주공간 외에 근린생활시설 활용, 해외 기관 및 기업 유치 계획
 - 2017년 현재 45개 기업 입주
- **(운영현황)** 한국소프트웨어개발업협동조합에서 운영
 - 한국소프트웨어개발업협동조합의 회원사들에게 소프트웨어벤처타워 우선 입주혜택



[그림 3-7] 소프트웨어벤처타워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개발업협동조합 홈페이지(www.swup.or.kr)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구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설립 및 지정 목적)** 구미 국가산업단지 및 주변 지역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타 지역보다 높아 집단화와 협업을 통한 벤처기업 진흥이 용이할 것으로 평가되어 중소기업청에서 2002년 촉진지구로 지정
- **(조성 주체 및 절차)** 2002년 구미국가산업단지 제1단지 일원을 촉진지구로 지정받아 구미 시에서 조성계획을 수립, 2015년에는 대덕 이노폴리스벤처협회에서 주관하는 지방벤처 활성화사업에 응모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

2002. 4. 구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2013. 11. 면적 확대 (3.1km² → 3.6km²)

2015. 6. 지방벤처활성화 사업대상자 선정(대덕 이노폴리스벤처협회 주관)

- **(시설 개요)** 창업보육센터, 시제품생산공장 건립, 공용장비 도입 등 벤처기반 구축
 - 2013년 기준 64개 기업 입주
- **(운영현황)** 관리기관은 구미시청, 수행기관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으로 지정



[그림 3-8]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구미국가산업단지 제1단지
출처 : 경북문화신문 2013년 11월 7일자; 대구일보 2014년 2월 24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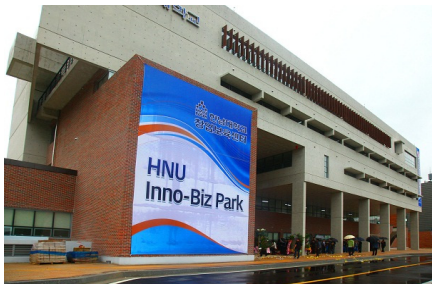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 HNU Science Park (한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설립 및 지정 목적)** 대덕 R&D특구 내 소재하고 있는 입지조건을 활용하여 기능성 생물소재 업종의 창업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 **(조성 주체 및 절차)** 중소기업청에서 1998년 한남대학교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 2008년 창업보육센터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으로 지정하고 시설 조성지원

1998. 6.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지정(중소기업청)

2008. 10.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진행, 2009. 9. 완료

- **(시설 개요)**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등
 - 2017년 기준 99개 기업 입주
- **(운영현황)**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



[그림 3-9] 한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출처 : 한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홈페이지(uniboard.hannam.ac.kr)

④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의한 스포츠산업진흥시설

□ 대구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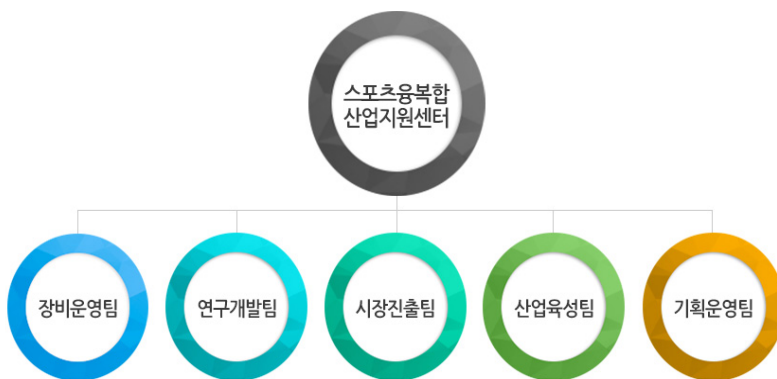
- **(설립 및 지정 목적)** 스포츠산업의 주요 후방산업과 융복합산업 육성 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조건을 살려 스포츠·보건·산업융합을 구현하기 위해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조성을 추진
- **(조성 주체 및 절차)**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서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육성 사업자로 선정되어 현재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며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할 계획

2016. 12 센터 건립 계획 및 일정 발표

2017. 상반기 중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계획

2019. 6 센터 착공 예정

- **(시설 개요)** 5천㎡ 부지, 연면적 8천560㎡의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계획 중
- 총 사업비 251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대구 수성의로지구 내 건립
- **(운영현황)** 대구테크노파크 주체로 조직 구성 및 센터건립 추진 중



[그림 3-10]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 조직 구성

출처 :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sci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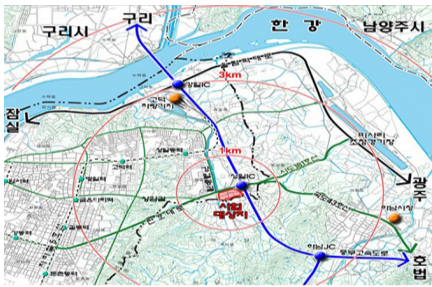
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시설

□ 서울 강동구 엔지니어링복합단지

- **(설립 및 지정 목적)** 서울시 강동구에서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엔지니어링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복합단지를 개발
- **(조성 주체 및 절차)** 2011년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로 예비지정되었으며, 준공 이후 정식 지정 예정

2011. 9.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양해각서 체결
2011. 11.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로 예비 지정, 준공 이후 정식지정 예정
2017.	현재 조성 진행 중

- **(시설 개요)** 비즈니스타워, 기술지원센터, 연구개발시설, 컨벤션센터, 교육시설, 회의실 등 조성 진행 중
 - 완공되면 200여개 기업, 1만6천여명 종사자 입주 예상
- **(운영현황)** 강동구,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기타 공공단체 등 민관합동 PF사업으로 조성 추진 중



[그림 3-11]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감도 및 위치도
출처 : 강동구청 홈페이지(www.gangdong.go.kr)

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2단지

- **(설립 및 지정 목적)**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중 2단지는 도심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있고 지식산업의 입주가 증가하고 있어 도심형 산업단지의 성공적 모델로 육성하고, 2단지를 단지 전체의 지원기능 거점으로 육성하여 단지 내의 유통·문화·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목적
- **(조성 주체 및 절차)** 1960~70년대 한국수출산업공단(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해 국가 산업단지로 조성되었으며 2009년 집적지구로 지정

1968. 6.	2단지 준공
2009. 12.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
2015. 12.	관리기본계획 개정 (입주관리계획 보완)
2016. 5.	관리기본계획 개정 (용도별구역변경)
2016. 9.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 **(시설 개요)** 기업지원시설, 교육훈련시설, 문화복지시설 등
 - 지식기반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섬유제품 제조업, 전문디자인업 등
 - 2017년 기준 2단지 1,665개 기업 입주
- **(운영현황)**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



[그림 3-12]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출처 : 서울디지털 Valley 산업총람 홈페이지(www.sdigt.com); 대한민국 정부 정책브리핑

⑦ 첨단의료복합단지

□ 오송생명과학단지

- **(설립 및 지정 목적)** 기업체, 대학, 연구소, 국책기관이 연계되어 바이오산업의 모든 과정이 집적되도록 조성된 국내 최초의 바이오산업 전문단지로, 국가에서 보건의료 및 생명과학기술 분야를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
- **(조성 주체 및 절차)**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조성을 주도하였으며, 단지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소속의 지원센터 설립

2009. 8.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
2011. 12.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설립
2013.	핵심인프라 완공

- **(시설 개요)** 핵심인프라구역, 연구지원시설구역, 연구개발기관입주구역, 편의시설 구역 등
 - 2017년 기준 60여 개 기업 입주
 - 보건의료 관련 정부출연기관,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시설, 병원 연구시설 및 임상시험센터, 관련 유명 벤처 연구시설 등 유치 계획
- **(운영현황)** 공익법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관리



[그림 3-13] 오송생명과학단지
출처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홈페이지(www.kbiohealth.kr); 국토교통부 블로그

⑧ 산업기술단지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설립 및 지정 목적) 경기북부지역 산업집적을 통해 지역성장동력을 창출
- (조성 주체 및 절차) 2005년 대진대학교, 경기도청, 포천시청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

2005. 1. 재단법인 설립, 2005. 3.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정(산업통상자원부)

2011. 11. 종합지원센터 완공

2013. 12.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단지조성사업 계획변경 승인

2015. 12.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 완료

- (시설 개요) 종합지원센터, 시험생산동, 정보디스플레이연구지원센터 등
 - 총 사업비 1,011억원을 투자하여 포천시 자작동 일원의 105,869㎡에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 진행
 - 창업보육사업, 교육훈련사업, 정보유통사업, 공동장비 사용 지원, 홍보 지원사업 등 추진
 - 2017년 현재 50여 개 기업 입주
- (운영현황) 재단법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단지 운영팀 설치



▶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센터 입주공간



▶시험생산동



▶시험생산동 입주공간



[그림 3-14]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처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홈페이지(gdtp.or.kr)

⑨ 분석의 종합

- 대부분의 경우 시설 및 단지 조성 단계부터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있었으며, 민간에서 조성하고 중앙정부에서 단순 지정한 경우에도 사업운영비 등 지원

[표 3-7] 진흥시설 및 단지 조성사례

사례	관련제도	조성 주체	지원내용	운영현황	
진 흥 시 설	문화콘텐츠센터	문화산업 진흥시설	서울시	시설조성 지원	서울산업진흥원 및 한국 영상자료원 주체로 운영
	한국만화영상 진흥원	문화산업 진흥시설	부천시	시설조성 및 사업운영비 지원	부천시청 산하 재단법인 에서 운영
	강원대학교 정보통신 연구소	소프트웨어진흥 시설	강원대학교	사업운영비 지원	11개 중소S/W업체 입주
	충북대학교 창업보육 센터	소프트웨어진흥 시설	충북대학교	사업운영비 지원	연중수시 입주기업 모집 47개 기업 입주
	경기중소기업성장 지원센터	벤처기업 집적시설	경기도	시설조성 및 사업운영비 지원	19개 기업 입주
진 흥 단 지	소프트웨어 벤처타워	벤처기업 집적시설	한국소프트웨어 개발업협동조합	시설조성 지원	협동조합에서 운영 45개 기업 입주
	대구스포츠험용복합 산업단지지원센터	스포츠산업진흥 시설	대구테크노파크	시설조성 및 사업운영비 지원	2017년 중 지정예정
	서울 강동구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시설	서울 강동구	시설조성 지원	예비지정 상태
	청주도시첨단문화 산업단지	문화산업 단지	청주시	시설조성 지원	70여개 기업 입주
	구미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구미시	시설조성 지원	64개 기업 입주
	서울디지털산업단지 2단지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한국산업 단지공단	시설조성 지원	1,665개 기업 입주
	오송생명 과학단지	첨단의료 복합단지	보건복지부	시설조성 지원	60여 개 기업 입주
	HNU Science Park	신기술창업집적 지역	한남대학교	시설조성 지원	100여 개 기업 입주
경기대진 테크노파크	산업기술 단지	재단법인	시설조성 및 사업운영비 지원	50여 개 기업 입주	

2. 국내 사례분석

① 조경사업자 협동조합 '봄(VOM)'

□ 설립 배경 및 과정

- **(배경)** 향후 민간분야 사업 증가 시 설계와 시공의 통합 발주 수요 증가¹⁾가 예상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각 분야별 사업자 집적의 필요성 인식에서 출발
 - 조경시장의 외연 확장 및 신규 시장 창출을 목표로 조경자재 디자인에서 시공까지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설립
- **(경위)** 2017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사업협동조합²⁾ 형태로 개소
 - 2014년부터 협동조합 형태의 사업모델을 기획하기 시작해서 사업주 모집에 2년 소요

□ 운영방식

- 시공부문 1개, 시설물 설치 공사업 1개, 설계분야 5개, 총 7개 업체로 구성
 - 4개 회사는 상주, 3개 회사는 유동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 비상주 조합원 추가 모집 예정

"같은 분야만 집적할 경우 경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다른 분야가 섞여 있어 안정적"³⁾

- 개별 회사의 독자성(개별 사업자등록)은 가지고 있으면서 공동의 사업이 있을 때 협업하는 사업연합으로 유연한 구조를 가짐



[그림 3-15] 조경사업자 협동조합 '봄' 사무실 내부

1) 공공사업에서는 설계와 시공을 분리발주하고 있으며, 그동안 조경산업은 민간사업 보다 공공사업의 비율이 높았음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3) VOM대표이사 인터뷰 내용

□ 집적에 따른 장점 및 기대효과

- 정보수집의 용이성, 인적 네트워크 확장에 따른 사업기회 증가, 임대료 및 복사기 사용요금 등의 유지관리비 절감

“대형 로펌이나 세무법인처럼 대외적으로 규모를 키워 공신력을 높이고, 내부적으로 전문가들끼리 협업하면서 시너지 창출”⁴⁾

- 협동조합 사무실 개소 이후 공동 수주한 프로젝트 1건, 개별 회사가 수주한 프로젝트를 공동 수행한 경우 3건 등



[그림 3-16] 각 분야별 전문가 협업
출처 : 한국조경신문



[그림 3-17] 공동이용 회의실

4) VOM대표이사 인터뷰 내용

② 조경시설물 생산단지 '멜리오유니온랜드'

□ 설립 배경 및 과정

- **(배경)** 기업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해외 수출 물량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세계 물류기지 확보와 타 분야와의 협업을 통한 사업 확장을 목표로 조경자재 산업단지 조성 계획
- **(경위)** 1993년 설립한 조경식재 및 놀이대 제작 업체'(주)연합조경'을 시작으로 1998년 전문놀이시설 생산업체인 '유니온랜드' 설립하였으며, 2010년 (주)멜리오유니온랜드의 자회사들이 모여 일반산업단지로 지정 받아 현재 조성 중에 있음
 - 일반산업단지의 규모는 약 15만㎡로 이중 약 85%는 산업시설용지, 약 15%는 녹재, 도로,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 용지
- **(입지)** 조경시설물의 해외 수출을 위해 항만과 가까이 있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입지
 - 국내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놀이시설 설치 공사업체의 경우 경기도 파주, 군포 근처에 집중해 있으며, 중국 OEM방식으로 제작하는 운동시설의 경우 인천에 집중

"다른 사업체에 입주를 권고하고 있지만, 기존의 사업 기반을 뒤로하고 이주하기에는 부담이 따르고 있는 상황"⁵⁾



[디자인센터 조감도]

출처 : www.unionland.co.kr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출처 : www.unionland.co.kr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

[그림 3-18] 멜리오 일반산업단지 현황

□ 운영방식

- 일반산업 단지에서 자재 수급부터, 조경시설물 생산, 보관, 설치, 해외 수출까지 조경시설물 설치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수행할 예정

5) (주)멜리오유니온랜드 영업부 송상열 부장 인터뷰 내용

- (주)멜리오유니온랜드는 이미 성형공장, CNC가공⁶⁾공장, 목재공장, 절재제작공장, 도장 코팅공장, 조경시설물공장, 체육시설물공장 등 원료 투입에서 완제품까지의 모든 공정을 갖춘 종합생산시스템을 이미 구축하고 있으며, 물류창고의 추가 확보, 사업 확장, 타 업체와의 협업 등을 위해 일반산업 단지 지정 신청
- 또한 디자인센터 건립으로 관련 전문가 양성 및 신기술 개발에도 참여할 예정이며, 수출 대행 사업으로 타 업체들의 세계시장 진출 기회 제공을 도울 예정



[그림 3-19] (주)멜리오유니온랜드 조직도



[그림 3-20] 종합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유니온랜드 전경

□ 집적에 따른 장점 및 기대효과

- (주)멜리오유니온랜드의 해외 진출 노하우와 타 분야 전문 업체의 기술력으로 해외 진출 기대
- (주)멜리오유니온랜드는 놀이시설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 전문기술을 갖춘 운동시설, 휴게시설, 바닥시설 등 타 분야 업체와 협력하여 해외 수출 단지로 역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⁷⁾
- 업체간 정보교류와 경쟁을 통한 신기술 도입, 생산 및 유통 체계 개선 등 조경산업 발전 기대

6) 컴퓨터 수치 제어에 의한 가공을 의미

7) (주)멜리오유니온랜드 영업부 송상열 부장과의 인터뷰 내용

③ 조경수 생산 영농조합법인 '전의조경'

□ 설립 배경 및 과정

- (배경) 증가하고 있는 조경수 수요에 소규모 재배로는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판로 확보를 위해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⁸⁾에 근거하여 영농조합법인 설립
- (경위) 2003년 영농조합형태로 36명의 사업자가 모였으며 인당 800만원에서 1천만 원의 조합비를 모아 공동사무시설과 묘목장 구축
- (입지) 조경수 재배의 경우 재배지역의 기후 조건에 따라 이식 가능 지역과 이식 후 고사율 차이를 보이며, 중부지방에서 생산된 조경수만 전국에 판매 가능
 - 세종시 전의면, 충북 옥천에서 조경수 재배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조경수 재배지인 진주, 순천의 경우 과실수 등 일부 품목에 제한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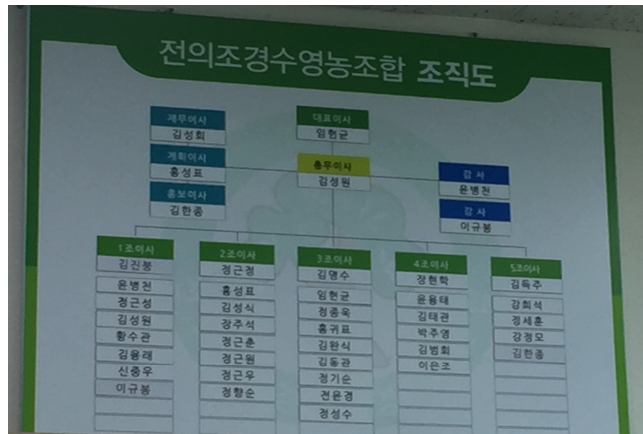


[그림 3-21] 전의 조경수 영농조합 공동사무실

□ 운영방식

- 영농조합원들과 조경수 판매 경로 공유
- 영농조합 사무실의 상근 조직은 지자체 및 정부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행정업무 수행
- 매년 지역 축제 때 공동 묘목장에서 나무심기, 묘목축제 등 행사 개최

8)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유통, 가공, 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함



[그림 3-22] 전의 조경수 영농조합 조직도

☐ 집적에 따른 장점 및 기대효과

- 조경수 판로 확보를 통해 대규모 조경수 수요에 대응가능하며, 정부 지원 사업 등에 효율적 참여
- 조경수 재배 방법 등 정보 공유를 통한 생산성 향상 기대
- 조경수는 해외 시장 진출이 전무한 분야인데 최근 지자체 공무원과 함께 협업하여 중국 산둥반도에 주목을 수출하였으며, 향후 해외 시장 진출 확장 기대



[그림 3-23] 전의 조경수 포트재배 하우스 [그림 3-24] 세종시 전의조경수 묘목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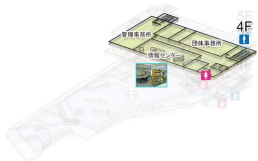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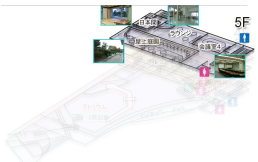
출처 : 굿모닝충청, 2015년 3월 21일

3. 해외 사례분석

① 가와구치 녹화센터

- **(근거 법령 및 관련 제도)** 지자체 사업으로 조성된 재단법인으로서 『공익 재단법인 가와구치 녹화 센터 정관』을 제정하여 운영
- **(조성 주체 및 절차)** 일본 가와구치시 지역 전통산업인 조경수생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1972년 가와구치시에서 200억 엔으로 조성
- **(지원내용)** 식목·화훼·조경 등 지역 특산 농업의 진흥을 위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녹화진흥 사업 촉진 지원
 - 식목·화훼의 재배, 육성 등 기술 보급에 관한 연수회 개최, 정보 수집 및 제공
 - 녹화사업 추진을 위한 수목 상담 및 소개
 - 녹화 계발, 식목·화훼의 홍보, 녹색 산업 진흥을 위한 이벤트 실시 및 지역의 보급 홍보 추진
 - 카와구치시가 실시하는 각종 녹화 진흥사업 등의 위탁 및 협력
 - 녹색산업 등의 유통거점으로서 지역 활성화와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식물 거래 센터 사업
 - 시설대여 및 특산농업 등의 물품 판매 관련
- **(운영관리)** 재단법인에서 매년 1년 단위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며 단계별로 이사회 및 평의원회 승인 절차를 진행
 - 사업연도 개시 전 사업계획서, 수지 예산서, 자금 조달 및 설비 투자 전망 등을 작성하고 이사회의 결의 및 평의원회 승인 절차 진행
 - 사업연도 종료 후에는 사업보고서, 부속명세서, 수지 계산서, 대차 대조표, 재산목록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 및 이사회 승인 절차 진행
 - 사업 개시 전 계획서 등의 서류와 사업 종료 후 감사보고결과 등의 서류는 일반에게 열람 제공
- **(성과)** 각종 지원시설 조성 및 운영, 각종 녹화진흥사업 추진 중
 - 1,500㎡ 부지에 실내매장, 장외거래장, 주차장 등의 시설을 구비하였으며 수목, 화초, 원예 자재, 농약 등의 판매 및 정원 설계, 시공 및 관리
 - 수목 거래의 거점이자 정보 교류장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추후 녹지보전을 위한 수목의 유통거점으로 발전시킬 계획
 - 2015년도에는 가와구치 녹화센터 및 가와구치 시영 식물거래센터 관리·운영, 각종 녹화진흥사업 실시

[표 3-8] 가와구치 녹화센터 시설

구분	평면도	세부시설
1층 아트리움		
2층 레스토랑 자료전시		
3층 회의실		
4층 정보센터 관리사무소		
5층 옥상정원 라운지, 회의실 일본식 간(間)		

자료 : 가와구치 녹화센터 홈페이지(www.jurian.or.jp)

② 일본 국산화훼 이노베이션 추진사업

- (근거 법령 및 관련 제도) 일본은 화훼생산자의 경영 안정, 화훼 가공 및 유통의 고도화, 화훼수출 촉진을 위해 2014년 「화훼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조성 주체 및 절차) 일본 농림수산업성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력 회의를 규정하고 각 도현별 “화훼 진흥 계획”을 수립
- (지원내용) 시범사업에 2014년 5억엔, 2015년에는 7.33억엔 투자
 - 국산 화훼 생산·공급체제 강화, 수출 및 수요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 지구 추진사업과 전국 추진사업으로 구분하여 화훼관계자 연계사업, 화훼관리기술 개선 및 물류효율화, 수요확대를 위한 사업, 품질인증 관리제도 등 추진

[표 3-9] 일본 국산화훼 이노베이션 추진사업 내용

사업명	세부내용	
	지구 추진사업	전국 추진사업
국산화훼의 강점을 살리는 생산·공급체제 강화	· 광역 연계를 통한 화훼 가공 유통의 실증 · 물류 효율화의 검토·검증 · 재활용 시스템 검토 입증 · 수출전략 수립	· 화훼 저장성 향상 대책 · 화훼 생산·판매(生販) 연계활동 · 소량 꽃 재료 안정 공급 체제 구축
국산화훼의 수요 확대	· 플라워 경연대회, 전시회 등 개최 · 학교, 복지시설 등에서의 체험 추진 · 기업, 요양 시설에서의 꽃과 초록의 활용 추진 · 꽃 문화와 함께 국산 화훼의 정보 발신	· 화훼 효용 검증·보급 · 화훼 실무자 육성 · 생활에 꽃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수요 창출
화훼관계자 연계 지원	· 화훼 진흥 방안 등 검토 · 교류회의 개최, 기술 매뉴얼 작성	-
품질인증 관리제도에 의한 국내 유통 및 수출확대 지원	· 완벽한 코드 체인 구축 · 산지에서의 수출 대책 · 분재 등 소독방법 확립	-

자료 : 일본 농림수산업성 홈페이지(www.maff.go.jp)

- (운영관리) 전국의 47개 도도부현별로 화훼업계 관계자들이 함께 설립한 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실시하고, 매년 지역별 성과를 농림수산업성에서 종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
- (성과) 산지별 릴레이 출하를 위한 교류회의, 주민 교육·체험, 시스템 검증, 국제 박람회 참가 등 지역별로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 중

[표 3-10] 2016년 지역별 협의회 주요 성과

지역	성과내용
홋카이도	다른 산지의 릴레이 출하를 위한 기술 교류회의 개최
아오모리 현	생산, 유통, 판매를 연계한 꽃다발용 화훼 생산·유통 체제 검토·검증 유치원이나 복지 시설에서의 花育체험 실시
아마가타 현	절화 용담의 수출 확대에 관한 실증 (수출에 적합한 절화의 품질 유지 대책 병해충 대책 등) 전시회 개최
나가노 현	국제 플라워 포럼 2016의 세미나 등의 개최 국제 원예 박람회에 참가
니가타 현	수출국 조사 및 수출 전략 개발 스포츠 대회 등의 빅토리 부케 전시
아이치 현	소매 시장, 실수요자가 협력하여 해결 화분의 폐 용도 재활용 시스템의 검토·검증
가와와 현	물류의 효율성 검토, 고교생 꽃해서는 배틀 개최, 수출 확대를위한 분재의 소독 방법의 검
오카야마 현	주택 전시장의 꽃 문화 전시회 개최 화훼 소비·유통의 과제와 강연회 개최
시즈오카 현	기업과 요양 시설 꽃과 초록의 활용 사례의 수집 및 우수 사례 표창 복지 시설에서의 배열 체험 교실 개최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www.maff.go.jp)



〈홋카이도 꽃문화전시회〉



〈아오모리 현 꽃꽂이 교실〉

[그림 3-25] 일본 국산화훼 이노베이션 사업 지역별 추진사례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www.maff.go.jp)

③ 오타화웨이시장

- **(근거 법령 및 관련 제도)** 『판매 위탁의 인수 도매시장 법』 및 동법 시행규칙, 『도쿄도 중앙 도매시장 조례』 및 동 시행규칙 등에 따라 운영되며 별도로 수탁계약 약관을 제정하여 운영
- **(조성 주체 및 절차)** 주식회사 오타화웨이에서 농림수산부의 승인을 받고 도쿄도의 위탁으로 화웨이분야 중앙 도매시장 운영
 - 1989년 도쿄도 중앙도매시장 오타시장 화웨이부에 편입
 - 2000년 인터넷 거래 서비스 개시
 - 2007년부터 화웨이 관련 조사 및 연구, 컨설팅을 진행하는 연구소 설립
- **(지원내용)** 본사에서는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화웨이를 신선하고 안정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거래 시스템을 운영하며, 축적된 거래 데이터 등을 연구소에서 분석하여 마케팅 데이터 판매서비스 제공
 - 생산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전국 꽃집의 요구와 트렌드 연구를 통해 재배와 출하 계획
 - 생산자로부터 받은 출하 정보를 정리하여 구매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입하 정보 발신
 - 생산자의 요구와 구매자의 수요를 연결하는 제품 제안·판매
 - 거래 종료 후 당일 판매가격을 생산자 및 소비자에게 공개하여 공정한 거래 유도
 -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회사 내 로비에 시즌별로 화웨이품목을 전시, 홍보
 - 연구소에서는 업계 관련 컨설팅 및 조사하청, 마케팅 데이터 판매, 각종 교육사업 진행
- **(운영관리)** 대표이사 및 이사회, 지명위원회, 보상위원회, 감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분기별 보고서 발행
- **(성과)** 중매회사 19사(20개 점포)가 입지해 있고 매매 참가인은 2,084명, 도매업자 2개, 관련 사업자 99개 입주
 - 시장의 화웨이취급량은 2006년 기준 하루 329만 본, 7,600만 엔으로 전국 화웨이취급 중앙 도매시장 취급액의 32.5%를 차지
 - 화웨이부문 건물은 면적 22,000㎡이며 지하에 4,000㎡의 정온창고, 지상에 도매시장, 중도매장, 자동운송시설, 동경도본실, 회의실, 도매회사, 중도매조합사무실, 매매참가조합사무실, 음식점 등 보유



[그림 3-26] 오타시장 전경

자료 : 도쿄도 중앙도매시장 (www.shijou.metro.tokyo.jp)



[그림 3-27] 오타화웨이시장 내부시설

자료 : 주식회사 오타화웨이(www.otakaki.co.jp)

④ 싱가포르 CUGE (Centre for Urban Greenery and Ecology)

- **(근거 법령 및 관련 제도)** 조경산업에 대한 국가적 공인 제도인 조경산업 인력 기술 자격 (WSQ, Workforce Skills Qualifications) 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양한 수준의 전문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 제공
- **(조성 주체 및 절차)** 국립공원위원회(National Parks Board)와 싱가포르 노동개발기관에서 공동으로 설립
- **(지원내용)** 도시 녹화 및 생태 관련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운영, 관련 연구
 - 조경산업의 신규업체 및 기존 기술인력 모두를 아우르는 프로그램 구성
 - 7개의 핵심프로그램과 9개의 선택프로그램이 있으며, 핵심프로그램 전부와 3개 이상의 선택프로그램을 수강하면 자격 이수
 - 도시 녹화, 보전, 운영효율성, 안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연구하고 그 결과는 가이드라인 및 표준규범으로 제작하여 조경산업의 성과와 노하우 증진
- **(운영관리)**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운영
- **(성과)** 조경산업 내 청년 종사자 유인을 위한 동등한 기회 제공, 전문기업 육성을 통한 자원 확보 및 사업 지속가능성 제고, 혁신방안 연구를 위한 다학제적 파트너십 결성



[그림 3-28] 싱가포르 CUGE의 활동 모습

자료 : CUGE (www.cuge.com.sg)

⑤ 캘리포니아 CLUH (Center for Landscape & Urban Horticulture)

- **(근거 법령 및 관련 제도)**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는 1913년부터 대학의 연구역량을 통해 지역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중간 다리로서 '협력 교육원(Cooperative Extension)'을 조직하여 캘리포니아 지역의 문제해결, 촉진, 협력, 교육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
- **(조성 주체 및 절차)** 캘리포니아 대학의 농업·자연자원부 소속의 협력 교육원으로서 조성
- **(지원내용)** 캘리포니아의 환경 원예업 증진을 위한 교육적, 실용적 리서치 프로그램 지원
 - 물관리 및 보전, 도시의 수종관리 및 선택, 개인정원 및 원예상품·서비스 소비자 지원 등과 관련된 과학적 정보를 제공

- **(운영관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농업·자연자원부 소속으로 운영
- **(성과)**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관련 연구결과 발표, 관리방법 및 기술 등에 관한 각종 프로젝트 수행



[그림 3-29] 캘리포니아 CLUH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자료 : ucanr.edu

⑥ 중국 복건성 장주 해협생명공학 화훼 생산 및 유통 단지

- **(근거 법령 및 관련 제도)** 중국은 도시개발, 국제행사 유치, 공기정화를 위해 녹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조경산업 육성 지원
 - 국가 차원의 조경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대만 해협 인근의 복건성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조경 주체 및 절차)** 2009년 중국 국유기업인 복건성 장룽실업이 약 3000만 위안(약 49억)을 투자하여 해협생명공학회사를 설립, 200ha(약 60.5만평)대지를 조성
 - 2012년 투자자 추가 투입으로 등록자본 5000만 위안까지 증가
- **(지원내용)** 국가에서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여, 조경수 생산, 연구, 무역, 유통, 검사 및 검역 등 조경수 관련 산업의 총 집합 사례
 - 2012년부터 복건성 남부에 있는 장주시에서 매년 300만 위안(약4.9억)씩 지원금 제공
 - 단지안에서 생산한 조경수에 부가가치세 할인, 기업 소득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 제공
 - 운영관리 주체인 해협생명공학회사에서 전자거래 플랫폼, 은행, 검역, 창고, 경매센터, 물류 배송, 숙박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운영관리)** 해협생명공학회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이나 기업에 땅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
 - 해협생명공학회사에서 조경수 생산 연구, 생산, 무역, 유통, 물류, 검역(수출·입), 식재공사 등을 전부 수행
 - 생산 단지 이자 유통단지로서 기능하며 전자 상거래 플랫폼도 구축
 - 단지 내 생산시설 및 부대시설 건설, 환경 및 위생 관리, 공공시설 관리, 치안 및 안전에 관한 단지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관리

운영관리 기준

1. 화훼 시장 건설 관리 규정

- 토지를 교부할 때 부동산 서비스 협의서를 작성하고, 3달안에 자금을 투입하고 건설, 운영 및 생산을 시작해야 함
- 사용자는 임대한 땅에서 건축물 및 고정 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반드시 국토 사용 규범에 따라서 해야 하고, 시공 전에 센터의 부동산 서비스실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지하수 사용을 금지
- 생산시설(Greenhouse), 부대시설(사무실, 기숙사, 창고, 주차장 등)에 대한 건설 규정과 오수처리 규정, 광고물 설치 규정, 시공 규정을 따라야 함
- 펜스는 통일된 규격 및 디자인 제품을 사용

2. 환경 위생 관리 규정

- 쓰레기, 화훼 묘목 쓰레기, 병충해 관련 내용을 규정

3. 공공 시설 관리 규정

- 수력 시설, 배수 시스템, 공공 도로와 광장 및 녹지 등에 대한 규정

4. 치안과 안전 생산에 대한 관리 규정

- 안전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용자(각 화훼장 담당자)가 치안과 소방에 대한 제일 책임자
- 특수 장비의 사용은 안전 관리 분과에 신고 후, 동의하에 사용 가능
- 각 화훼장에 소화기 비치 및 관련 교육 시행
- 진귀한 화훼과 나무 기록

5. 기타

- 수입한 조경수 및 씨앗에 대해 반드시 검역 합격 증서를 받아야 함

- **(성과)** 복건성에 위치한 센터 외에 7개 지사를 추가로 설립하였으며, 매년 거래금액이 100억 위안 초과, 조경수 약 3만 그루 보유
 - 2012년 기준 이 회사의 총 자산은 178.17억 위안, 순자산 65억 위안, 사업소득 53억 위안
 - 현재 임대하고 있는 땅은 약 54.27ha 정도이고 약 100개의 기업 입주



[그림 3-30] 중국 복건성 해협생명공학 장주 화훼 생산 및 유통 단지 배치도

출처: www.haixiaflower.com

□ 분석의 종합

- 관련 산업의 물리적인 집적보다는 사업체 간 연계사업 및 물류개선 정책 중심
- 사업자 간 협의회 운영, 정보교류 등 네트워크 형성을 중시하며, 물류 및 유통 개선을 위해 산업을 지원하는 기관과 시설들을 집적하는 경향
- 기존 교육프로그램 및 대학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진행
- 추진주체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등 다양한 부문에서 참여

[표 3-11] 해외사례 분석결과 종합

사례	개요	추진주체	지원내용	운영현황
가와구치 녹화센터	조경수생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지원시설 집적	가와구치현	· 실내매장, 장외거래장, 주차장 등 시설조성 · 식물전시, 꽃과 식목 생산 진흥, 꽃과 식목 이용확대 방안 추진	재단법인 설립
일본 국산화웨이브 이노베이션 추진사업	화훼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훼산업 개선사업	중앙정부	· 화훼관계자 연계사업 · 화훼관리기술 개선 및 물류효율화 · 수요확대를 위한 사업 · 품질인증 관리제도	지역별 협의회 주체
도쿄 오타화웨이브시장	오타시장의 일부문으로 화훼산업 거래지원시설 집적	민간	· 정온창고, 도매시장, 중도매장, 자동 운송시설, 동경도분실, 회의실, 도매 회사, 중도매조합사무실, 매매참가 조합사무실, 음식점 등 시설조성	오타화웨이브 주식회사 위탁운영
싱가포르 CUGE	국가적 기술자격 공인제도와 결합한 교육기관	정부기관	· 도시 녹화 및 생태 관련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운영 · 관련 연구 진행	국립 공원 위원회에서 운영
캘리포니아 CLUH	지역 환경원예업 증진을 위한 대학 연구기관	지역대학	· 물 관리 및 보전, 수종관리, 소비자 지원 등과 관련된 과학적 정보 연구 및 제공	캘리포니아 대학의 농업·자연자원부 소속
중국 복건성 장주 해협생명공학 화웨이 산 및 유통 단지	조경수 생산 육성을 위한 관련 시설 집적 및 종합 서비스 제공	중앙정부, 장주시, 민간	· 기업 설립 및 부지 조성 · 기업에서 연구, 검역, 유통, 창고 등 종합서비스 제공 · 세제 혜택	해협생명공학회사 (국유)

제4장 조경분야 종사자 및 전문가 대상 인식조사

1. 설문조사 개요
 2. 분석결과
-

1. 설문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조경 분야 종사자들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통해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의 합리적인 운용 방안 도출

□ 조사기간 및 대상

-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한 후 인터넷 설문조사 방식으로 2017년 6월 조사 시행
- 조경분야 종사자 및 전문가 총 75명의 응답결과를 분석과정에 사용
- 설문응답자들의 평균경력은 20.46년(표준편차 10.96년)
- 엔지니어링산업(19명, 25.3%), 조경설계서비스업(15명, 20.0%), 대학 및 연구기관(12명, 16.0%) 순으로 응답

[표 4-1] 설문응답자 일반현황

구분		응답자수(명)	비율(%)
조경설계	엔지니어링산업	19	25.3
	조경설계서비스업	15	20.0
	기술사사무소	6	8.0
조경감리	조경감리업	5	6.7

구분		응답자수(명)	비율(%)
조경시공	조경공사업	4	5.3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1	1.3
	조경식재공사업	4	5.3
조경관리	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3	4.0
조경자재	조경시설물 생산 및 유통업	3	4.0
	조경수 생산 및 유통업	3	4.0
대학 및 연구기관		12	16.0
전체		75	100.0

□ 설문항목 구성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의 필요성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에 적합한 산업 유형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 및 조성에 따른 기대효과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원방안

□ 분석방법

- 설문조사 결과는 빈도분석, ANOVA, 기술통계 등을 통해 분석하였고, 분석도구는 SPSS 21.0을 사용

[표 4-2] 설문조사 항목과 척도

구분	설문조사 항목	척도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의 필요성	•조경 산업 진흥정책과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점 리커트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점 리커트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에 적합한 산업 유형	•조경진흥시설에 적합한 산업 유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목
	•조경진흥단지에 적합한 산업 유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목

구분	설문조사 항목	척도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의 기대효과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 및 조성에 따른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임대료 등 경비 절감 - 각종 정보 공유 활성화 - 유통 체계 개선 -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사업 기회 증가 - 타 분야와의 협업 기회 증가 - 고객(기업, 개인, 지자체 등) 노출 기회 제공 - 신기술 개발 및 도입	5점 리커트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정기준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입주 조경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비중 - 입주 조경사업자의 조경 관련 단체 소속 여부 - 입주 조경사업자의 전문성(전문인력 보유현황, 사업 실적 등) - 전체 시설물 면적에서 조경사업자가 사용하는 면적 비율 - 해당 지자체의 조경 산업 규모와 육성 역량 - 사업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 - 교통,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기반시설 여건	5점 리커트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원방안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들은 각각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축물 또는 부지 확보 - 교통,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 확충 - 공공사업 입찰 시 인센티브 제공 - 세제 혜택 및 부담금 면제 - 산·학·관 연계 시스템 구축 - 유지·관리비 지원(시설 구입, 임대료 등) - 운영 컨설팅 지원(기술개발, 해외시장 진출 등)	5점 리커트

2. 분석결과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의 필요성

- 조경분야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은 조경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평균 4.75점)의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의 필요성(평균 4.63점) 역시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음
- 설문응답자 분야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ANOVA 실시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범위에서 조경감리와 조경자재 분야 종사자들이 조경설계 분야 종사자들에 비해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의 필요성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Dunnett
조경 산업 진흥정책 및 사업의 필요성	조경설계 (a)	4.83	.50	1.971/ .094	-
	조경감리 (b)	5.00	.00		
	조경시공 (c)	4.78	.44		
	조경관리 (d)	4.33	1.15		
	조경자재 (e)	5.00	.00		
	대학 및 연구기관 (f)	4.33	.98		
평균		4.75	.62	-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의 필요성	조경설계 (a)	4.70	.61	3.642/ .006**	a< b, e
	조경감리 (b)	5.00	.00		
	조경시공 (c)	4.89	.33		
	조경관리 (d)	4.00	1.00		
	조경자재 (e)	5.00	.00		
	대학 및 연구기관 (f)	4.00	1.13		
평균		4.63	.73	-	-
**p<0.01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에 적합한 산업 유형

- **(조경진흥시설)** 조경진흥시설에 적합한 산업 유형으로는 1순위 조경설계서비스업(47명, 13.9%), 2순위 조경감리 및 유지서비스업(45명, 13.3%), 조경공사업(38명, 11.2%) 순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조경진흥시설은 조경설계, 조경관리, 조경시공 분야 업체들의 집적을 통해 조성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
- **(조경진흥단지)** 조경진흥단지에 적합한 산업 유형으로는 1순위 조경수 생산 및 유통업(49명, 14.4%), 2순위 조경시설물 생산 및 유통업(40명, 11.8%)과 조경설계서비스업(40명, 11.8%) 순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조경진흥단지는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조경수와 조경시설물 생산 및 유통업 유치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

[표 4-4]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에 적합한 산업 유형 (설문조사 결과, 복수응답)

구분		응답자수(명)	비율(%)
조경진흥시설	엔지니어링산업	32	9.4
	조경설계서비스업	47	13.9
	기술사사무소	33	9.7
	조경감리업	21	6.2
	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45	13.3
	조경공사업	38	11.2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7	8.0
	조경식재공사업	32	9.4
	조경시설물 생산 및 유통업	29	8.6
	조경수 생산 및 유통업	35	10.3
전체		339	100.0
조경진흥단지	엔지니어링산업	25	7.4
	조경설계서비스업	40	11.8
	기술사사무소	24	7.1
	조경감리업	18	5.3
	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37	10.9
	조경공사업	38	11.2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33	9.7
	조경식재공사업	36	10.6
	조경시설물 생산 및 유통업	40	11.8
	조경수 생산 및 유통업	49	14.4
전체		75	100.0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 **(조경진흥시설)** 조경분야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은 조경진흥시설 지정과 조성을 통해 얻게 되는 기대효과 가운데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사업기회 증가'(4.36점)를 가장 높게 평가
 - 그 다음으로는 '각종 정보 공유 활성화'(4.27점), '고객 노출 기회 제공'(4.15점) 순으로 나타남
 - 조경진흥시설 조성을 통해 관련 분야 사업체 간 협력함으로써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조경진흥단지)** 조경진흥단지 지정 및 조성을 통해 가장 기대하는 효과로는 '각종 정보 공유 활성화'(4.37점)가 선정되었음
 - 2순위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사업기회 증가'(4.29점), 3순위 '유통 체계 개선'(4.25점) 순으로 나타남

[표 4-5]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	조경진흥시설		조경진흥단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임대료 등 경비 절감	4.08	.83	4.19	.91
각종 정보 공유 활성화	4.27	.79	4.37	.77
유통 체계 개선	4.15	.77	4.25	.79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사업기회 증가	4.36	.76	4.29	.87
타 분야와의 협업 기회 증가	4.04	.99	4.09	.99
고객(기업, 개인, 지자체 등) 노출 기회 제공	4.15	.91	4.17	.92
신기술 개발 및 도입	4.10	.89	4.12	.88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 **(조경진흥시설)** 조경진흥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자체 조정 산업 규모와 육성 역량'(4.27점)인 것으로 나타남
 - 조경진흥시설은 민간 차원에서 지정받거나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자체의 사업 추진여건과 조정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그 다음으로는 '사업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4.20점), '입주 조정사업자의 전문성'(4.15점) 순으로 나타남

[표 4-6] 조경진흥시설 지정기준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	평균	표준편차
입주 조경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비중	3.91	.98
입주 조경사업주의 조경 관련 단체 소속 여부	3.84	1.14
입주 조경사업자의 전문성(전문 인력 보유현황, 사업 실적 등)	4.15	.91
전체 시설물 면적에서 조경사업자가 사용하는 면적 비율	4.03	.91
해당 지자체의 조경 산업 규모와 육성 역량	4.27	.81
사업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	4.20	.87

- **(조경진흥단지)** 조경진흥단지의 경우 ‘사업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4.23점)이 지정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었음
 - 그 다음으로는 ‘지자체 조경 산업 규모와 육성 역량’(4.21점), ‘입주 조경사업자의 전문성’(4.13점) 순으로 나타남

[표 4-7]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	평균	표준편차
입주 조경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비중	4.00	.97
입주 조경사업주의 조경 관련 단체 소속 여부	3.83	1.17
입주 조경사업자의 전문성(전문 인력 보유현황, 사업 실적 등)	4.13	.91
해당 지자체의 조경 산업 규모와 육성 역량	4.21	.98
사업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	4.23	.89
교통,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기반시설 여건	4.12	.96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을 마련할 때 이러한 설문결과를 반영해 상대적 가중치를 산정하거나 배점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할 필요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원방안

- **(조경진흥시설)** 조경진흥시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세제 혜택 및 부담금 면제’(4.35점) 인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는 ‘건축물 또는 부지 확보’(4.29점)와 ‘유지·관리비 지원(시설 구입, 임대료 등)’(4.29점)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

[표 4-8] 조경진흥시설 지원방안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	평균	표준편차
건축물 또는 부지 확보	4.29	.81
공공사업 입찰 시 인센티브 부여	4.09	1.03
세제 혜택 및 부담금 면제	4.35	.86
산·학·관 연계 시스템 구축	4.16	.89
유지·관리비 지원(시설 구입, 임대료 등)	4.29	.85
운영 컨설팅 지원(기술개발, 해외시장 진출 등)	4.21	.86

- (조경진흥단지) 조경진흥단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가운데에서 ‘유지·관리비 지원 (시설 구입, 임대료 등)’(4.39점)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됨
 - 그 다음으로 ‘건축물 또는 부지 확보’(4.36점), ‘세제 혜택 및 부담금 면제’(4.35점) 순으로 조사됨

[표 4-9]조경진흥단지 지원방안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	평균	표준편차
건축물 또는 부지 확보	4.36	.80
교통,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기반시설 확충	4.33	.93
공공사업 입찰 시 인센티브 부여	4.03	.97
세제 혜택 및 부담금 면제	4.35	.86
산·학·관 연계 시스템 구축	4.33	.79
유지·관리비 지원(시설 구입, 임대료 등)	4.39	.85
운영 컨설팅 지원(기술개발, 해외시장 진출 등)	4.28	.86

제5장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 운용방안

1. 예상 사업모델
 2.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3. 지원내용
 4. 단기 및 중장기 발전방향
-

1. 예상 사업모델

1)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의 개념

□ 법적 개념 정의 (조경진흥법 제2조)

- **(조경진흥시설)**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조경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
- **(조경진흥단지)**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조경분야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조성된 지역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의 차이

- 조경진흥시설은 시설물 단위로 조경설계, 조경시공, 조경감리, 조경 유지·관리 등 지식기반 산업에 적합
 - **(입지)** 공공기관과 서비스지원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
 - **(규모)** 시설 규모에 제약이 크지 않으며, 개별 건축물 단위와 건축물의 일부 사용 가능

9) 조경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기술사법」 제5조의7 및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조경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

- (종사자수) 개별 사업체당 종사자수 4명을 기준으로 추산해 볼 때 약 40명 미만의 규모일 것으로 추정
- 조경진흥단지는 지역 단위로 면적 공간을 필요로 하는 조경수 및 조경소재 생산·유통 등 제조기반산업에 적합
 - (입지) 조경수 기반의 진흥단지는 식물 생육환경과 교통여건을 고려할 때 도시근교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적합하고, 조경시설물 기반의 진흥단지는 해외진출 여건을 고려해 항만 근교지역 또는 유관산업 밀집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
 - (규모) 조경수 기반의 진흥단지는 10만㎡ 이상의 대규모 공간, 조경시설물 기반의 진흥단지는 5만㎡ 이상의 중규모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종사자수) 개별 사업체당 종사자수 4명을 기준으로 추산해 볼 때 약 40명 이상의 규모일 것으로 추정

[표 5-1]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의 차이점

구분	조경진흥시설	조경진흥단지	
		조경수 기반	조경시설물 기반
입지	•도심지역	•도시근교	•항만 근교 •유관산업 밀집지역
규모	•소규모(건축물 단위)	•대규모(10만㎡ 이상)	•중규모(5만㎡ 이상)
종사자수	•40명 미만	•40명 이상	•40명 이상

2) 조경진흥단지 사업모델(안)

① 조경수 기반 사업모델

□ 추진배경

- 전문가 인터뷰조사 결과 조경식재공사업에서 조경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 수준으로, 2015년 조경식재공사업 기성실적(2조 809억)을 기준으로 볼 때 약 8천억 원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 가능
- 오늘날 조경수 생산과 유통은 대부분 산지나 농지를 소유한 지역주민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조경수 품질 관리, 유통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 신기술 개발, 해외시장 판로 개척 등에 한계 존재
 - 현재 조경수 생산주체는 농민, 조경수 생산업자, 조경건설업체 등으로 구분되며 대부분 경험에 의존한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는 실정
 - 조경수 생산주체의 고령화로 신기술 도입 등 생산 분야 발전을 위한 노력이 미흡한 실정으로, 개인 중심의 기존 생산체계를 개선할 필요

- 산지에서 생산된 조경수의 약 50%가 중간상인에 의해 시공 현장에 반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합리적인 가격 형성을 위한 조경공사 업체와 조경수 생산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조경수의 규격별 가격이 균일화·획일화되어 있어 신규 수종의 개발 및 생산기반시설을 위한 투자 억제
- 관련 법규 제약과 지역 관행에 따른 배타적 생산 방식으로 인해 계획적으로 조경수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한계
 - 조경수를 생산하는 과정은 (1단계) 임야 구입 및 개간 허가 → (2단계) 생산기반 조성 및 조경수 생산 → (3단계) 판매를 위한 반출허가로 구분 가능
 - 이러한 과정에서 조경수 생산자는 토지취득에 따른 등록세, 취득세, 대체조림비, 각종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단계별로 필요한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발생
 - 그 밖의 각종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로 비용이 누적적으로 발생하여 생산기술 개발, 신규 수종 개발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실정
- 중앙정부·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 조경수 기반의 조경진흥단지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조경수 품질개선, 주거 및 여가 환경의 질 향상, 지자체 세수 확보 등 다양한 효과 창출 가능

□ 기본방향

- 단순 생산기반시설을 넘어 생산, 유통, 판매, R&D, 관광, 교육 기능이 복합된 조경수 기반의 다기능 단지(multi-functional complex)로 조성

[표 5-2] 기존 조경수 재배단지와 조경진흥단지의 차이점

구분	기존 조경수 재배단지	조경진흥단지
법적근거	-	· 조경진흥법
소유	· 개인 또는 법인	·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 개인 또는 법인
규모	· 중·소규모 (평균 재배면적 약 1ha)	· 대규모 (10ha 이상)
특징	· 경험에 의존한 조경수 생산 · 노지 재배 중심 · 조경수 유통체계 부재 · 조경수 품질관리 기반 부재 · 조경수 생산과정에서 높은 비용 발생	· 연구개발을 통한 생산기술 개발 및 적용, 업체 간 지식과 기술 공유 · 컨테이너 재배 중심 · 생산자-수요자 유통체계 구축 · 조경수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이력제도 등 도입) · 조경수 생산과정에서의 비용 절감 · 수목원·식물원과 같은 성격의 공간으로 관광 자원화 · 일반인과 전문가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추진방식

- **(공공 주도)** 국가 및 지자체에서 조경수 생산에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한 후 조경수 생산 용지를 분할하여 민간에 분양 또는 임대하는 방식

- 부지 확보(지자체나 공공기관 소유 부지 활용 또는 환지방식 개발) → 조경진흥단지 조성 계획 수립 → 조경진흥단지 지정 → 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매칭 펀드) → 조경수 생산·유통·판매
- (민간 주도) 민간이 조경수 생산 부지를 확보한 후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받은 후 조경수를 직접 생산하거나 별도의 사업체에 분양 또는 임대하는 방식
 - 부지 확보(민간) → 조경진흥단지 조성 계획 수립 → 조경진흥단지 지정 → 단지 조성(민간) 및 기반시설 설치(공공 지원) → 조경수 생산·유통·판매

□ 지원방안

- (인·허가 절차 간소화) 조경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조경진흥단지 내 입주업체 일괄 처리
- (세금 및 부담금 면제)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각종 부담금 면제 혜택 부여
- (기반시설 설치 지원) 조경진흥단지 운영을 위해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시설, 통신 및 전기 시설 설치 지원

[관련 사례] 농공단지와 물류단지

- 농공단지: 농어촌 지역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일정 규모의 공업지역을 조성하고 입주업체에 금융, 세제, 기술 지원
- 물류단지: 세금감면 혜택, 진입도로 건설 지원

[관련사례] 중국 복건성 조경수 재배단지

- 대규모 조경수 재배단지와 함께 유통 및 판매 시스템 도입
-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도입



[그림 5-1] 조경수 재배단지

출처: www.haixiaflower.com



[그림 5-2] 관광객 방문 사진

출처: www.haixiaflower.com



[그림 5-3] 견적 시스템

출처: www.haixiaflower.com

② 조경시설물 기반 사업모델

□ 추진배경

- 2015년 기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분야 산업 규모는 연매출 1조 2,299억 원, 사업체수 2,377개
 - 민간아파트 조성사업, 신규 도시공원 조성사업, 공공건축물 조성사업 등 조경시설물 사업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향후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신기술 연계 상품 개발과 해외시장 판로 개척이 필요
 - 조경시설물 산업은 부지가 협소해서 발생하는 출하 지연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물류 창고 공간 필요
- 조경시설물 산업은 놀이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바닥시설 등 다양한 분야로 구분되며, 분야 간 집적과 협력을 통한 기술 개발과 경쟁력 강화 필요
- 국내 대다수의 조경시설물 사업체들은 중국 OEM 방식 또는 분리 발주 후 최종 조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자재 수급부터 완제품 납품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업체는 매우 드문 상태
 - 조경시설물 질적 향상과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소재생산, 유통, 판매, 홍보·마케팅, R&D 등의 기능이 복합된 단지 개발 필요

□ 기본방향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모바일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요소와 접목한 조경시설물 생산·유통 및 기술개발단지 조성

[표 5-3] 기존 조경시설물 사업체와 조경진흥단지의 차이점

구분	기존 조경시설물 사업체	조경진흥단지
법적근거	-	· 조경진흥법
소유	· 개인 또는 법인	·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 개인 또는 법인
규모	·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매우 영세	· 대규모 (5ha 이상)
특징	· 중국 OEM 또는 분리 발주 생산 · 해외시장 진출 전무한 실정 · 영세한 규모로 신기술 개발 제약	· 자체적으로 자재수급 및 시설물 생산 · 해외시장 진출 지원과 노하우 공유 · 업체 간, 분야 간 협력을 통한 지속적 R&D

□ 사업추진방식

- **(공공 주도)** 해외진출에 유리한 항만인접지역, 땅값이 저렴하고 협력사들이 밀집해 있는 경기도 파주·군포 및 인천 지역의 부지를 지자체에서 확보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한 후 민간에 분양 또는 임대하는 방식
 - 부지 확보(공공소유 부지 활용 또는 환지방식 개발) → 조정진흥단지 조성 계획 수립 → 조정진흥단지 지정 → 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매칭 펀드) → 조정시설물 사업체에 분양·임대 → 조정시설물 생산·유통·판매
- **(민간 주도)** 조정시설물 기반의 조정진흥단지 조성 여건을 갖춘 민간기업체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국가 및 지자체 지원을 바탕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한 후 영세한 조정시설물 사업체에 분양 또는 임대하는 방식
 - 부지 확보(민간소유 부지) → 조정진흥단지 조성 계획 수립 → 조정진흥단지 지정 → 단지 조성(민간) 및 기반시설 설치(공공 지원) → 조정시설물 사업체에 분양 및 임대 → 조정시설물 생산·유통·판매

□ 지원방안

- **(부지 및 공간 조성)** 영세한 조정시설물 사업체에서 진흥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부지 및 공간 조성 후 임대하는 방식이 현실 가능한 대안이라고 판단
- **(판로 확보)** 현재 농공단지 입주 업체, 여성기업, 지자체 내 입주한 업체 등 우선 구매 조건을 가지는 조건에 조정진흥단지 입주 업체를 포함하는 방안 검토
- **(신기술 도입)** 진흥단지 내 연구시설을 입주시켜 산·학 연계를 통해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입주업체 간 경쟁을 통해 신기술이 도입된 조정시설물 생산 유도

[관련 사례] 주식회사 멜리오유니온랜드

- 국내 최대의 놀이시설물 생산업체인 (주)멜리오유니온랜드는 물류 창고 확보와 관련 업체 간의 집적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목적으로 멜리오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울주군청으로부터 승인(2010년)받은 후 조성사업 추진 중
- 일반산업단지 규모는 148,700㎡로 이 중 약 85%는 산업시설용지로, 약 15%는 녹지, 도로,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용지로 조성할 계획



[그림 5-4] 멜리오 일반산업단지 대상지 전경(좌) 및 조감도(우)

출처 : www.unionland.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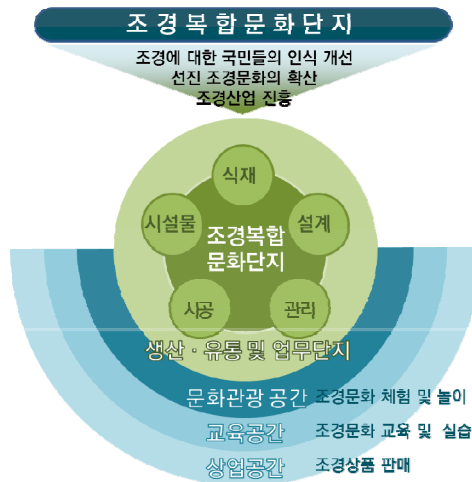
③ 조경복합문화단지 사업모델

□ 추진배경

- 현대도시의 환경문제 해결과 건강 및 행복 증진 등에 미치는 조경 분야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국민들의 '조경'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꽃이나 나무를 심는 행위와 사업에 머물러 있는 수준
- 조경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목본 및 초본, 놀이시설, 정원, 공원, 생태)를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조경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조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조경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단지 조성 필요

□ 기본방향

- 국민들이 다양한 조경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테마파크 성격의 복합문화단지 조성



[그림 5-6] 조경복합문화단지 사업모델

□ 사업추진방식

- 조경소재 생산과 유통, 조경설계와 시공, 조경 관리 분야 사업체들이 집적된 단지 조성
 - 조경수 생산단지에 식물원 기능을 부여하여 일반인들에게 개방함으로써 문화관광 및 환경교육 공간으로 활용
 - 조경설계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조경소재를 맞춤형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이 가능
 - 소비자 입장에서 조경 관련 소재를 일괄로 구입할 수 있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판로 확보가 용이한 일괄 매매 시스템 구축
-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공동 출자하여 부지 확보와 기반시설을 설치한 후 민간 사업체에 임대 또는 분양하는 방식으로 운용

3) 조경진흥시설 사업모델(안)

□ 추진배경

- 대규모 토건사업과 공공건축물 조성사업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조경 분야는 향후 중·소규모 민간분야 사업에 초점을 둘 필요
 - 민간분야 조경 사업은 설계와 시공 분야로 구분되지 않고 통합발주 형태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설계, 시공, 자재 등 다양한 분야 간의 집적이 필요
- 오늘날 조경설계와 시공 분야는 타 산업분야에 비해 영세한 사업체 비중이 높은 상태로, 영세 사업자들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
 - 영세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정비용은 임대료, 시설 구입비, 인건비 등으로 조경진흥시설 제도 도입을 통해 이러한 고정비용의 일부를 지원 가능

□ 기본방향

- 설계, 시공, 관리, 자재 등 서비스 기반의 영세한 조경 사업체들이 집적하여 정보공유, 기술 협력 등 발전적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업체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임대료와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사업추진방식

- **(공공 주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조경진흥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후 조경 관련 사업체에 분양 또는 임대하는 방식
 - 유휴시설 또는 공공건축물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거나, 신규로 부지와 건축물을 매입하여 조경진흥시설로 지정받은 후 영세한 조경 관련 업체에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방식
 - 신규 조성 시 수익성 확보를 위해 주거 및 상업 용도복합시설 검토
 - 기존의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경우 낮은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이 가능함으로써 조경진흥시설 입주업체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민간 주도)** 민간 부문에서 조경진흥시설로 활용 가능한 공간을 확보한 후 세제혜택 등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직접 운영하거나 조경 관련 업체에 분양 또는 임대하는 방식
 - 조경진흥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조경 관련 사업체들이 모여 시설을 신규로 조성하거나, 기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는 방식
 - 민간에서 조경진흥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기존 건축물을 임차하는 경우 임대비용 일부를 지원

□ 지원방안

- **(세금 및 부담금 면제)** 조경진흥시설로 지정된 건축물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
- **(조달청 업체 등록 일괄 처리)** 공공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조달청 업체 등록을 조경진흥시설로 일괄 처리하고, 입주 기업은 등록된 것으로 간주
- **(공공사업 참여 혜택 부여)** 조경진흥시설로 지정된 경우 수의계약 범위를 상향 조정해주고, 공공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 부여
- **(전문 인력 양성과 유치 지원)** 지역대학과 연계한 학생 인턴 프로그램 제공, 병역 특례 지원 등

[관련 사례] 조경사업자 협동조합 봄(VOM)

- 2017년 다양한 분야의 조경 사업자가 모여 만든 협동조합으로 설계, 시공, 시설물 분야 7개 업체로 구성
- 조경자재 디자인 및 시공까지 토털솔루션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설립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체의 규모를 커져 대외적 공신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 보유
- 정보수집, 인적 네트워크의 확대, 임대료 절감 등의 효과 유발



[그림 5-6] 조경사업자 협동조합 봄

출처: 한국조경신문

2.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1) 조경사업자의 범위와 지정기준

① 현황 및 문제점

□ 조경사업자의 범위

- 조경진흥법 제2조에 따른 조경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기술사법」 제5조의7 및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조경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
 - 현재의 조경사업자 범위에는 조경소재(조경수, 조경시설물 등) 생산·유통·판매업과 조경 관리·유지서비스업 등이 포함되지 못함
 - 조경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조경진흥시설 지정요건

- 현행법에서의 조경진흥시설 지정기준은 조경사업자 수, 중소기업자 비율, 조경사업자 사용면적 비율, 공동이용시설 설치 여부 등 4개 요소
 -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조경진흥법 제6조 제1항 3조의 “조경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시설물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이라는 지정기준은 영세한 조경사업자들의 여건을 고려할 때 다소 엄격한 기준이라고 판단
 - 조경 산업 진흥이라는 제도의 목적과 현실가능성을 고려할 때 해당 기준을 삭제(예: 스포츠산업진흥시설)하거나 완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조경진흥시설 지정요건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1. 5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서울특별시 경우에는 1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시설에 입주한 조경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조경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시설물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4.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조경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표 5-4] 유사 분야 진흥시설 지정요건

구분	지정요건		
	사업자수(개소)	중소기업 비율	관련시설 면적 비율
조경진흥시설	5 (서울시 10)	30%	50%
문화산업진흥시설	10 (서울시 20)	30%	50%
소프트웨어진흥시설	10 (서울시 20)	50%	50%
벤처기업집적시설	4 (수도권 외 3)	입주기업 중 벤처기업 4개 이상 (수도권 외 3개)	70% (수도권 외 50%)
스포츠산업진흥시설	5	30%	-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5 (서울시 10)	30%	50%

□ 조경진흥단지 지정요건

-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은 조경사업자 수, 지역 내 조경 관련 기관 보유 여부, 기반시설 구축 여부 등 3개 요소
 -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제2조에 따르면 조경진흥단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조경지원센터, 공공기관 중 조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비영리법인인 중 조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해당 지역에 있어야 한다고 명시
 - 조경 관련 기관들은 조경진흥단지 운영·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를 지정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조경진흥단지 활성화의 저해 요소로 작용 가능
 -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제3조에 따르면 조경진흥단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교통,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이라고 명시
 - 조경진흥단지 조성비 중 부지확보와 기반시설 설치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기준을 삭제하거나, 산업단지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가 개발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비용부담 제도와 공공에의 기반시설의 우선 공급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
 - 현행법상 조경진흥단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유사 분야 산업 진흥단지와 지역·지구와 달리 단지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부재해 사업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경진흥단지와 조경진흥시설 활성화계획 수립을 검토할 필요
 - 조경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 추진을 통해 산업경쟁력 확보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 보완 필요

조경진흥단지 지정요건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1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서울특별시 시의 경우에는 2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하고 있을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해당 지역에 있을 것
 -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경지원센터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조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조경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 교통,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표 5-5] 유사 분야 진흥단지 지정요건

구분	지정요건		
	사업자수 (개소)	조성계획 수립의무	그 밖의 기준
조경진흥단지	10 (서울시 20)	-	지역 내 지원기관 입지 여부 / 기반시설 확보 여부
문화산업단지	-	○ ¹⁰⁾	지역 간 균형 배치 / 중복투자 여부 / 지역 산업 연관 효과 및 지역경제발전 기여도 / 재원 조달계획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벤처기업수가 중 소기업의 10% 이상	○ ¹¹⁾	지역 내 대학이나 연구기관 유무 / 지역 내 기반시설 확보 여부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	○ ¹²⁾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및 산업입지수급계획과의 조화 / 기반시설 확충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 타당성
첨단의료복합단지	-	○ ¹³⁾	국토균형발전 / 타 법률에서 지정·개발 중인 지역에 입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	○ ¹⁴⁾	지정 면적 3,000㎡ 이상 / 집적지역개발계획의 실현 가능성

- 10)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지역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화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함.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단지조성계획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11) 시·도지사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요청 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요청서와 촉진지구 육성계획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 12) 시·도지사, 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 활성화 또는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13)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설치될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한다.
- 14)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 집적지역의 명칭, 집적지역 지정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집적지역 개발계획을 제출해야 함

② 개선방안

□ 조경사업자의 범위 확대

- 「조경진흥법」제2조(정의) 개정을 통해 조경사업자의 범위를 확대

[표 5-6] 법률개정안 (조경사업의 범위 확대)

기존	개정안
조경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경”이란 토지나 시설물을 대상으로 인문적, 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설계·시공·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조경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기술사법」 제5조의7 및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조경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조경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경”이란 토지나 시설물을 대상으로 인문적, 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설계·시공·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u>2. “조경사업”이란 조경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u> <u>3. “조경사업자”란 조경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u>

□ 조경진흥시설 조성 및 운영 계획서 수립 의무화

- 조경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구비서류에 조경진흥시설 조성 및 운영 계획서 포함 (문화산업진흥시설의 경우 진흥시설 조성 및 운영 계획서 수립 의무화)
- 지정 신청 서류에 조경진흥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포함

[표 5-7] 법률개정안 (조경진흥시설 조성 및 운영 계획서 작성 의무화)

기존	개정안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조경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6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입주 조경사업자 명세서 2. 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 등록증 및 분양(임대)계약서 사본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조경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6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u>1. 진흥시설 조성 및 운영 계획서(신축 건물의 경우 건축계획서 포함)</u> <u>2. 진흥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전체규모 및 진흥시설내 각종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u> 2. 입주 조경사업자 명세서 3. 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 등록증 및 분양(임대)계약서 사본

□ 조경진흥단지 지정요건 완화

- 조경진흥단지 활성화를 저해하는 지정요건 항목 삭제
 - 유사 분야 지정요건 검토결과 진흥단지 지정요건으로 지역 내 지원기관의 입지 여부를 적용한 사례는 부재
 - 조경진흥단지가 조경수와 조경시설물 생산·유통업 등 기반시설 설치비가 전체 사업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의 “교통,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이라는 요건은 완화될 필요
 - 조경진흥단지와 조경진흥시설 제도는 현재와 같이 공간과 기반시설이 이미 갖춘 사업자를 사후적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역량을 갖춘 영세 조정사업자들에게 국가와 지자체에서 공간과 기반시설을 사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

[표 5-8] 법률개정안 (조경진흥단지 지정요건 완화)

기존	개정안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7조(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조경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개 업체 이상의 조정사업자(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20개 업체 이상의 조정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하고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해당 지역에 있을 것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정지원센터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조정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3. 교통,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7조(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조경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개 업체 이상의 조정사업자(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20개 업체 이상의 조정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하고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해당 지역에 있을 것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정지원센터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조경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3. 교통,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기반시설 확충방안 및 재원조달방안 타당성

□ 조경진흥단지 조성 및 운영 계획서 수립 의무화

-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신청 구비서류에 조경진흥단지 조성 및 운영 계획서 포함
 - 사례조사 결과 조경진흥단지를 제외한 모든 단지와 지역·지구 제도에서 조성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음

[표 5-9] 법률개정안 (조경진흥단지 조성 및 운영 계획서 작성 의무화)

기존	개정안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조경진흥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입주 조정사업자 명세서 2. 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임대)계약서 사본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조경진흥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진흥단지 조성 및 운영 계획서 2. 입주 조정사업자 명세서 3. 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임대)계약서 사본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평가 체크리스트(안) 마련

- (조경진흥시설)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정 신청 구비서류 평가 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안) 작성
 - 문헌연구 및 전문가 인터뷰조사를 통해 평가요소를 도출한 후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배점 차등
 - 체크리스트(안)은 지정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일정 점수 미만의 사업자 지정을 재검토하는 기준으로 활용
 - 지자체 조경 산업 규모와 육성 역량,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전문성, 중소기업자 비중, 조경사업자 사용 면적 비율

[표 5-10] 조경진흥시설 평가 체크리스트(안)

순 위	구분	총점	세부항목 (점수)	평가방법
1	지자체 조경산업 규모와 육성 역량	40	· 지자체 조경산업 규모(15) - 업체수(5) - 종사자수(5) - 매출액(5) · 조경산업 육성 전담부서 유무(5) · 최근 2년 조경산업 관련 업무보고 유무(5) · 조경 관련 축제·이벤트 개최 실적(5) · 지자체 조경 관련 대학학과 소재 (5) · 지자체 조경 관련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소재 (5)	계량
2	사업추진계획	20	· 사업목표 및 계획방향 적절성, 계획의 충실성 및 기대효과(10) 비계량 · 자원조달계획, 사업시행계획의 현실성, 구체성, 타당성 (10)	
3	전문성	20	· 참여 전문인력 보유현황과 경력 (10) 계량 · 사업실적 (10)	
4	지역 형평성과 중소기업자 비중	10	· 지자체 낙후도 (5) · 입주 조경사업자 중 중소기업자 비중 (5)	
5	조경 관련 시설 면적 비중	10	· 조경 관련 시설이 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10)	
총점		100	-	-

- (조경진흥단지)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배점을 차등하여 구비서류 평가 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안) 작성

[표 5-11] 조경진흥단지 평가 체크리스트(안)

순 위	구분	총점	세부항목 (점수)	평가방법
1	사업추진계획	30	· 사업목표 및 계획방향 적절성, 계획의 충실성 및 기대효과 (15) · 자원조달계획, 사업시행계획의 현실성, 구체성, 타당성 (15)	비계량
2	지자체 조경산업 규모와 육성 역량	30	· 지자체 조경산업 규모(15) - 업체수(5) - 종사자수(5) - 매출액(5) · 조경산업 육성 전담부서 유무(2.5) · 최근 2년 조경산업 관련 업무보고 유무(2.5) · 조경 관련 축제·이벤트 개최 실적(2.5) · 지자체 조경 관련 대학학과 소재 (2.5) · 지자체 조경 관련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소재 (5)	계량
3	전문성	20	· 참여 전문인력 보유현황과 경력 (10) · 사업실적 (10)	계량
4	지역 형평성과 중소기업자 비중	10	· 지자체 낙후도 (5) · 조경사업자 중 중소기업자 비중 (5)	
5	기반시설 확보	10	· 교통, 상하수, 전기, 통신 등의 기반시설 확보 여부(10)	
총점		100	-	-

2) 지정절차

① 현황 및 문제점

□ 지정절차

- 지정절차는 사업자가 일정양식의 신청서와 일정 요건 구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검토 후 지정(지정서 발급)
 - 구체적인 지정절차와 주체별 역할 제시 필요

② 개선방안

□ 구체적 지정절차 제시

- 지정절차는 크게 신청 → 지정 → 자금 및 기반시설 지원 → 이행점검 → 성과 측정 및 사업평가 환류 등 5단계로 구분

[표 5-12]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절차(안)

절차	주체별 역할
1 조경진흥시설(단지) 신청	· 국토교통부: 사업의 범위 및 지정기준, 사업절차,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작성·배포 · 시·도: 조경진흥시설(단지) 사업계획 시·군에 통보 · 시·군: 사업 홍보 · 사업 신청자: 조경사업체와 협의, 조경진흥시설(단지) 조성 및 운영 계획서 제출
2 조경진흥시설(단지) 지정	·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 현장실사, 공개발표평가 실시 등 종합평가 후 조경진흥시설(단지) 지정
3 자금 및 기반시설 지원	·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 연차별 자금 및 기반시설 지원계획 수립, 자금 및 기반시설 지원 · 사업신청자: 자금 및 기반시설 지원 요청
4 이행점검	·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 조경진흥시설(단지)의 설계·시공·착공·감리·준공 등 단계별 추진상황 및 자금 집행실적 점검 · 시·군: 행정지원, 분기별 사업추진상황 파악 및 보고, 사후관리와 감독
5 성과 측정 및 사업평가 환류	·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 조경진흥시설(단지) 사업성과 측정 및 평가 환류

3. 지원내용

① 현황 및 문제점

□ 조경진흥시설

-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해 1)진흥시설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조경사업에 필요한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3)그 밖에 진흥시설을 조성·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
- 인식조사 결과 전문가들과 조경분야 종사자들은 조경진흥시설 지정을 통해 '세제 혜택 및 부담금 면제', '건축물 또는 부지 확보', '유지관리비 지원' 등을 기대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 조경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이에 준하는 지원혜택 부여
 - 그러나 진흥시설 중 「기술사법」제5조의7 및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조경사업을 하는 시설에 한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준하는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인식조사 결과, 조경진흥시설에 적합한 유형은 조경설계서비스업, 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조경공사업 순으로 나타남
 - 다양한 분야의 영세한 조경사업자들이 집적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하고자 하는 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

□ 조경진흥단지

- 조경진흥단지는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진흥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해 1)진흥단지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조경사업에 필요한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3)그 밖에 진흥단지를 조성·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
- 인식조사 결과 조경진흥단지 지정을 통한 기대효과는 '유지관리비 지원', '건축물 또는 부지 확보', '세제 혜택 및 부담금 면제' 순으로 나타남
-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받는 조경진흥시설과 달리 조경진흥단지를 대상으로 한 지원내용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원내용

○ 집적 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지원

- (세제 지원) 집적시설 사업시행자가 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 제한법 제58조제1항)
- (부담금 면제)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제1항)
- (국·공유재산) 집적 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및 임대 허용(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
- (건축 금지 특례) 전용주거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집적 시설 건축을 허용(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
- (시설비용) 국가나 지자체는 벤처집적 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 (기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미술장식 설치 의무 면제(건축비의 1% 이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제3항)

○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 (세제 지원) 수도권 지역(과밀억제권역) 집적 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을 배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2항)
- (건축 금지 특례)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한 자는 2,000㎡ 이하의 도시형 공장 설치 허용(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3항)
- 입주자는 공장 설립 및 제조 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처리

② 개선방안

□ 조경진흥시설 지원대상 범위 확대

- 현행법에서 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사업자에 한정된 지원대상의 범위를 조경사업자 전체로 확대

[표 5-13] 법률개정안 (조경진흥시설 지원대상 범위 확대)

기존	개정안
조경진흥법 제7조(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 중 「기술사법」 제5조의7 및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조경사업을 하는 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조경진흥법 제7조(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에서 중 「기술사법」 제5조의7 및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조경사업을 하는 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조경진흥단지 지원내용 구체화

- 전문가 인터뷰조사 결과 조경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각종 부담금이 발생하므로 각종 부담금 면제에 관한 사항 포함 (관련사례: 문화진흥시설)

- 조경진흥단지 사업추진 시간적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 포함 (관련사례: 문화진흥시설)
- 조경수와 조경시설물 단지 조성 시 원활한 부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국·공유재산의 대부 사용 등에 관한 사항 포함 (관련사례: 문화진흥시설)
 - 영세한 조경사업자들은 공공건축물 또는 국·공유림 등의 국·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조경 진흥단지를 조성하는 방향이 현실적 대안
- 조경진흥단지 활성화를 위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에 관한 사항 포함 (관련사례: 산업단지)

[표 5-14] 법률개정안 (조경진흥단지 각종 부담금 면제에 관한 사항 포함)

기존	개정안
(신규)	조경진흥법 제9조(각종 부담금 등의 면제) ① 조경진흥단지 사업실행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면제한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② 조경진흥단지의 조경진흥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신규)	조경진흥법 제10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조경진흥단지 지정권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의 허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3.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9.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② 조경진흥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조경진흥단지 지정권자는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규)	조경진흥법 제11조(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규)	조경진흥법 제12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경진흥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농어촌특별세·재산세·교육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경진흥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및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4. 단기 및 중장기 발전방향

□ 단기계획 (2017~2018년)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수요조사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심의위원회 구성
- 제도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운영·관리 매뉴얼 제작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시범 지정

□ 중기계획 (2019~2021년)

- 시범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사후 이행점검 및 평가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 확대
- 제도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장기계획 (2022년 ~)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 확대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 성과 측정
- 제도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제6장 결론

1. 연구 성과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 연구 성과

1) 조경산업 진흥 정책과 제도 개선 필요성 확인

□ 조경산업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수단

- 조경산업을 통해 생산되는 수목, 초화류 및 지피류 등은 최근 도시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수단¹⁵⁾이며, 폭염과 홍수 피해를 완화시키는데 주요한 역할 수행
- 조경수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단지는 굴뚝산업으로 지칭되는 타 산업 분야와 달리 공해를 발생하지 않고 건강, 치유, 환경교육, 관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 보유
-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행동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린이 놀이시설과 고령시대에 대비한 노인 맞춤형 운동시설을 개발함으로써 의료비용 감소에 기여
- 다양한 분야의 역량 있는 조경 산업 종사자들이 양질의 근무 환경에서 집적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조경 공간 계획·설계, 조경소재 개발·생산·유통을 활성화할 필요

□ 조경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큰 산업 분야

- 조경설계, 조경관리 등 서비스 기반의 산업 분야는 다수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청년뿐만 아니라 빈곤계층, 노인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활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

15)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42%를 도시숲이 흡수 (동아일보 2016.06.21. “숲으로 미세먼지 잡는다”)

- 대규모 토건사업에서 중소규모 도시재생으로 건설 분야의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동네, 마을 단위의 조경 계획·설계 및 시공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한 시점
- 조경수, 조경시설물, 도시공원 등 조경의 대상은 조성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최근 운영·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해당 분야 일자리 수요 증가
- 지역사회 단위 조경 인프라의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법적인 시설을 지정함으로 지역 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

□ 도시재생 뉴딜사업, 빈집 정비 등 정부 정책과 밀접한 관련

- 시민정원사, 나무의사, 동네목수 등 지역사회의 건축·조경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협동조합 형태로 지역 환경 개선 사업장을 조성하는 정책 증가
- 저층 주거지의 도시재생 사업에서 옥외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원과 텃밭 등 식물 소재 기반의 조경 공간을 조성·관리하기 위해서는 조경 전문가들의 참여 기반을 구축할 필요
- 최근 전국적으로 빈집 문제와 유휴 산업단지 문제 심각
-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 내 빈집을 조경진흥시설로 지정하여 정원과 공원 설계·시공을 전담토록 하거나, 나무병원 등을 설치함으로써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향하는 양질의 생활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 가능
- 유휴 산업단지를 활용하여 조경수를 생산·유통·판매하는 조경진흥단지로 조성함으로써 국공유 공간의 가치 제고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

□ 조경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필요

- 2015년 기준 조경산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사업체수 23,213개소, 종사자수 43,520명, 연 매출액 약 8조 원의 시장이 형성
 - 통계자료 부재로 조경 시설물 생산 및 유통 분야, 조경 감리 분야는 제외한 결과
- 타 산업분야에 비해 조경 분야는 독립된 산업 영역이라는 인식이 약해 정부 차원의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음
-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 도시 활성화와 주거 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등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관련이 많은 조경산업 분야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 필요
- 조경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7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조경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 상태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세제 혜택과 부담금 면제,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2) 사업모델과 법률 개정안 제시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예상 사업모델 제시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에 적합한 입지, 규모, 종사자 등을 제시
- 조경진흥단지는 조경수 기반 사업모델, 조경시설물 기반 사업모델, 조경복합문화단지 사업모델로 구분하여 기본방향과 사업추진방식 제시
- 조경진흥시설은 설계, 시공, 관리, 자재 등 서비스 기반의 영세 조경 사업체들이 집적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모델 제시

□ 조경사업자의 범위 확대와 지정기준 개선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의 대상이 되는 조경사업자의 범위를 확대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 신청 구비서류에 조성 및 운영 계획서를 포함하여 사업추진의 안정성과 실효성 확보
- 조경진흥단지 제도 활성화를 저해하는 지정 요건 항목 삭제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 신청자를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안) 제안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에 따른 지원내용 보완

- 조경진흥시설로 지정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
- 조경진흥단지 지정에 따른 각종 부담금 면제와 혜택에 관한 사항 제시

3) 기대 효과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실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과 조성 및 운영·관리를 현실화하는데 기여

□ 조경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들의 인식 향상

- 다양한 분야의 조경사업체들이 집적하여 관련 기술을 개발 및 공유하고, 고품질의 조경자재를 생산하며, 통합적으로 조경 공간을 계획·설계·시공·관리함으로써 조경서비스 질적 향상
- 조경 분야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 향상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시범사업 추진 필요

- 본 연구는 관련 제도와 인식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모델(안)과 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한계 존재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사업자들의 의견 수렴과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마중물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
-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권자, 지원내용, 운영·관리 등에 관한 법령을 개정할 필요

□ 사후 감독과 평가·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 본 연구는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 마련에 초점을 둔 반면 지정 이후의 감독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 존재
- 지정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의 감독·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체계 구축 필요

-
- 김중 외 (2007),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부
- 김태열 외 (2009), 「소프트웨어진흥단지 활성화 방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http://www.cak.or.kr>
- 대한전문건설협회 홈페이지, <http://www.kosca.or.kr>
- 박영옥 외 (2008), 「스포츠산업진흥시설 및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운영 활성화 방안」, 체육과학연구원
- 산림청 (2014), 「조경수산업 육성대책」, 산림청
- 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17), 「2017 엔지니어링 통계편람」
- 임병을 (2016), “조경수 유통, 자세히 들여다보기”, 에코스케이프 92호
- 임종인 외 (2015), 「산업단지 클러스터의 성과와 과제」, 한국산업단지공단
- 장철순 외 (2011),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효율적 지원방안 연구-산업단지의 유지관리비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국토해양부
- 한국기술사회 홈페이지, <http://www.kpea.or.kr>

Criteria Designation of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and Complex

SUMMARY

Kim, Yong Gook
Kim, Shin Sung

Chapter 1. Introduction

The social demand for landscape architecture is increasing. The role and function of landscape architecture, such as health and healing, regional revitalization, and response to climate change, are expanding. Korean landscape architecture was introduced in the 1970s to preserve damaged land environments due to indiscriminate development projects. Since then, it has grown steadily, relying on large-scale construction project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new cities. However, since 2000, it has been stagnant with the change of urban development paradigm. As a result, small-scale landscape businesses are increasing, and the status as an independent industry is lowered.

The "Landscape Architecture Promotion Act" enacted in 2015 include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and complex system to support landscape architecture industry by intensively attracting landscape architecture companies and supporting facilities, and to activate landscape architecture area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n improvement plan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and complex system. The main research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ly, through the analysis of related systems and cases, not only directions for the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and complex system, but also implications for the revision of laws were derived. Second, the necessity of the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and complex system as well as the improvement plan of the system were derived through the cognition survey for workers and experts in the landscape architecture area. Third, we proposed a

legislative amendment plan for the activation of the project model and system of the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and complex.

Chapter 2. Landscape Architecture Industry Status and Need of Space Integration

We have divided the landscape architecture industry into five areas: design, inspection, construction, maintenance and management, material production and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research, it is found that the enterprises in the landscape architecture design sector are accelerating. Landscape architecture construction has been stagnant since 2009. On the other hand, landscape architecture maintenance and management areas are growing rapidly. There is no statistical data in the field of landscape architecture inspection and landscape architecture material production and distribution. Based on the available data, it is estimated that the total amount of sales of landscape architecture industry is about 8 trillion won, the number of businesses is 23,212, and the number of workers is 43,520.

The necessity of the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and complex system is as follows. First, by expanding information exchange through accumulation, it can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echnical capacity and opening up a market. Second, quality of landscape architecture service delivered to consumers can be improved by establishing infrastructure of good quality landscape architecture material production and rational distribution system. Third, small-scale landscape architecture businesses can contribute to job creation by providing opportunities for co-existence.

Chapter 3. Analysis of Related Systems and Cases

Related cases of promotion facility and complex system were selected and compared. As a result of the review, most systems were constructed in a similar format. The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and complex system are relatively stricter in criteria designation, and the support contents are insufficient. In the domestic case analysis, we analyzed in detail three cases that corresponded to the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and complex system. In the case study on the overseas case, we examined and analyzed policy cases in the promotion of landscape architecture industry in Japan, Singapore, USA and China.

Chapter 4. Recognition Survey for Workers and Experts in Landscape Architecture

Through the survey of 75 people in the landscape architecture areas, we rationalized the management plan of the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and complex.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workers and experts in landscape architecture recognized the need for policies and projects to promote the landscape architecture industry. Second, the industrial types suitable for the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were landscape design, landscape maintenance and management, landscape construction industry. Meanwhile the industrial types suitable for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complex were landscape trees and landscape facilities production and distribution business. Third, the expected effect of the designation of the landscape architectural facility was 'the increase of the business opportunity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network'. On the other hand, that of the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complex was 'the activation of various information sharing'. Fourth, 'the size of the local government landscape architecture industry and the capacity to cultivate' was the most important among the designation criteria of the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As for that of the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complex, 'feasibility of promotion plan' was the most crucial. Fifth, 'tax benefit and deductible exemption' was considered as a necessary support method for the activation of the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and 'maintenance and management fee support' was recognized in the case of the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complex.

Chapter 5. Improvement Plan of Landscape Architectural Facility and Complex System

This study proposed a project model of the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and complex. The difference between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and complex according to location, size, and number of employees was suggested.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is designed to integrate small-scale landscape architecture-oriented businesses such as design, construction, maintenance and management to build up a competitive environment such as information sharing and technical cooperation, and reduce rent and maintenance. The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complex is divided into landscape-trees based business model, landscape architecture facilities based business model, and multi-functional landscape architectural complex business model.

Second, the study suggested ways to improve designation criteria and designation procedures. It proposed the revision of laws and ordinances concerning the expansion of the range of landscape architect industry, the establishment of the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and complex, and the relaxation of the designation requirements for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complex. Further, it suggested evaluation checklist and role of each subject according to designation procedure of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and complex.

Third, the study suggested ways to improve support contents as well as short-, mid- and long-term development directions. It expanded the scope of support for the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and proposed legislative amendment in order to specify the contents of support for the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complex. For this, it proposed a stepwise plan for activate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and complex policies by dividing into short-term (2017 ~ 2018), mid-term (2019 ~ 2021) and long-term (2022 ~).

Chapter 6.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can confirm the necessity of improvement of system in promoting landscape architecture industry. The landscape architecture industry is a policy instrument that can solve the health and safety problems of the people and is an industry that has a great effect on job creation. It is also closely related to current government policies such as urban regeneration, New Deal, and maintenance of empty houses. Landscape architects and professional groups also shared the necessity of landscape architecture industry promotion policy.

Second, we expect that this study could help policy direction of central government and municipal government by presenting the expected business model of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and complex. Third, we prepared legislative amendment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Keywords :

Landscape Architecture Promotion Act,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and Complex, System Improvement

부록 1.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 단지 관련 제도

Appendix 1

1. 관련 제도 운용 현황

1) 조새개요

□ 조새 대상

- 근거 법률이 존재하고, 법률에 근거해 해당 시설이 지정·조성된 사례

□ 조사 방법

- 분석요소로는 정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원내용, 운영·관리 등 5개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내용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표 부록-1] 근거법률

구분	근거 법률
시설	조경진흥시설 •조경진흥법 제7조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
	벤처기업집적시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1조
	문화산업진흥시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9조

구분	근거 법률
단지	조경진흥단지
	•조경진흥법 제8조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6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
	문화산업단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
단지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단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
산업기술단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2) 조사 결과

□ 정의

-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는 공통적으로 관련 사업자 및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유치하거나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적으로 지정·고시되어 있는 시설 및 단지를 의미

[표 부록-2] 정의

구분	내용
조경진흥시설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조경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설물
벤처기업집적시설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된 건축물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설
문화산업진흥시설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한 건축물
조경진흥단지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조경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되거나 조성된 지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협업화(協業化)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
문화산업단지	기업·대학·연구소·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기술훈련·정보교류·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건물·시설의 집합체로 지정·개발된 산업단지

구분	내용
자식기반산업집적지구	자식기반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역
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단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지나 부지로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와 벤처기업 등에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
산업기술단지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건물·시설 등의 집합체

□ 지정기준

- 입주사업자 수에 대해 서울 및 수도권에 대해서는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집적율을 요구하며, 특히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중소기업 입주비율이 타 산업진흥시설보다 높은 경향
- 해당 산업의 진흥을 위해 특정 지역을 단지 또는 지구의 형태로 지정하는 유형은 신규로 건물과 시설의 집합체를 조성하는 경우, 산업집적도가 높은 지역을 제도적으로 지정하는 경우, 산업의 집적 및 활성화를 위해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경우로 구분

[표 부록-3] 지정기준

구분	내용
조경진흥시설	1. 5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시설에 입주한 조경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조경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시설물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4.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조경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소프트웨어진흥시설	1. 10(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20)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총입주 소프트웨어사업자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4.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소프트웨어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벤처기업집적시설	1. 건축물 연면적 600㎡ 이상 (건축물의 일부를 지정받으려는 경우 총 연면적의 50% 이상을 지정대상에 포함) 2.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입주하게 하되, 입주한 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이 4개 이상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3개 이상)일 것 -연면적의 100분의 7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사용하게 할 것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 면적은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사용하게 할 것
스포츠산업진흥시설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5) 이상의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입주하는 스포츠산업 사업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일 것 3. 입주하는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 회의실 및 공용 장비실 등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구분	내용
문화산업 진흥시설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입주한 전체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의 사업장 및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4.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문화산업 관련 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엔지니어링 산업진흥시설	1. 엔지니어링사업자 5인(서울특별시 등의 경우에는 10인) 이상이 입주할 것 2. 입주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진흥시설 총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4.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엔지니어링활동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조경진흥단지	1. 1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2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하고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해당 지역에 있을 것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경지원센터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조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조경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3. 교통,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소프트웨어 진흥단지	1. 50(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00)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하고 있을 것 2. 소프트웨어관련 시설 및 기관이 있을 것 3. 교통·통신·금융기관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벤처기업육성촉 진지구	1. 해당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의 수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2.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있을 것 3. 교통·통신·금융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문화산업단지	1. 문화산업단지의 지역 간 균형 배치 2. 기존 문화산업단지와의 성격·기능 비교 및 중복투자 여부 3. 지역의 산업 연관 효과 및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 4. 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자원조달 계획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산업단지 면적 또는 미분양비율 고려
지식기반산업집 적지구	1.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가 지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방안 및 그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등이 타당성이 있을 것
첨단의료 복합단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중에서 입지 선정 요건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8. 그 밖에 개별 법률에서 지정되어 개발되는 지역으로서 첨단의료복합단지로의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입지 선정 요건) 1.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과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定住) 가능성 2.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연계 정도 3. 우수 의료기관의 집적 정도

구분	내용
	4.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부지 확보의 용이성 5. 재정·세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 6. 그 밖에 국토균형발전 등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기술창업집적지역	1. 해당 기관이 보유한 교지나 부지의 연면적에 대한 지정 면적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지정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집적지역개발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1.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에 관한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이 그 사업목적에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3. 조성하려는 산업기술단지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기준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지정절차

- 진흥단지의 경우,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크게 나타나, 해당 산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서에 지정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하기도 함
- 공통적으로 산업단지 및 집적지구를 조성·지정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역 내 산업 환경뿐만 아니라 지역 간 균형발전, 계획의 타당성, 기존 계획과의 조화 등을 고려

[표 부록-4] 지정절차

구분	내용
조경진흥시설	•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지정절차 : 지정신청(사업자) → 일정양식의 신청서 / 일정요건 구비 증명서 첨부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지정권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지정절차 : 지정신청(사업자) → 일정양식의 신청서 / 일정요건 구비 증명서 첨부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
벤처기업집적시설	• 지정권자 : 시·도지사 • 지정절차 : 시·도지사 권한으로 지정 → 1년 이내 일정요건 달성
스포츠산업진흥시설	• 지정권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지정절차 : 지정신청(지방자치단체장) → 일정양식의 신청서 / 일정요건 구비 증명서 첨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문화산업진흥시설	• 지정권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지정절차 : 지정신청(지자체를 포함한 사업자) → 일정양식의 신청서 / 일정요건 구비 증명서 첨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 지정권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지정절차 : 지정신청(사업자) → 일정양식의 신청서 / 일정요건 구비 증명서 첨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

구분	내용
조경진흥단지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지정절차 : 지정신청(사업자) → 일정양식의 신청서 / 일정요건 구비 증명서 첨부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정권자 : 중소기업청장 •지정절차 : 지정신청(시·도지사) → 일정양식의 신청서 / 일정사항 포함된 육성계획서 첨부 →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
문화산업단지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지정절차 : 지정신청(지방자치단체장) → 일정양식의 신청서 / 일정사항 포함된 단지조성계획 첨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 검토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 요청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권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정절차 : 지정신청(시·도지사) → 일정양식의 신청서 / 일정사항 포함된 활성화계획 첨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요청
첨단의료 복합단지	•지정권자 : 보건복지부장관 •지정절차 : 일정사항 포함된 조성계획 수립(보건복지부장관) → 위원회 심의·의결 → 일정요건을 고려한 입지 선정(보건복지부장관) → 지정·고시(보건복지부장관)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지정권자 : 중소기업청장 •지정절차 : 지정신청(대학·연구기관장) → 일정사항 포함된 개발계획 첨부 → 중소기업청장에게 지정 요청
산업기술단지	•지정권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정절차 : 일정사항 포함된 조성계획 수립(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사업자) → 일정양식의 신청서 / 일정사항 포함된 사업계획서 등 서류 첨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요청

□ 지원내용

- 공통적으로 진흥시설 조성 및 운영시 필요자금, 공동지원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산업 특성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로도 인정되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되면 요건 충족, 입주현황 및 운영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 등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됨

[표 부록-5] 지원내용

구분	내용
조경진흥시설	•「기술사업」 제5조의7 및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조경 사업을 하는 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 •집적 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지원 -(시설설치 및 운영비) 진흥시설의 조성 및 운영, 조경사업에 필요한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지원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지원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6조)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 •집적 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지원 -(시설설치 및 운영비)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조성·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초고속통신망 등 소프트웨어사업에 필요한 공동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타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

구분	내용
벤처기업 집적시설	•집적 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지원 - (세제 지원) 집적 시설 사업시행자가 집적 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50% 감면(지방세 특례 제한 법 제58조제1항) - (부담금 면제)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벤처 법 제22조제1항) - (국·공유재산) 집적 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및 임대 허용(벤처 법 제19조) - (시설비용) 국가나 지자체는 벤처집적 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벤처 법 제20조) - (기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미술장식 설치 의무 면제(건축비의 1% 이내)(벤처 법 제22조제3항) •임주기업에 대한 지원 - (세제 지원) 수도권 지역(과밀억제권역) 집적 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지방세 특례 제한 법 제58조제2항) - 입주자는 공장 설립 및 제조 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처리
스포츠산업 진흥시설	•집적 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지원 - (국·공유재산) 집적 시설 설치운영자에게 국유·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매각 가능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3조) - (시설설치 및 운영비) 진흥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비·운영비 지원 (스포츠산업진흥법 제9조)
문화산업 진흥시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 •집적 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지원 - (시설설치 및 운영비) 진흥시설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문화산업 관련 사업에 필요한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그 밖에 진흥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0조) - (부담금 면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7조)
엔지니어링 산업진흥시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 •집적 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지원 - (시설설치 및 운영비) 진흥시설의 조성·육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엔지니어링활동에 필요한 공동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진흥시설의 조성·육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1조)
조경진흥단지	•집적 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지원 - (시설설치 및 운영비) 진흥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경사업에 필요한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지원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지원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7조)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집적 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지원 - (자금 지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촉진지구를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 (벤처 법 제18조의5) - (시설설치 및 운영비) 초고속통신망,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전력망, 급수·하수시설, 가스시설 등 벤처기업의 사업영위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시험·연구·개발을 위한 공용장비 구입, 벤처지원센터 및 벤처직접시설 건립 등 창업, 기술 및 경영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벤처기업종사자 및 촉진지구실무자를 위한 장단기 교육·연수, 벤처투자마트, 해외시장개척단 등 국내외 재무 및 영업활동 지원사업, 기술개발 컨소시엄(산학연공동연구, 산산 공동연수 등) 결성·기술개발 지원, 공동회의장·상품전시장·연수시설·정보센터 등 지원시설 설치, 기타 촉진지구내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경영·기술 지원사업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9조) •임주기업에 대한 지원 - (자금 등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 (벤처 법 제18조의5) - (시설설치) 촉진지구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 (벤처 법 제18조의5)

구분	내용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 준용)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조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미술장식 설치 면제 (벤처 법 제18조의5, 제22조)
문화산업단지	•집적 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지원 -(조성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원 가능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6조) -(부담금 면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조지조성비 면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7조),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농어촌특별세·재산세·교육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및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5조) -(국·공유재산) 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해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사용, 수익, 매각 가능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9조) -(세제지원) 정부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시설, 문화산업단지, 제작자·투자회사·투자조합이 문화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창업자 및 창업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 가능, 문화산업진흥시설과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장비, 설비 및 부품 등에 대하여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감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0조)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집적 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지원 -(사업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하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우선 지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기금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 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시설설치 및 운영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이 지식산업센터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설치할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 지원,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 지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보조금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있거나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지원 가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부담금 감면)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운영하는 기업 및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산업집적기반시설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조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지방세 감면)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내에 산업집적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자,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내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내의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신용보증)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거나 분양받는 자가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에서 우선적으로 신용보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첨단의료 복합단지	•집적 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지원 -(시설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세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구분	내용
	- (임대료 등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려는 자에 대하여 토지나 건물 등의 임대료 등을 감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 (시설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숙소, 편의시설, 탁아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 (고용자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 (국공유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공장입지 및 건축특례, 자원특례 항목 참조)
산업기술단지	• 집적 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지원 - (조사업협) 사업시행자가 일지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협조요청가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금 지원 (산업기술단지법 제4조의2) - (국공유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 가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일 경우 무상으로 임대,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나 대학의 교지 일부를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에게 임대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 가능하고 임대 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산업기술단지법 제10조) - (시설설치 및 운영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도로, 용수(用水) 공급시설, 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 산업기술단지의 정보화 및 산업기술단지 간의 정보통신망 구축·이용 등 정보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산업기술단지법 제11조, 제13조, 제14조) - (부담금 면제)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산업기술단지법 제16조) - (자금출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기관,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단지 조성·운영에 참여하는 국립학교 및 산학협력단은 단지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출연 가능 (산업기술단지법 제17조, 제18조) - (재산출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을 받아 설치한 연구기반을 사업시행자에게 출연, 매도, 사용 가능 (산업기술단지법 제18조) - (자금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의 사업 지원을 위한 자금지원 등 우대조치 가능 (산업기술단지법 제19조) - (세제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 (산업기술단지법 제20조) •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 (국공유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 가능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부담금 면제) 교통유발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미술장식 설치 면제 - (자금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자의 사업 지원을 위한 자금지원 등 우대조치 가능 (산업기술단지법 제19조) - (기술지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주자에 대한 기술 및 경영지도, 이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산업기술단지법 제22조)

[표 부록-6] 공장입지 및 건축특례

구분	내용
조경진흥시설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공장입지 및 건축특례 적용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해당사항 없음
벤처기업 집적시설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지역(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건축할 수 있다.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자는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도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스포츠산업 진흥시설	해당사항 없음
문화산업 진흥시설	해당사항 없음
엔지니어링 산업진흥시설	해당사항 없음
조경진흥단지	해당사항 없음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해당사항 없음
도시첨단 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특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지역·지구에 조성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시설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예정지역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3.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4.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공공주택지구 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친수구역 6.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의 택지개발지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구 •제1항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지역·지구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때에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적용되는 녹지율은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구분	내용
지식기반 집적지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지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제22조의3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나 제4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는 산업단지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역을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서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 용도지역별로 정하고 있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고한도까지 허용할 수 있다.
첨단의료 복합단지	•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 집적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지역 중 보전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 집적지역에서 창업자나 벤처기업은 「건축법」 제19조제1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만을 말한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해당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산업기술단지	• 제2조제1호아목에 따른 시험생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제6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절차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는 제외한다) 안에 설치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도 불구하고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제2조제1호자목에 따른 연구·개발의 성과를 활용한 생산 및 판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조성·운영 중인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구조상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을 그 산업기술단지 안에 설립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19조제1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9조 • 산업기술단지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 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기술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말한다)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제4조의2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시설구역 등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원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표 부록-7] 지원에 관한 특례

구분	내용
조경진흥시설	•지방자치단체는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해당사항 없음
벤처기업 집적시설	해당사항 없음
스포츠산업 진흥시설	해당사항 없음
문화산업 진흥시설	해당사항 없음
엔지니어링 산업진흥시설	해당사항 없음
조경진흥단지	해당사항 없음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해당사항 없음
문화산업단지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의 조성은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다.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거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지원단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공급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그 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개발 절차를 따를 경우 주택 공급의 특례, 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적용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해당사항 없음
첨단의료 복합단지	해당사항 없음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국유재산법」 제18조와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와 제20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창업자·벤처기업 또는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집적지역에 건물(공장용 건축물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집적지역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계약(갱신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간이 끝나면 그 시설물의 종류·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을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기부하거나 교지나 부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
산업기술단지	•제6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절차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의 전기시설 설치와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산업단지개발사업 비용부담의 특례에 관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를 준용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은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다.

□ 운영·관리

-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되면 요건 충족, 입주현황 및 운영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 등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됨
- 기 지정된 산업단지의 목적달성 여부, 성과활용 등을 중시하고 이에 대한 평가제도 마련
- 단지조성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해당 산업단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고시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과 구제성 제고 가능
- 심의위원회, 발전협의회, 네트워크협의회 등 조성된 단지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적기반 필요

[표 부록-8] 지정해제 및 변경방안

구분	내용
조경진흥시설	(지정해제) •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진흥시설이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7조제1항과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 및 설비 등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지정해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진흥시설이나 진흥단지가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변경) • 영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진흥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 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진흥시설 변경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단체·회사명 또는 대표자명 2. 진흥시설의 지정면적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진흥시설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당해 변경 내용이 법, 영 및 고시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의 변경을 승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해제) • 시·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지정변경)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건축물의 지정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변경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이전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변경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내용
스포츠산업 진흥시설	(지정해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문화산업 진흥시설	(지정해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지정요건 미달사유를 사유발생 후 20일내에 보고한 경우 6월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음 2. 진흥시설의 지정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진흥시설 지정을 받은 후 1년이내에 진흥시설 지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지정변경) - 진흥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 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진흥시설 변경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단체·회사명 또는 대표자명 2. 진흥시설의 지정면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진흥시설 변경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당해 변경내용이 법, 영 및 고시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의 변경을 승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시설	(지정해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진흥시설이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예비지정해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예비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일정한 기간 내에 진흥시설 지정의 조건을 갖출 수 없는 경우 2.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예비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변경) - 진흥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시설 변경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단체·회사명 또는 대표자명 2. 진흥시설의 지정면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진흥시설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이 법, 영 및 고시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의 변경을 승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화재, 도난, 분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지정서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구분	내용
조경진흥단지	(지정해제) •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진흥단지가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7조제1항과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 및 설비 등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정해제) •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촉진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촉진지구육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사업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중소기업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촉진지구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촉진지구 지정시 고시된 촉진지구 육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벤처기업 집적도의 현저한 저하, 사업관리 부실, 사업의 지연 등으로 촉진지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2회 이상의 보조금 반환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를 받은 경우 4. 기타 촉진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되거나 시·도지사나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촉진지구 해제를 건의한 경우 (지정변경) • 지정변경시에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정변경 신청 및 심사를 실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지정을 결정하고 고시한다.
문화산업단지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는 문화산업단지의 운영·관리에 대한 내용이 없으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 해제·전환·통합 (지정해제) •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려고 하였으나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나.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의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하지 못한 경우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종류전환) •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종류의 전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준공된 지 10년 이상 경과하고 공장증설 등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산업단지가 준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한다)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면적에서 유치업종 변경이 있는 경우 (단지통합) •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연접한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둘 이상의 산업단지(종류가 같은 산업단지로 한정한다)를 관리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하나의 산업단지로 통합할 수 있다. 다만,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산업단지통합"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구분	내용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해당사항 없음
첨단의료 복합단지	(지정해제)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지정취소) •중소기업청장은 집적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집적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집적지역 지정시 고시된 집적지역개발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4. 입주기업 집적도의 현저한 저하, 사업관리 부실, 사업의 지연 등으로 집적지역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5. 기타 집적지역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집적지역 취소를 건의한 경우 (지정변경) •소속기관장은 집적지역개발계획 및 첨부사항 등 그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집적지역의 명칭, 위치 및 부지 면적 2. 주요시설 배치계획 등 사업 목표와 내용 중 중요사항의 변경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개축(改築)·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표 부록-9] 관리·평가 제도

구분	내용
조경진흥시설	해당사항 없음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해당사항 없음
벤처기업 집적시설	(현황보고) •시·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 그 지정을 받은 자로 하여금 입주 현황과 운영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하거나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벤처기업집적시설의 현황(지정 및 지정취소 현황을 포함한다) 2.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기업 및 시설 현황
스포츠산업 진흥시설	해당사항 없음
문화산업 진흥시설	해당사항 없음
엔지니어링 산업진흥시설	해당사항 없음
조경진흥단지	해당사항 없음

구분	내용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사후관리·사업보고·평가) •사후관리는 원칙적으로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며,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사후관리에 외부전문인력이 필요할 경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보조사업자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내에 촉진지구 사업실적 등을 포함한 촉진지구별 사업보고서를 별표 7의 양식에 의거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관련 촉진지구의 사업실적을 취합한 연간사업보고서를 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촉진지구 평가 보고서와 함께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7의 양식을 준용한다. •지방중소기업청은 사업보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사업보고서 제출시 사업비 집행, 계약 등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지방중소기업청은 당해년도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지자체와 협의하여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관련 촉진지구에 대한 전년도 사업추진실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별표 6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중소기업청은 전년도 사업비 정산과 평가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수시평가보고서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지방중소기업청은 제출의 명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하고 별표6의 양식에 의거 수시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 운영) •촉진지구의 지정,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담당 과장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간사는 중소기업청 촉진지구사업 담당사무관이 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촉진지구지정제도의 기본방향 결정 2. 촉진지구의 지정, 재지정과 관련된 사항 3. 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한 지원대책 심의 4. 촉진지구의 육성현황 평가 5. 촉진지구별 연도별 사업계획 및 지원계획 심의 6. 기타 촉진지구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 (촉진지구발전협의회 운영)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촉진지구별로 촉진지구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촉진지구발전협의회는 7명 내외의 임원단(또는 자문단)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10명~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임원단(자문단)은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산업발전에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학계, 산업계, 연구계 등 전문가 중에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위촉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광역 또는 기초단체, 지방중소기업청, 간접보조사업기관, 관련 지원기관 등의 관계자로 촉진지구 사업에 대하여 당해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된다. 촉진지구발전협의회 의 간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촉진지구담당책임자로 한다. •촉진지구발전협의회는 분기 1회 이상 개최되어야 하며, 간사는 회의 개최결과를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고 당연직 위원의 기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촉진지구발전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촉진지구발전협의회는 촉진지구의 중장기발전계획 및 연간사업계획의 수립, 주요장비 및 시설의 설치 등 촉진지구 육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실시한다. •촉진지구발전협의회는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청장에게 촉진지구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구분	내용
	(촉진지구네트워크협의회 운영) •중소기업청장은 촉진지구간 균형발전과 정보교류 등을 위해서 촉진지구네트워크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촉진지구네트워크협의회는 촉진지구발전협의회별로 당연직위원 1명, 간사 등으로 구성되며, 반기 1회이상 개최할 수 있다. •촉진지구네트워크협의회 의장은 위원들간 호선으로 정하며 촉진지구네트워크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촉진지구네트워크협의회는 전국적인 촉진지구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우수·성공사례 또는 촉진지구 발전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를 교류한다. •촉진지구네트워크협의회는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청장에게 촉진지구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문화산업단지	해당사항 없음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명칭·범위 2.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목적 3.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육성방향 4. 주요 유치업종 및 업종별 집적계획 5. 기업·연구소·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의 상호 연계방안 6. 주요 산업집적기반시설 설치계획 7. 주요 지원기관 및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유치에 관한 사항
첨단의료 복합단지	(지정 후 개발)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한다. (육성 종합계획)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소관 사항의 추진방안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방안을 종합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위원회 운영)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위원회를 둔다.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그 밖의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위촉위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주승인)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입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분	내용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입주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심의위원회 운영) •집적지역의 지정, 지원, 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집적지역 심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산·학·연 또는 창업·법률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입주관리) •집적지역에 입주하는 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및 법 제2조에 의한 벤처기업과 입주자의 지원시설, 공동시설 및 후생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총 입주면적의 30% 이내에서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기업도 입주 할 수 있다. •입주자가 설립하는 공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해당하는 도시형공장이어야 한다. (집적지역 관리) •소속기관장은 집적지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집적지역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관리할 집적지역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입주자 선정절차, 입주기준, 입주승인 등 입주에 관한 사항 3. 집적지역안의 토지용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집적지역안의 토지·건물·시설·장비·기술·산업재산권 등의 이용·양도·임차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소속기관장이 집적지역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황보고·평가) •중소기업청장은 집적지역의 조성·운영 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소속기관장은 반기별 집적지역 조성·운영 현황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장은 반기별 현황보고서, 연차별현황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결과활용·성과분석) •소속기관장은 집적지역의 조성이 완료되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의 평가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이하 "사업종료"라 한다), 시설, 장비 등 조성된 인프라의 공동 활용 등 당해 사업의 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매년도의 성과활용보고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은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활용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산업기술단지	(경영실적 평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사업시행자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전년도 경영실적 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우수한 사업시행자에게 성과급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경영실적이 부진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경영 개선에 필요한 인사항, 예산상 및 경영상의 조치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방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분	내용
	(사업시행자 관리·감독)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의 정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정관의 제정·개정, 법인의 해산·청산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인사, 예산, 조직 및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표 부록-10] 지정 후 효과

구분	내용
조경진흥시설	「기술사법」 제5조의7 및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조경사업을 하는 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벤처기업집적시설	-
스포츠산업진흥시설	해당사항 없음
문화산업진흥시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조경진흥단지	해당사항 없음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해당사항 없음
문화산업단지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개발 절차에 따른다.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해당사항 없음
첨단의료복합단지	해당사항 없음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집적지역 중 지정 면적이 제1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면적 이상이고 도시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본다.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에도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추진할 때에 산업단지 또는 지역종합개발지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개발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로 개발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절차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의 전기시설 설치와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산업단지개발사업 비용부담의 특례에 관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를 준용한다.

2. 관련 사례

1) 문화콘텐츠센터(현 서울산업진흥원)

□ 근거 법령 및 관련 제도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시설로 지정된 사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그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④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성 주체 및 절차

- 서울시에서 조성한 정보미디어단지인 디지털미디어시티 내 일부 부지를 문화산업진흥시설로 지정

2002. 4.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 DMC입주요청(서울시→문화관광부)
2002. 5.	문화콘텐츠콤플렉스 조성계획 수립(문화관광부)
2003. 11.	상암동 C3부지 토지사용승인 통보(서울시→문화관광부)
2003. 12.	기본 및 실시설계 업체선정 및 계약(원양건축)
2004. 8.	건축허가, 12. 3 시공사 선정(경남기업 등), 12. 14 기공식
2007. 3.	건물 사용승인(마포구청),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 지원내용

- 문화콘텐츠 지원기관 및 관련시설 집적화로 지원효과의 극대화 및 시설활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문화콘텐츠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와 첨단 기술이 한자리에 어울려 창작 문화콘텐츠를 연구·개발 및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문화콘텐츠산업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및 문화산업 관련단체와 콘텐츠홀, 게임도서관, 교육시설들을 집적
- 시민공개시설(한국영화박물관, 시네마테크, 영상자료실), 대관시설 등 설립 지원

□ 운영현황

- 2017년 현재 서울산업진흥원과 한국영상자료원의 주체로 운영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화정보센터,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등 입주
- 2017년 3월 기준 서울산업진흥원 본사 및 진흥원 포함 14개 기업 입주

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근거 법령 및 관련 제도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시설로 지정된 사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그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④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성 주체 및 절차

- 부천시에서 만화문화의 진흥과 저변 확산을 통해 만화의 예술적, 교육적, 산업적 가치를 증대하여 한국만화산업을 육성·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998년 설립한 부천만화정보센터를 2008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에 이어 2011년 문화산업진흥시설로 지정

1998. 11.	부천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12. 4 부천만화정보센터 설립
-----------	--

1998. 12.	제1회 부천만화축제 개최
-----------	---------------

2001. 10.	부천만화영상산업박람회 개최
-----------	----------------

2008. 2.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	-------------

2009. 8.	한국만화영상진흥원으로 이전
----------	----------------

2011. 8.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	-------------

□ 지원내용

- 2011년 8월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이후, 그동안 부천시가 진흥원의 운영비 지원을 전담 하던 방식으로부터 중앙정부의 지원혜택을 받는 것으로 확대
- 만화를 원소스로 하는 문화콘텐츠 관련 선도기업, 만화작가, 뉴미디어용 만화콘텐츠 제작 작가 및 기업을 대상으로 작업공간 지원, 홍보 지원, 비즈니스 교육, 공공프로젝트 수행 지원 등 프로그램 제공
- 세미나실, 상영관, 전시실, 광장 등 시설 설립 지원

□ 운영현황

- 부천시청 산하 재단법인으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
- 이사회, 원장, 축제사무국, ICC사무국, 경영본부, 만화진흥본부로 조직 구성
- 만화콘텐츠 창조인력 양성, 만화기반 명품 콘텐츠 생산, 만화문화 확산 및 국제교류 활성화, 부천형 중심 만화거점 확대의 4가지 사업 추진
- 2015년 기준 총 102팀 입주하였으며 작가 82팀(321명), 기업 17개사(117명), 단체 3개 기관(30명)으로 구성

3) 강원대학교 정보통신연구소

□ 근거 법령 및 관련 제도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된 사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②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흥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6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진흥시설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⑥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및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성 주체 및 절차

- 민간기업(현대그룹) 지원으로 대학 부설 정보통신연구소를 설립하고 이후 국가(정보통신부)과의 지원사업 협약 체결에 이어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

1994. 3.	강원대학교 부설 정보통신연구소 설립(현대그룹 30억 지원)
1998. 11.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개소(정보통신부 지원)
2003. 3.	대학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지원사업 협약체결(정보통신부)
2003. 8.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정보통신부)
2009. 6.	강원 비즈스파크사업 기업입주 지원
2011. 4.	창업보육센터 웹창작지원사업 참여기업 입주지원

□ 지원내용

- 정보통신, 컴퓨터 분야의 산학협동 기술개발과 인재양성을 통해 국가적인 첨단정보통신기술 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
-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산학연 협동연구, 관련 산업체의 고급 전문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 진행

□ 운영현황

- 2003년 지정 당시 중소 S/W업체 11개 입주

4) 충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근거 법령 및 관련 제도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된 사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②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흥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6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진흥시설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⑥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및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성 주체 및 절차

- 중소기업청의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개소된 이후 정보통신부에 의해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

2000. 4.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선정, 5. 1 충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 개소
2003. 6.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정보통신부)
2005. 12.	창업보육센터 통합운영 승인(중소기업청)
2011. 2.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선정(중소기업청)

□ 지원내용

- 경영지원, 기술지원, 마케팅 지원, 지적재산권취득 지원, 교육 지원 사업 추진
- 1~2월 입주기업 지원사업 수립 후 2~12월 지원사업 실시

□ 운영현황

- 공실 발생에 따라 연중 수시로 입주기업 모집 및 심사 진행
- 2003년 지정 당시 중소 S/W업체 16개 입주, 2017년 현재 47개 기업 입주

5) 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 근거 법령 및 관련 제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사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 ③ 시·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 조성 주체 및 절차

- 미래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조기발굴하고 사업화단계에 맞춘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운영

2003. 7.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2003. 9.	건물 개보수공사
2010. 3.	22개 업체(벤처기업 7개) 입주

□ 지원내용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자로서 미래 유망기술(IT/BT/NT/ET 등)을 보유한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대상
- 회의실, 상담실 등 공용시설 및 시설장비 무료이용 혜택
- 보육단계별 세분화 지원, 기술지원, 전문적 경영지원, 마케팅지원, 연관기관 지원

□ 운영현황

- 2017년 현재 19개 기업 입주

6) 소프트웨어벤처타워

□ 근거 법령 및 관련 제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사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③ 시·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 조성 주체 및 절차

- 한국소프트웨어개발업협동조합에서 회원사들이 출자한 만큼의 지분을 받는 방식을 도입하여 전국 최초로 자립형 벤처집적시설로 기획

2008. 7.	한국소프트웨어개발업협동조합 설립
2008. 10.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2010. 3.	소프트웨어벤처타워 착공, 2011. 7. 준공

□ 지원내용

- 지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이 집적되어 정보공유, 기술협력 등 발전적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업체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원가절감 및 이익극대화를 달성하도록 공간적 기반 마련
- 소프트웨어개발업체 입주공간 외에 근린생활시설 활용, 해외 기관 및 기업 유치 계획

□ 운영현황

- 한국소프트웨어개발업협동조합의 회원사들에게 소프트웨어벤처타워 우선 입주혜택
- 2017년 현재 45개 기업 입주

7) 대구 스포츠융복합산업단지지원센터

□ 근거 법령 및 관련 제도

-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될 예정인 사례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1조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설치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입주하는 스포츠산업 사업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일 것
 3. 입주하는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 회의실 및 공용 장비실 등의 공용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 조성 주체 및 절차

- 스포츠산업의 주요 후방산업과 융복합산업 육성 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조건을 살려 스포츠·보건·산업융합을 구현하기 위해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조성을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서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육성 사업자로 선정되어 현재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며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할 계획

2016. 12	센터 건립 계획 및 일정 발표
2017.	상반기 중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계획
2018. 4.	센터 착공 예정

□ 지원내용

- 총 사업비 251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대구 수성의료지구 내 건립
- 도핑예산센터 기반구축, 스포츠 기능성 식품 및 사전도핑검사, 스포츠 의료분석 기술 경쟁력 확보 등 사업 추진

□ 운영현황

- 2017년 상반기 중으로 기업입주 추진 계획

□ 서울 강동구 엔지니어링복합단지

□ 근거 법령 및 관련 제도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로 예비 지정된 사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9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한 건축물 등을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⑤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성 주체 및 절차

- 서울시 강동구에서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엔지니어링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복합단지를 개발
- 2011년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로 예비지정되었으며, 준공 이후 정식지정 예정

2011. 9.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양해각서 체결

2011. 11.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로 예비 지정, 준공 이후 정식지정 예정

2017. 현재 조성 진행 중

□ 지원내용

- 비즈니스타워, 기술지원센터, 연구개발시설, 컨벤션센터, 교육시설, 회의실 등 조성 진행 중

□ 운영현황

- 현재 조성 중으로, 완공되면 200여개 기업, 1만6천여명 종사자 입주 예상

8) 청주시첨단문화산업단지

□ 근거 법령 및 관련 제도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문화산업단지로 지정된 사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 및 문화상품 개발·제작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개발 절차에 따른다.

□ 조성 주체 및 절차

- 청주시에서 교육·문화도시로서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설립 전 문화체육관광부와 첨단문화산업단지로 지정할 것을 협의

2001. 5. 첨단문화산업단지 지정협약(문화체육관광부)

2001. 10.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정

2002. 3.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지정 고시

2007. 11. CCRC(청주문화산업연구센터) 개소

2013. 4. 문화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조성 국비지원사업 선정

□ 지원내용

- 에듀테인먼트 체험관, 애니메이션 상영관, 전시컨벤션홀, 멀티미디어 스튜디오 등 시설 설립 지원

□ 운영현황

- 소프트웨어개발, 에듀테인먼트, e-러닝, 디자인, 문화교육 등 업종의 기업 입주
- 2011년 기준 69개 기업 입주, 종사자 수 465명

9) 구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근거 법령 및 관련 제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사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 ① 시·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구역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및 절차와 촉진지구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성 주체 및 절차

- 구미 국가산업단지 및 주변 지역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타 지역보다 높아 집단화와 협업을 통한 벤처기업 진흥이 용이할 것으로 평가되어 중소기업청에서 2002년 촉진지구로 지정

2002. 4.	구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2013. 11.	면적 확대 (3.1㎢ → 3.6㎢)
2015. 6.	지방벤처활성화 사업대상자 선정(대덕 이노폴리스벤처협회 주관)

□ 지원내용

- 구미국가산업단지 구미1공단 내의 약 3.61㎢이 촉진지구로 지정
- 국비 등 85억원이 투입되어 창업보육센터, 시제품생산공장 건립, 공용장비 도입 등 벤처 기반 구축

□ 운영현황

- 2013년 기준 64개 기업 입주

10) 서울디지털산업단지 2단지

□ 근거 법령 및 관련 제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된 사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등)

- ① 시·도지사, 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활성화 또는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지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제22조의3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나 제4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는 산업단지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역을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 조성 주체 및 절차

- 1960~70년대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되었으며 이 중 2단지는 도심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있고 지식산업의 입주가 증가하고 있어 도심형 산업단지의 성공적 모델로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2009년 집적지구로 지정

1968. 6.	2단지 준공
2009. 12.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
2015. 12.	관리기본계획 개정 (입주관리계획 보완)
2016. 5.	관리기본계획 개정 (용도별구역변경)
2016. 9.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 지원내용

- 서울 금천구 서울디지털산업단지 2단지 일원 395,777㎡를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로 지정
- 기업지원시설, 교육훈련시설, 문화복지시설 등 설치 지원

□ 운영현황

- 지식기반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섬유제품 제조업, 전문디자인업 등 유치
- 금천구의 지역산업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의류·패션·디자인 분야와 IT중심의 지식산업을 집적화
- 2017년 기준 2단지 1,665개 기업 입주

11) 오송생명과학단지

□ 근거 법령 및 관련 제도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된 사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원을 통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1. "첨단의료복합단지"란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단지를 말한다.

□ 조성 주체 및 절차

- 기업체, 대학, 연구소, 국책기관이 연계되어 바이오산업의 모든 과정이 집적되도록 조성된 국내 최초의 바이오산업 전문단지로, 국가에서 보건의료 및 생명과학기술 분야를 국가전략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

2009. 8.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

2011. 12.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설립

2013. 핵심인프라 완공

□ 지원내용

- 충북 청원군 오송리 일원 1,131,054㎡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
- 핵심인프라구역, 연구지원시설구역, 연구개발기관입주구역, 편의시설 구역 등 조성 지원
- 보건의료 관련 정부출연기관,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시설, 병원 연구시설 및 임상시험센터, 관련 유명 벤처 연구시설 등 유치 계획

□ 운영현황

- 2017년 기준 60여 개 기업 입주

12) HNU Science Park

□ 근거 법령 및 관련 제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으로 지정된 사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교지나 부지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창업자·벤처기업 등의 생산시설 및 그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하 "집적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집적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 집적지역의 명칭, 집적지역 지정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집적지역개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중소기업청장은 집적지역의 지정을 요청받으면 제17조의3 각 호의 요건에 맞는지를 검토하여 집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할 때 그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면 집적지역이 속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 조성 주체 및 절차

- 중소기업청에서 1998년 한남대학교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하였으며, 이후 대덕 R&D특구 내 소재하고 있는 입지조건을 활용하여 기능성 생물소재 업종의 창업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최초의 신기술창업집적지역으로 조성

1998. 6.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지정(중소기업청)

2008. 10.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진행, 2009. 9. 완료

□ 지원내용

-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일원 면적 9,698㎡ 내에 산업시설 2,949㎡, 지원시설 1,054㎡, 공공시설 5,695㎡ 조성 지원

□ 운영현황

- 2017년 기준 99개 기업 입주

13)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근거 법령 및 관련 제도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성 주체 및 절차

- 경기북부지역 산업집적을 통해 지역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2005년 대진대학교, 경기도청, 포천시청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

2005. 1. 재단법인 설립, 2005. 3.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정(산업통상자원부)

2011. 11. 종합지원센터 완공

2013. 12.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단지조성사업 계획변경 승인

2015. 12.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 완료

□ 지원내용

- 총 사업비 1,011억원을 투자하여 포천시 자작동 일원의 105,869㎡에 산업기술단지 조성 사업 진행
- 창업보육사업, 교육훈련사업, 정보유통사업, 공동장비 사용 지원, 홍보 지원사업 등 추진

□ 운영현황

- 2017년 현재 50여 개 기업 입주
- 임대평수 28평형~155평형, 임대료 16,000원/평, 관리비 및 전기·수도는 실비정산
- 최초 2년 계약 후 필요 시 1년 단위 연장

부록 2. 조경분야 종사자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지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 및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세요. 저희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 요청으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 기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에 관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본 설문을 진행하오니, 조경산업의 진흥을 위해 성실하게 응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김용국 부연구위원
(연락처: 044-417-9821 / 010-5221-7763 이메일: ygkim@auri.re.kr)

* 필수항목

※ 조경진흥시설이란 :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조경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설

※ 조경진흥단지란 :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조경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되거나 조성된 지역

※ 조경진흥시설 지정기준

1. 5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시설에 입주한 조경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조경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시설물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4.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조경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1. 1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2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하고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해당 지역에 있을 것
 -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경지원센터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조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조경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3. 교통,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1. 1. 조경산업 진흥정책 및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	☐	☐	매우 필요하다.

2. 2.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	☐	☐	매우 필요하다.

3. 3. 조경진흥시설에 적합한 산업 유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선택 가능) *

해당 사항에 모두 표시하세요.

- ☐ 엔지니어링산업
- ☐ 조경설계서비스업
- ☐ 기술사사무소
- ☐ 조경감리업
- ☐ 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 ☐ 조경공사업
- ☐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업
- ☐ 조경식재공사업
- ☐ 조경시설물 생산 및 유통업
- ☐ 조경수 생산 및 유통업
- ☐ 기타: _____

4. 4. 조경진흥단지에 적합한 산업 유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해당 사항에 모두 표시하세요

- ☐ 엔지니어링산업
☐ 조경설계서비스업
☐ 기술사사무소
☐ 조경감리업
☐ 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 조경공사업
☐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시설물 생산 및 유통업
☐ 조경수 생산 및 유통업
☐ 기타: _____

5. 5. 조경진흥시설 조성 및 지정에 따른 기대성과는 각각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행당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성과가 전혀 없 을 것이다.	성과가 없을 것이다.	보통 이다.	성과가 있을 것이다.	성과가 매우 높 을 것이다.
임대료 등 경비 절감	☐	☐	☐	☐	☐
각종 정보 공유 활성화	☐	☐	☐	☐	☐
유통 체계 개선	☐	☐	☐	☐	☐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사업 기회 증가	☐	☐	☐	☐	☐
타 분야와의 협업 기 회 증가	☐	☐	☐	☐	☐
고객(기업, 개인, 지자 체 등) 노출 기회 제공	☐	☐	☐	☐	☐
신기술 개발 및 도입	☐	☐	☐	☐	☐

6. 6. 조경진흥단지 조성 및 지정에 따른 기대성과는 각각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행당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성과가 전혀 없 을 것이다.	성과가 없을 것이다.	보통 이다.	성과가 있을 것이다.	성과가 매우 높 을 것이다.
임대료 등 경비 절감	☐	☐	☐	☐	☐
각종 정보 공유 활성화	☐	☐	☐	☐	☐
유통 체계 개선	☐	☐	☐	☐	☐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사업 기회 증가	☐	☐	☐	☐	☐
타 분야와의 협업 기 회 증가	☐	☐	☐	☐	☐
고객(기업, 개인, 지자 체 등) 노출 기회 제공	☐	☐	☐	☐	☐
신기술 개발 및 도입	☐	☐	☐	☐	☐

7. 7. 조경진흥시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정기준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당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 다.	중요한 편 이다.	매우 중요 하다.
입주 조경사업자 중 중소 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비중	☐	☐	☐	☐	☐
입주 조경사업자의 조경 관련 단체 소속 여부	☐	☐	☐	☐	☐
입주 조경사업자의 전문 성(전문인력 보유현황, 사업 실적 등)	☐	☐	☐	☐	☐
전체 시설물 면적에서 조 경사업자가 사용하는 면 적 비율	☐	☐	☐	☐	☐
해당 지자체의 조경산업 규모와 육성 역량	☐	☐	☐	☐	☐
사업추진계획의 실현가 능성	☐	☐	☐	☐	☐

8. 8. 조경진흥단지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정기준이 어느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당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 다.	중요한 편 이다.	매우 중요 하다.
입주 조경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비중	☐	☐	☐	☐	☐
입주 조경사업자의 조경 관련 단체 소속 여부	☐	☐	☐	☐	☐
입주 조경사업자의 전문성(전문인력 보유현황, 사업 실적 등)	☐	☐	☐	☐	☐
해당 지자체의 조경산업 규모와 육성 역량	☐	☐	☐	☐	☐
사업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	☐	☐	☐	☐	☐
교통,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기반시설 여건	☐	☐	☐	☐	☐

9. 9. 조경진흥시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부 차원의 지원 사항들은 각각 어느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당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 다.	중요한 편 이다.	매우 중요 하다.
건축물 또는 부지 확보	☐	☐	☐	☐	☐
공공사업 입찰시 인센티브 부여	☐	☐	☐	☐	☐
세제 지원 및 부담금 면제	☐	☐	☐	☐	☐
산학관 연계 시스템 구축	☐	☐	☐	☐	☐
유지관리비 지원(시설 구입, 임대료 등)	☐	☐	☐	☐	☐
운영 컨설팅 지원(기술개발, 해외시장 진출 등)	☐	☐	☐	☐	☐

10. 10. 조경진흥단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부 차원의 지원 사항들은 각각 어느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당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 다.	중요한 편 이다.	매우 중요 하다.
건축물 또는 부지 확보	☐	☐	☐	☐	☐
교통,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기반시설 확충	☐	☐	☐	☐	☐
공공사업 입찰시 인센티브 부여	☐	☐	☐	☐	☐
세제 지원 및 부담금 면제	☐	☐	☐	☐	☐
산학관 연계 시스템 구축	☐	☐	☐	☐	☐
유지관리비 지원(시설 구입, 임대료 등)	☐	☐	☐	☐	☐
운영 컨설팅 지원(기술개발, 해외시장 진출 등)	☐	☐	☐	☐	☐

11. ※ 귀하의 소속기관, 직급, 경력을 적어주세요.

12. ※ 귀하의 소속기관은 다음 중 어떤 산업군에 속합니까? *

해당 사항에 모두 표시하세요.

- ☐ 엔지니어링산업
- ☐ 조경설계서비스업
- ☐ 기술사사무소
- ☐ 조경감리업
- ☐ 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 ☐ 조경공사업
- ☐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업
- ☐ 조경식재공사업
- ☐ 조경시설물 생산 및 유통업
- ☐ 조경수 생산 및 유통업
- ☐ 기타: _____

13.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에 대한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